

동아시아질서건축사: 고대천하에서 미래복합까지

사랑방의
젊은 고들
베이징을 품다

12



EAI
EAST ASIA INSTITUTE

EAI 사랑방이란



미래 한국의 국제정치학자와 외교관을 육성하고자

2013년에 시작한 EAI 교육 프로그램이다.

하영선 EAI 이사장(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 이끄는 본 프로그램은
동아시아와 국제정치에 대한 관심을 심화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강독과 세미나를 진행한다.

매 학기 선발된 소수의 학생들은 심화학습을 수행하고 답사여행을 통해
역사와 국제정치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 사랑방 24기 명단 〉

구진영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 수료

신흥중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 재학

이해린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석사 재학

이현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 재학

조도영 연세대학교 철학과 학사 재학

최은호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석사 재학

〈24기 사랑방 일정표〉

6월 24일 (화)

7시: 공항 도착 및 USIM 수령

7시 30분: 게이트 앞 집합 및 대기

9시 5분: 김포공항 T1 - 베이징 수도공항 T2

10시 30분-11시 30분: 베이징 수도공항 - 노보텔 피스 베이징 호텔

11시 30분-12시 30분: 호텔 체크인

12시 30분-2시: 점심 (양꼬치, 很久以前羊肉串)

*인당 한화 15000원

2시 30분-4시 30분: 자금성 관람 (문연각 포함)

*인당 한화 11500원

4시 30분-5시 30분: 폭염으로 인해 잠시 중관춘 아울렛(新中关购物中心)으로 피신

5시 40분-6시 30분: 新中关购物中心 카페 방문

7시-8시: 원명원 관람

*무료

8시-9시 30분: 저녁 (북경식 회귀, 德华聚宝·老北京铜锅涮肉)

*인당 한화 18000원

9시 30분-10시 30분: 호텔로 이동

6월 25일 (수)

9시 30분-10시: 공산당 역사관람관으로 이동

10시 30분-11시 30분: 공산당 역사관람관 관람

12시 15분-1시 30분: 점심 (딤섬, 金鼎轩·南北家乡菜)

*인당 한화 18500원

2시-2시 30분: 옹화궁 관람

*인당 한화 4750원

2시 30분-3시 30분: 국가박물관으로 이동

4시-5시 30분: 국가박물관 관람

*무료

6시-7시 30분: 저녁 (카오위)

*인당 한화 18000원

7시 30분-8시: 호텔로 복귀

8시-10시: 자유시간 (왕푸징 관광, 발마사지 등)

10시-12시 30분: 심야 토론

6월 26일 (목)

9시-10시 20분: 이화원 앞 짐 보관소로 이동

10시 20분-11시 30분: 이화원 관람

*인당 5700원

12시-1시 40분: 점심 (花家怡园 清华西路)

*EAI 제공, 인당 한화 40000원

1시 40분-2시: 이화원 앞 짐 보관소로 다시 이동

2시-3시: 798 예술거리로 이동

3시-4시: 798 예술거리 관람

4시-4시 30분: 공항으로 이동

6시 30분-9시 40분: 베이징 수도공항 T2 - 인천공항 T2

*항공기 가격: 한화 242,300원

*3일 전체 교통비: 인당 25000원

*3일 전체 식비: 인당 72000원

*3일 전체 티켓값: 인당 21850원

목차

1. 청조의 복합 제국 건설, 『대의각미록』의 유교적 정체성 구상.....	7
자금성.....	구진영
2. 천자, 보살을 겸임하다: 청-준가르 갈등을 통해 본 다민족 제국의 통치술.....	23
응화궁.....	이해린
3. 『萬國公法』 번역과 질서의 충돌.....	57
이화원.....	이현
4. 청과 조선의 대일외교 인식: 이홍장과 이유원의 서신을 중심으로.....	95
원명원.....	조도영
5. 1880년대 청월관계의 갈등: 균세均勢를 위한 자주自主와 번속藩屬.....	119
중국국가박물관.....	최은호
6. 전쟁과 비(非)전쟁 상황에서 중국의 복합 대만전략.....	159
공산당역사박물관.....	신흥중
〈부록〉 사랑방 24기 중국 북경 답사 단체사진.....	206
〈부록〉 다음 기수를 위한 사랑방 24기의 답사 준비 꿀팁.....	209

청조의 복합 제국 건설: 『대의각미록』의 유교적 정체성 구상 자금성

구진영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 수료

I. 서론

청(淸)나라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는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고 있다. 청나라의 모습을 표현하는 개념이 중외일통(中外一統), 화이일가(華夷一家), 다민족 제국(多民族 帝國), 대중화주의(大中華主義) 등으로 통일되지 않은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혼란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상징물로는 청 황제의 초상화를 살펴볼 수 있다. 청의 황제들은 때로는 한족(漢族) 문인처럼 유교(儒敎)의 이상적 군자(君子)로 묘사되기도 하고, 때로는 문수보살(文殊菩薩)이나 티베트 라마승의 형상으로 표현돼 북방 민족이 숭상하는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나아가 서양인의 외양으로 묘사되기도 하는 등,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황제의 모습이 형상화됐다. 이러한 사실은 청이 다양한 민족을 포괄한 다민족 제국이었다는 신청사(New QingHistory) 연구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된다.¹⁾

1) 이은상 2021, 15.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다민족 제국의 수장이었던 청의 황제는 왜 유교 질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자금성(紫禁城)에 거주하였는가? 자금성은 천상의 자미원(紫微垣)을 지상에 구현한 공간으로, 유교 사상의 정수(精髓)가 집약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이 유교 경전을 기반으로 한 명(明)나라의 과거제도(科擧制度)를 거의 그대로 계승하여 시행했다는 점도 고민해볼 지점이다.

이 밖에도 의문은 계속된다. 강희제(康熙帝)는 명 태조(太祖) 홍무제(洪武帝)가 제정한 여섯 가지 교훈을 열여섯 조로 확대하여 『성유십육조(聖諭十六條)』를 편찬하고, 이를 매일 아침 관청에서 낭독하게 하였다고 알려져 있다.²⁾ 또,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 등 한족 지식인을 달래기 위한 대규모 편찬 사업도 진행하였다.³⁾ 이는 청이 유교적 질서에 기반하여 통치를 정당화하고자 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그의 뒤를 이은 옹정제(雍正帝)는 『성유십육조』에 대한 해설서인 『성유광훈(聖諭廣訓)』을 편찬하였으며, 나아가 자신이 유교 정통을 계승한 군주임을 천명하기 위해 『대의각미록(大義覺迷錄)』을 집필하고 전국적으로 배포하였다. 건륭제(乾隆帝)의 경우, 방대한 고전과 문헌을 분류하여 체계화한 『사고전서(四庫全書)』를 완성하였다. 이 전서는 경(經)·사(史)·자(子)·집(集)의 네 부문으로 구성되며, 가장 으뜸인 '경'에는 유교 경전만을 포함 시키는 등 유교 중심적 질서 체계를 확고히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청의 황제들이 단순히 만주족의 전통을 고수한 것이 아니라, 유교적 통치 이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내면화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만일 청이 만주족의 고유한 특성을 고집

2) 이시바다 타카오2009, 243.

3) 남철진 2021, 365.

하며 다민족 제국만을 지향했다면, 위와 같은 유교 중심의 정책은 채택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청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서술해야 하는가?

청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청이 점차 한화(漢化)되어갔다는 ‘한화론(漢化論)’이며, 다른 하나는 만주족 고유의 문화와 정치적 정체성이 끝까지 유지되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후자의 관점은 신청사(New Qing History) 학파를 중심으로 부각 되었으며, 청을 다민족 제국으로서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유교의 영향력과 동아시아적 보편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유교적 통치 이념을 만주족 고유의 전략으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 비판적으로 접근하여 청의 통치 이념이 실질적으로 유교적 가치관에 근거하고 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유교가 단순히 한족 회유의 수단이 아니라, 청 황제의 통치 구상 속에 내면화된 실질적 이념이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구청사와 신청사 이후, 청나라 역사를 바라보는 제3의 시선⁴⁾에 관하여 정리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옹정제가 직접 집필한 『대의각미록』의 상유(上諭)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글은 청 황제가 유교적 정통성을 어떻게 해석하고 수용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사료로 평가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대의각미록』을 중심으로 청 통치 이념 속 유교의 위상을 고찰함으로써, 청을 둘러싼 보편성과 특수성의 논쟁에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4) Nianqun, Y., 2010.

Ⅱ. 『대의각미록』의 역사적 궤적과 해석의 스펙트럼

1. 『대의각미록』의 등장과 퇴장의 역사

옹정제가 즉위한 지 6년이 되던 어느 날, 천섬총독(川陝總督) 악종기(岳鍾琪)는 호남성(湖南省)의 유생 증정(曾靜)이 자신에게 거병을 촉구하였다는 사실을 옹정제에게 즉각 보고하였다. 악종기는 악비(岳飛)의 후손인데 악비는 금나라와 싸워 크게 이긴 송나라(宋)의 장군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⁵⁾

이에 옹정제는 증정과 그의 제자를 체포한 뒤 직접 심문하였다. 그 과정에서 그는 강남(江南) 지역 한인들이 자신의 황위 계승을 의심하고 있으며, 화이관(華夷觀)에 근거하여 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옹정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증정을 심문한 기록을 바탕으로 책을 편찬하고, 전국 각지의 학교에서 강독하게 하였다.⁶⁾ 이 책이 바로 『대의각미록(大義覺迷錄)』이다. 책의 제목을 풀어 살펴보면 의(義)로써 미혹한 자들을 일깨우는 기록이라는 뜻이다.

반란을 주도한 증정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학식이 깊지 않은 인물이었다.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번번이 과거에 낙방하여 출사하지 못하고 기근으로 인해 매우 가난한 생활을 이어갔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이런 모습만 보아도 든든한 배후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⁷⁾

그런데도 옹정제는 그를 심문한 내용을 정리하여 책으로 엮었는데 그 이유는 이 사건이 강남 지역 한족 지식인, 특히 여류량(呂留良)의

5) 단조 히로시 2023, 345.

6) 조너선 D. 스펜스, 2004, 311.

7) 이동욱 2019, 137.

후손들로 대표되는 사대부층을 견제할 기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강남 지역의 한인들은 화이분별(華夷分別)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이는 청나라 조정의 골칫거리 중에 하나로 반드시 잠재워야 하는 사상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잡을 기회가 증정의 행동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옹정제는 자신과 증정의 문답을 반복하고 증정이 자기를 비판하게 함으로써 청나라의 정통성을 인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책을 엮어냈다.⁸⁾

그런데 옹정제의 뒤를 이은 건륭제는 즉위하자마자 이 책을 전량 회수하고 금서(禁書)로 지정하였다. 이에 대해 후대 학자들은, 옹정제가 펼쳤던 사상적 대응이 건륭제 때에 와서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해당 책을 수거하였다고 해석하였다.⁹⁾ 그러나 부황이 직접 편찬·배포한 책을 금서로 지정한 것에 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아버지의 정치적 입장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는 청 황제의 황위 계승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역사학자 방조영(方詔英, Fang Chao-ying)은 『대의각미록』이 황실의 내부 사정을 지나치게 노출한 점을 건륭제가 못마땅하게 여긴 것으로 보았으며, 이를 이유로 금서로 삼았다고 주장한다.¹⁰⁾ 실제로 『대의각미록』은 관찬 문서에서 언급되지 않는 민감한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옹정제의 황위 계승에 대한 논란이다. 이 논란은 옹정제 즉위 직후부터 제기되어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옹정제가 강희제의 임종 시 황위를 정당하게 계승했다는 정통론과 황위를 찬탈했다는 찬탈설이 대립하고 있다.¹¹⁾

8) 이시바시 다카오 2009, 244.

9) 송인주 2020, 127.

10) Hummel 1943, 749.

11) 다이이 2025, 33.

공식 문서에서는 강희제가 옹정제에게 황위를 물려주고 임종했다는 내용만이 전해진다. 그러나 『대의각미록』에서는 황위 계승 당시 정황과 관련하여, 옹과다(隆科多)가 강희제의 유언을 숨겨 옹정제가 강희제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내용까지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옹과다는 강희제의 임종 당시 왜 이런 일을 꾸몄을까. 혹시 황위 계승이 다른 황자에게 내려진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되는 지점이다.¹²⁾ 실제로 『대의각미록』에는 강희제가 ‘열 넷째에게 물려 준다(傳十四子)’는 유언을 남겼는데 옹정제가 ‘넷째에게 물려준다(傳于四子)’라고 위조하였다는 증정의 주장을 싣고 옹정제가 해명하는 장면도 나온다.¹³⁾

이와 같은 내용은 건륭제로서 매우 부담스러운 기술일 수밖에 없다. 부친의 황위 계승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은 곧 자신의 황위 계승 정통성을 흔들 수 있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건륭제가 해당 책을 수거하고 금서로 지정한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파밀라 카일 크로슬리(Pamela Kyle Crossley 2012)는 옹정제와 건륭제 사이의 견해 차이에 의해 책이 금서로 지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과연 설득력이 있는 것일까.

2. 『대의각미록』의 등장과 퇴장의 역사

『대의각미록(大義覺迷錄)』은 건륭제(乾隆帝)에 의해 금서로 지정되었으나, 옹정제(雍正帝)가 심혈을 기울여 간행하고 배포하였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 텍스트는 청(淸) 황제가 어떠한 정치적 사유를 바탕으로 통치를 구상하였는지를 확인

12) 다이이 2025, 34.

13) 이동욱 2019, 139.

할 수 있는 자료임은 분명하다.

건륭제의 금서 지정 때문인지 『대의각미록』에 관한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않았다. 2000년 이전까지는 관련 연구가 6편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100편을 상회하는 연구가 발표된 상황이다.¹⁴⁾ 이러한 관심 증대의 배경에는 현대 중국과의 역사적 접점을 모색하려는 학술적 시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자리한다.

그렇다면 『대의각미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기존 연구들은 이 문헌을 만주족이 한족 사회에 동화되어 한인을 설득하려는 시도의 산물로 보았다. 그러나 신청사 연구자들은 이러한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크로슬리는 『대의각미록』을 청 황제가 주도하여 편찬한 정치 선전서로 규정하면서, 청 제국의 정통성과 통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여기까지의 해석은 전통적 학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크로슬리는 이 문헌에서 황제가 유교의 핵심 가치인 ‘인(仁)’보다는 만주적 개념인 “은(恩, kesi)”과 “성덕(聖德, enduringge erdemu)”을 강조하였다고 분석한다. 또한, 군주는 초월적 덕성을 지닌 존재로, 신민은 보호를 받고 복종해야 하는 의존적 존재로 묘사된다는 점에서 『대의각미록』에는 만주족의 고유한 통치 사상이 드러난다고 주장한다.¹⁵⁾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재고할 여지가 있다. 유교(儒敎)에서 이상적인 통치자는 덕치(德治)를 실현하는 군자(君子)이며, 이는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조화를 통해 구체화 된다. 인(仁)과 지(智)는 인간 내면의 심성과 관련된 가치이며, 의(義)와 예(禮)는 외적으로 구현되는 제도적 측면이다. 이러한 내외적 요소가 함께 아우러질 때 비로소 유

14) 이동욱 2019, 135.

15) Crossley, 2012.

교적 이상인 덕치가 성립된다. 그러므로 『대의각미록』에 등장하는 ‘성덕(聖德)’이라는 표현을 단지 만주족의 특수성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은(恩)’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다. 황제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개념은 황제의 특별한 배려, 은전, 시혜(施惠)를 표현하는 공식적이고 존칭적인 어휘다. 황은이라는 용어는 너무 많은 공식 문헌에 등장하는데 『춘추』 등에도 매우 자주 등장하므로 만주족만의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다.

또한, 군주를 초자연적 덕성을 지닌 존재로 이해하는 방식도 유교 전통과 어긋나지 않는다. 유교에서 천자(天子)는 하늘의 명(命)을 받아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그 자체가 천신(天神)의 속성을 부분적으로 지닌다. 크로슬리는 이러한 요소를 만주족 고유의 특징으로 간주하지만, 이는 동아시아 전반에 분포하는 신화적 구조와 비교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중국에는 삼황오제(三皇五帝), 한국에는 단군왕검(檀君王儉), 일본에는 아마테라스(天照大神)와 같은 하늘에서 내려온 족속에 대한 고대의 신화가 있다. 즉 천손강림(天孫降臨)의 서사가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의각미록』에 나타나는 이러한 신성한 통치자 이미지 역시 만주족에 한정된 특수한 요소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 존재한 문화적·신화적 보편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시바시 다카오(石橋崇雄)는 옹정제가 『대의각미록』에서 강조하고자 한 바는,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 중요한 것은 ‘덕(德)의 유무’이지, 화(華)와 이(夷)의 구분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은 예로부터 중화(中華)와 이적(夷狄)이 혼재한 상태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단지 이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정통성을 상실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옹정제는 『대의각미록』에서 ‘화이일가(華夷一家)’의 관념을 천명하였다고 보았다.¹⁶⁾ 나아가 그는 이러한 사유가

다민족 통일국가로서의 청(淸) 제국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평가하였다. 히라노 사토시(平野聰)는 더 나아가 옹정제의 중외일통(中外一統) 사상은 중원뿐만 아니라 북쪽의 영토와 민족을 모두 아우르는 대일통 구조였다고 주장한다.¹⁷⁾

그러나 이와 같은 일본 학자들의 해석 또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대의각미록』은 화이(華夷)의 분별을 통해 황권(皇權)을 위협하던 강남(江南) 지역의 한인(漢人)을 겨냥하여 작성된 저술로, 몽골이나 티베트와 같은 변방 민족까지 포함한 설득 작업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옹정제(雍正帝)는 민족의 출신 여부보다 천자(天子)가 덕치(德治)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유교적 통치 이념과 민족 정체성을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었다. 모든 민족의 문화와 전통 등을 중원에서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발언은 상유 부분에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이 선행 연구에서 충분히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Ⅲ. 『대의각미록』에 드러난 청 제국의 정당성 서사

『대의각미록(大義覺迷錄)』은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황제가 직접 내린 상유 10편, 증정(曾靜)에 대한 심문 기록 47조, 그리고 증정이 작성한 자기 비판문인 『귀인설(歸認說)』로 이루어져 있다.¹⁸⁾ 본 논문은 이 가운데 청 왕조의 정통성에 관한 정치적 입장과 논리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상유(上諭)에 주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16) 이시바시 다카오 2009, 247.

17) 히라노 사토시 2004.

18) 이시바시 다카오 2009, 245.

1. 『대의각미록』에 나타난 옹정제의 정통성 담론

옹정제(雍正帝)는 천명(天命)을 받들어 백성을 다스림은 덕(德)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덕치를 실현하는 자가 곧 천자(天子)임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강조한다. 『대의각미록』의 상유(上諭)에는 “백성을 생육(生育)하는 도(道)는 덕이 있는 자에게 있다”, “하늘의 황제가 사랑하는 이는 오직 덕이 있는 자다”, “하늘은 덕이 있는 자를 천하의 군주로 삼는다”는 구절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나아가 “제왕이 존재한 이래로, 군주의 기준은 오직 위대한 덕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있을 뿐, 다른 기준은 없다”는 진술도 제시된다. 이를 통해 옹정제는 청 황제가 천하를 덕으로 다스리는 성군(聖君)이라는 점을 정당화하고자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그는 하늘이 군주를 선택함에 있어 출신 지역이나 혈통이 아니라 ‘덕’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하늘이 특정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군주로 삼는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으며, 중원을 통치하는 자는 화이(華夷)의 구분이 아니라 덕의 유무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이는 곧 통치 정당성의 기준이 민족적 정체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교적 덕성(德性)의 구현 여부에 있다는 주장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예로 그는 순(舜)과 문왕(文王)을 언급한다. 순임금은 동이(東夷)의 출신이며, 문왕은 서이(西夷)의 출신이지만, 그들이 이적(夷狄)이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덕을 훼손하거나 그 통치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통치 정당성의 기준이 화이(華夷)의 구별이 아니라 덕성(德性)의 구현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한 뒤, 화이의 구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와 지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개념임

을 설명한다.

옹정제는 과거 중원을 지배하던 시기와 비교하여 현재 중원의 영토가 훨씬 더 광범위해진 점을 언급하는데 오늘날 기준으로 본다면 과거의 많은 지역이 이적(夷狄)에 해당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화와 이를 단순히 지리적 기준으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도 꼬집는다.

옹정제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맹자(孟子)를 인용하며, 문화와 제도의 창출이 곧 중화(中華)의 조건이지, 지역이나 종족적 요소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중화란 민족적 정체성이 아니라 문화적 실천과 유교 질서 구현 여부에 따라 형성되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화는 문명이고 이는 비문명이므로 문명 안에 들어온 족속은 모두 화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대의각미록(大義覺迷錄)』의 상유에는 이러한 내용이 다양한 인용과 사례를 바꾸어가며 반복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옹정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2. 『대의각미록』과 다민족 제국의 논리

중국의 장단단(張丹丹)과 한동위(韓東育), 일본의 히라노 사토시(平野聰)는 『대의각미록(大義覺迷錄)』의 논의를 다민족 통합국가론으로까지 확장하여 해석하고 있다. 이들의 해석은 『대의각미록』에 등장하는 화이일가(華夷一家), 중외일통(中外一統), 천하일통(天下一統) 등의 개념에 기반한다.

예컨대, “지금 역적 무리는 천하가 일통(一統)되고 화이가 일가(一家)를 이루게 된 시대임에도, 함부로 중외(中外)를 구분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 분노를 조장했다”라는 상유의 구절은, 청 제국이 이미 다양한 민족을 하나의 질서 안에 통합한 상태임을 강조한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를 근거로 일부 학자들은 청나라가 다양한 민족을 포섭한

통합 제국으로 기능했으며, 『대의각미록』이 그 이념적 정당성을 뒷받침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대의각미록』의 집필 목적과 당시의 역사적 맥락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이 문헌은 본래 강남 지역의 한인(漢人)들이 화이(華夷)를 구별하여 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된 정치 문서이다. 『대의각미록』에서 ‘화(華)’는 주로 한족을, ‘이(夷)’는 만주족을 지칭하며, 문헌의 중심 논의는 바로 만한(滿漢) 간의 갈등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이 문헌은 몽골·티베트·준가르 등 북방의 여타 이민족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통치 청사진이나 포섭 전략을 제시하지 않으며, 다민족 제국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 이념서로 보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대의각미록』을 다민족 통합국가론의 핵심 텍스트로 간주하는 시각은, 그 집필 목적과 실제 담론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확장 해석일 수 있다.

IV. 결론

청(淸) 제국의 정체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향후에도 명확한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교(儒敎)가 반드시 한족(漢族)의 전유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교 사상과 중원(中原)을 한족이 독점한 것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굳건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박차고 나오지 않는 한, 청나라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일정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또한, 만주족에 대한 고정된 인식 역시 여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이 이어지는 한, 만주족 황제가 천자(天子)이자 대칸(Khan of Khans), 차크라바르틴(轉輪聖王)으로 기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해석에 도달하기 힘들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문화적 공통 기반을 지닌 공동체에 대해 형식적 평등성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과거 중원의 정치·사상적 구조를 살펴보면, 오히려 사상의 위계질서가 분명히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고전서(四庫全書)』이다. 이 편찬 작업은 유교 경전을 최상위에 두고, 그 아래에 역사서(史), 그다음으로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사상, 마지막으로 나머지 저술을 배열함으로써 명확한 가치 위계를 설정하였다. 이는 당시 황권이 유교적 질서를 가장 핵심적인 통치 기반으로 인식하였음을 방증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음으로써, 청 황제가 유교를 경시하고 만주적 특성만을 강조하였다는 오해가 유포되었고, 유목민족을 포섭하기 위해 불교 등의 종교적 사상을 활용한 통치 전략마저도 정통 유교적 통치와는 배치되는 행위로 간주되는 경향이 생겨났다.

결국, 이와 같은 주장들은 중국 북부와 남부, 즉 다층적인 지역적·문화적 현실을 삭제하거나 무시함으로써, 실재했던 복합적 구조를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전제하는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

『대의각미록(大義覺迷錄)』을 살펴보면, 옹정제는 황제가 반드시 한족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는 예로부터 중원을 통치하는 자는 덕(德)으로써 나라를 다스리고, 군신 간의 대의(大義)를 지키는 자였으므로 단순히 화(華)와 이(夷)의 구분에 따라 사람을 나누고, 이적을 적대시하거나 배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는 곧 중원의 통치 권위는 민족적 정체

성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유교적 정치 이상을 얼마나 잘 구현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의미이며, 어떠한 민족이든 유교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음을 천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을 곧바로 ‘다민족 제국의 보편 군주’라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유교적 통치 이념을 실현하는 자가 황제가 되어 중원을 지배할 수 있다는 주장과, 모든 민족을 하나의 제국 질서로 통합한다는 논리는 동일한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상의 위계와 화이(華夷)의 구분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청나라를 고찰할 때, 지금까지 간과되어 온 청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청 조정이 유교와 불교 등 다양한 이념과 종교를 활용하여 어떠한 전략을 구사했는지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게 된다면 청 제국의 통치 구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남철진. 2021. 『중국의 역사와 문화지식』. 경산: 열린시선·영남대학교 출판부.
- 다이이 지음, 박연옥 옮김, 김승일 감수. 2025. 『청나라 흥망사의 수수께끼』. 서울: 경지출판사.
- 단조 히로시 지음, 권용철 옮김. 2023. 『천하와 천조의 중국사: 하늘 아래 세상, 하늘이 내린 왕조』. 서울: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 옹정제 지음, 이형준·최동철·박윤미·김준현 옮김. 2021. 『대의각미록』. 서울: b.
- 이시바시 다카오 지음, 홍성구 옮김. 2009. 『대청제국: 1616~1799, 100만의 만주족은 어떻게 1억의 한족을 지배하였을까?』. 서울: 휴머니스트.
- 이은상. 2021. 『이미지 제국: 건륭제의 문화 프로젝트』. 부산: 산지니.
- 조너선 D. 스펜스 지음, 이산 옮김. 2004. 『반역의 책: 옹정제와 사상통제』. 서울: 이산.
- 히라노 사토시. 2004. 『청제국과 티베트 문제: 다민족 통합의 성립과 해체』. 나고야: 나고야대학교출판회.
- Crossley, Pamela Kyle. 2012. “Dayi juemi lu 大義覺迷錄.” Crossroads.
- Hummel, Arthur W. (Ed.). 1943. Eminent Chinese of the Ch'ing Period.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 논문

- 송인주. 2020. “옹정제(雍正帝)의 사상투쟁 - 『大義覺迷錄』의 華夷論과 ‘中外一統’ 이론”. 『인문과학』 77: 123-159.
- 이동욱. 2019. “『大義覺迷錄』에 나타난 청 옹정제의 滿漢 갈등 해소 논리”. 『중앙사론』 50(1): 131-180.
- 장단단. 2015. “《大義覺迷錄》의理論與實踐”. 『동북사범대학 박사학위논문』.
- 한동욱. 2014. “청조의 ‘비한 세계’에 대한 ‘대중화’적 서술 - 『대의각미록』에서 『청제선위조서』까지”. 『중국변강사지연구』.
- Nianqun, Yang. 2016. “Moving beyond ‘Sinicization’ and ‘Manchu characteristics’: Can research on Qing history take a third path?” Contemporary Chinese Thought, 47(1): 44-58.

천자, 보살을 겸임하다: 청-준가르 갈등을 통해 본 다민족 제국의 통치술 용화궁

이해린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석사과정

I. 서론

1690년부터 1697년까지 강희제는 준가르의 갈단과 중앙아시아 패권을 두고 격렬하게 경쟁했다. 이 갈등에서 흥미로운 점은 양측이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적 논리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갈단은 티베트 불교의 종교적 권위에 기반해 자신의 정치적 행동을 정당화했던 반면, 강희제는 천하의 통치자로서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는 유교적 의무를 내세웠다. 청나라가 문수보살의 화신이라는 종교적 정체성을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옹정제 시기부터로, 그 전까지는 천하 질서의 수호자라는 정체성이 더 중요하게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청나라를 단순히 ‘한화된 정복왕조’로 보지 않는다. 로사비가 주장한 것처럼 청나라는 한족, 만주족, 몽골족 등을 아우르는 다민족 국가로서 각 민족과 지역에 적합한 서로 다른 통치 논리를 구사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청나라가 천하의 수호자라는 한족으로서의 정체성 역시 적재적소에 사용했다는 점이다. 준가르와의 갈등

은 청나라의 복합적 정체성이 실제 군사 정책을 운용할 때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이다.

현대 중국이 여전히 ‘다민족 국가’이자 ‘중화민족’이라는 복합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청나라가 어떻게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자원을 활용하여 광대한 땅을 통치할 정당성을 얻었는지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중국의 행동 양식과 미래 전략을 예측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

II. 이론적 틀

고대 중국에서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는 기준점은 문명 발전의 차이였다. 이 때 ‘문명’의 기준은 한족이었다. 천하의 중심에 한족이 세운 나라가 있고, 문화적으로 한족이 세운 나라가 우위에 있으며, 그렇기에 주변의 나라들이 한족에게 ‘감화’되어 스스로 경의를 표하고 신하가 되기 위해 찾아온다는 소위 “천하 사상”은 고대부터 전근대 시기의 중국이 외부 세계를 이해하는 기본적 틀이었다.

그러나 이 틀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정된 것이 아니었으며 외부나 내부에서 기인한 충격이나 도전을 받기도 했다. 거자오광은 중국의 천하 세계관이 19세기 이전까지 총 세 번의 변화를 겪었다고 서술했다. 당나라 시기 불교적 세계관의 유입, 송나라 시기 한족 국가의 축소, 원나라 시기 유사-세계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거자오광에 따르면 불교 세계관은 천하 사상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융합되었으며, 송나라 시기에 격화된 한족과 비-한족의 경쟁은 “중국인”(화)와 “오랑캐”(이) 사이의 좀 더 엄격한 구분을 요구하는 식으로 내부적 변화를 이끌었다. 거자오광은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가 ‘천하’ 관점이 아닌 ‘세계’ 관점을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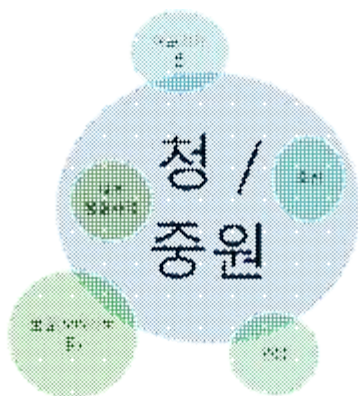
입하려 했다고 평가했으나 원나라가 지속된 기간이 너무 짧아 중국 천하관의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보았다.

청나라는 이러한 중국식 천하 질서가 완전한 종말을 고한 시기로 받아들여진다. 청나라가 아시아 권역에서의 중심 위치를 완전히 잃어 버리면서 아시아에는 ‘예절’이 지배하는 질서 대신 ‘무력’을 기본 수단으로 하는 근대적 사고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청나라가 서방의 근대 질서에 무릎 꿇기 전 시기를 두고 정말 청나라가 어떤 식으로 국제 질서를 운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는 청나라가 한족이 아닌 만주족, 즉 이민족이 세운 나라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중국 세계질서를 주창하는 페어뱅크와 같은 학자들은 청나라의 시작은 이민족이었지만 한족이 대부분인 충원을 제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한화(Sinicization)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민족이 세운 중국 왕조(정복왕조)가 내부적으로 화이 융합보다 화이의 구별을 강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한족의 논리를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정복왕조와 주변 나라의 관계의 틀 자체는 여전히 문화적 차이에서 기반한(부자나 형제와 비슷한 것으로 이해되는) 신분 관계였으며 하위 국가가 경의의 뜻으로 상위 국가에게 조공하며 스스로 머리를 숙이는 것이 중화 외의 외부자를 다루는 방식이었음을 강조한다. (즉 천하 질서의 근간은 변하지 않았다고 이해한다.)¹⁹⁾ 페어뱅크를 비롯한 사람들이 관심 있게 주목하는 것은 주로 조선과 안남 등의 동아시아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19) <중국과 고대 동아시아 세계>, 니시지마 사다오, p. 340

〈그림1〉 무력이 아닌 영향력으로 지배되는 전통천하질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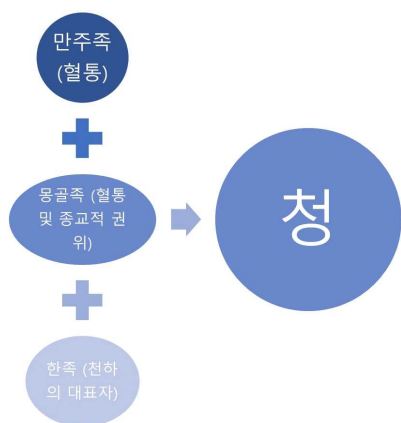
이에 대해 정복왕조의 중국은 ‘동등자 사이의 중국’(China among equals)였다며 이민족이 세운 중국을 한족 왕조와 동등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반론도 거세다.²⁰⁾ 이때 로사비 등이 주목하는 시기는 주로 원나라와 명나라 교체기이며, 서북 지역의 기마 민족과 중화 민족의 사이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로사비를 필두로 한 학자들은 중국 역사에서(주로 한족의) 문화와 예절로 지배하던 시기가 아닌, 무력과 군사 대응이 주도적으로 주변 관계를 형성했던 시기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로사비의 논지를 이어받아 청나라가 단순히 ‘한화된 정복 왕조’로 이해될 수 없고 만주족으로서의 특색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생겼다. 소위 신청사(New Qing History)라고 불리는 이들이 드는 가장 대표적 예시 중 하나가 바로 17세기 말과 18세기 초 있었던 청나라와 준가르(만주족) 사이의 갈등이다.

20) <China Among Equals>, Rossabi. 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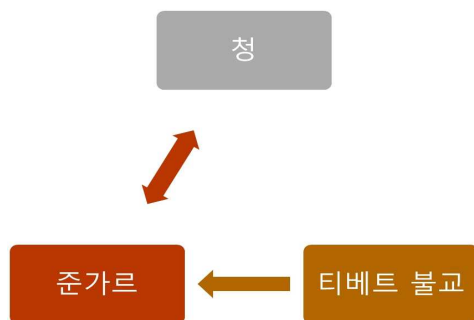
신청사에 따르면 청나라는 다민족 제국의 대표적 예시로서, 청 황제는 단순히 중원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족의 대변인일 뿐만 아니라 만주족과 몽골족의 대변인이기도 했다. 청나라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민족을 수립한 국가로서 혈통적으로는(당시 만주족과 몽골족은 혼인으로 긴밀하게 맺어져 있었으므로) 만주족과 몽골족의 대표,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문수보살로서 티베트 지역에서의 종교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고, 지리적으로 실제로 중원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천하’ 질서의 대표자로서의 의무도 수행해야 했다. 이렇듯 복합적인 청 황제의 대내적 구성 요소는 대외에서도 단순히 예치로 지배되는 천하질서가 아닌 조금 더 현실주의적인(realpolitik) 정치 수단을 채택하게 만들었다.

그렇기에 청나라를 다민족국가적 측면에서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청나라와 준가르의 갈등은 단순히 천하 변경을 어지럽히는 자와 천하를 지키려는 자의 경쟁보다도 ‘누가 진정으로 몽골족을 대표하느냐’의 싸움에 가까워진다.

〈그림2〉 청나라의 다중적 대내 인식



〈그림3〉 로사비가 인식한 청-준가르 관계



그렇다면 실제로 청나라와 준가르는 자신들의 경쟁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청나라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체화하였는지, 또 이 정체성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유동적으로 변했는지 보여준다. 청나라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는 청나라가 어떤 나라였느냐에 따라 현대 중국을 이해하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

문이다. 현대 중국은 절대다수인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다. 중국은 이러한 다민족 국가를 “중화민족”이라는 하나의 문화 정체성으로 묶으려는 동시에 “위대한 중화 민족의 부흥”을 민족 사업으로 삼는다. 이러한 ‘중화민족’을 규정하는 기억은 첫째, 일본과 서구 제국주의에 저항했던 근대의 역사고 둘째,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제국주의와 반대로 유연하고 평화로웠던 ‘천하 질서’에 대한 우월감과 향수다. 그러니 실제 역사에서 천하 질서라는 것이 중원에 있었던 다민족 국가에 의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고찰하는 것은 지금 중국의 행동을 평가하고 미래에 중국이 어떤 식으로 자신을 놓고 싶어 하는지 예측하는 데에 필수적인 단계다.

Ⅲ. 티베트 불교와 준가르의 정치적 관계

1. 갈단의 사명

준가르와 청나라가 직접적으로 부딪혔던 것은 크게 두 가지 시점으로 나눌 수 있다. 청나라의 강희제가 준가르의 갈단을 토벌한다는 명목으로 세 번이나 친정을 나갔던 1696년에서 1697년, 그리고 갈단이 사망하고 난 후 그의 조카 체왕 랍탄이 티베트 지역의 혼란을 무마한다는 명목으로 티베트의 하미를 공격하자 이에 청나라가 군대를 파견해 준가르의 티베트 점령을 저지한 1717년이다. 이렇듯 군사를 통해 준가르를 토벌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전근대를 지배했던 ‘예치’와는 다른 국제정치적 논리가 중국의 북방에서 수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준가르라는 국가가 자신을 어떤 포지션으로 두었는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1차 사료는 없다. 그러나 티베트 측에 남은 사료

와 갈단이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 5세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이 당시 준가르가 가지고 있었던 대외적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짐작하기엔 충분하다. 준가르와 갈단은 티베트 불교, 그것도 아주 세부적으로 겔룩빠(황교파)의 수호자 역할이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했다.

겔룩빠의 수호자라는 이름은 단순히 종교적 의미에 그치지 않았다. 당시 청 외부에 있던 몽골족에게 종교적인 권위는 정치적 권위와 순환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원나라 시기부터 존재했던 이 동맹 체제를 cho-yon 체제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티베트 불교에서의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세속 지도자의 ‘스승’이 되어 세속 지도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세속 지도자는 그의 ‘제자’가 되어 종교적 지도자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관계를 일컫는다.²¹⁾ 이러한 스승-제자 관계는 쿠빌라이 칸의 방계 가족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티베트 불교 특유의 ‘환생’ 개념은 전통적인 왕가, 혹은 유목 민족의 관점에서 본가가 아니더라도(즉 쿠빌라이 칸과 직계 가족이 아니더라도) 전 몽골족을 통합할 수 있는 정신적인 지지 기반을 만드는 데에 유용했다.

1640년 할하-오이라트 법전이 제정된 전후를 기점으로 티베트 불교와 몽골 유목민족 국가들 사이의 긴밀한 협력은 보편화되었다. 당시 부족장들에게는 아들들 중 한 명을 종교적 지도자로, 나머지 한 명을 차기 부족장으로 키우는 것이 정해진 관습이 되었다.²²⁾ 오이라트의 승려 자야 판디타와 호쇼트부의 족장 오치르투는 의형제를 맺었고, 할하의 쩍춘담바 후투투 1세의 형은 할하 좌익의 왕 투세투

21) Wang, “The Tibet-Dzungar Ideological Alliance’s Challenge to the Qing Empire and the Adaptation of Qing Ideology in the mid-18th century.” 2021.

22) Di Cosmo, “From alliance to tutelage: A historical analysis of Manchu-mongol relations before the Qing conquest.” 2012.

칸이었다. 준가르도 마찬가지였다. 세력을 점점 확장해나간 준가르의 지도자 바투르 홍타이지는(당시 티베트의 실질적 권력자였던) 구시칸의 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을 차기 후계자로 낙점하고, 형인 생게는 차기 부족장으로, 동생인 갈단은 달라이 라마5세의 아래로 보내 승려로 키웠다.

티베트 불교와 준가르 사이의 관계가 무척 종교적이었으면서 동시에 양자 모두에게 정치적 권력의 기반이었다는 사실은 갈단의 승계과정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1670년 준가르 내부 권력 다툼으로 인해 생게가 암살당하자 갈단은 준가르의 차기 수장으로 추대된다. 이는 당시 생게의 아들들이 너무 어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종교적 카리스마를 지닌 갈단이 분열된 준가르를 통합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²³⁾ 한 편으로 달라이 라마 5세를 필두로 한 티베트에서도 갈단이 왕위를 잇는 것은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좋은 일이었다. 생게 생전에 준가르의 내부 분열을 완화시키고자 겔룩빠 승려들을 보냈던 달라이 라마5세는 준가르 좌익의 대표로서 분열을 일으키던 초드바 바투르를 풀어주는 게 낫다고 생게를 설득했다. 그런데 바로 이 초드바 바투르에게 생게가 암살당하고만 것이다. 즉, 이 때 티베트는 준가르의 리더가 죽은 정치적인 책임을 어느 정도 나눠 가져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겔룩빠에서는 앞으로 준가르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수밖에 없었다.²⁴⁾ 준가르에서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 뻔한 상황에 갈단이 준가르의 리더가 된다면, 이는 직접적으로 준가르의 정치 상

23) Wang, "The Tibet-Dzungar Ideological Alliance's Challenge to the Qing Empire and the Adaptation of Qing Ideology in the mid-18thcentury." 2021.

24) 윤성제, "17세기 중후반 준가르의 정치-생게(Sengge)의 집권기(1653-70)를 중심으로-" 2014.

황에 개입하지 않아도 개입할 수 있는 개인적 통로는 아직 견고하다는 뜻에 가까웠다.

실제로 갈단이 준가르로 부임하기 전 달라이 라마 5세는 자신의 제자인 갈단을 불러 ‘은밀히’ 뜻을 전했고, 갈단은 그 뜻을 ‘받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맹세했다. 달라이 라마5세는 갈단에게 보속투 칸이라는 호칭을 내렸는데, 보속투 칸은 ‘명을 지닌 군주’라는 뜻이다.²⁵⁾ 갈단은 이를 겔룩빠의 부흥과 안전을 위해 힘쓰라는 뜻으로 이해했다. 실제로 갈단은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 5세나 그의 섭정 상계 가초가 원할 때면 내키지 않는 공격이라도 감행했다. 할하의 쩍춘담바 후투투 1세와 달라이 라마 5세 사이에 분쟁이 생긴 1689년, 갈단은 자신의 조카인 체왕 랍탄(생계의 아들. 갈단은 체왕 랍탄이 어느 정도 장성한 이후에는 그를 정치적 위험 요소로 인식하고 미리 제거하려 했다.)과 내부적인 권력 다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나라와의 갈등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쩍춘담바 후투투 1세를 준가르 쪽으로 인도할 것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준가르와 청나라는 결국 요녕성에서 전투를 벌이게 된다. 갈단이 할하와 청나라와의 갈등에 집중하는 동안 조카 체왕 랍탄은 준가르로 돌아와 세력을 모을 기회를 잡았다. 추후 갈단은 청나라에게 패배하자 준가르로 돌아오지 못하고 떠돌다가 죽게 된다.

주지해야 할 사실은 갈단이 티베트 불교의 지지를 단순히 정치적인 것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독실하게 믿는 측면이 있었다는 점이다. 갈단이 직접 쓴 사료 중 지금까지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료는 1696년 음력 11월 23일 강희제에게 패하고 쫓기던 갈단이 달라이 라마 5세에게 보내려던 편지 14통이다.²⁶⁾ 이 중 한국어로 번역된 것은 총 네

25) 상동, p.1

26) 조병학, “갈단이 티베트에 보낸 서신의 만·한역 비교 분석 시론-달라이 라마,

통이다. 갈단의 편지에서는 기도에 가까운 간절함이 보인다.

“...작고 미천한 저는 여기에서 라마의 사랑하심에 의지해서 잘 있습니다. 특히 아뢰는 것은, 모든 일을 전부 비밀로 해서 별도로 명백히 문서에 썼습니다. 모든 것을 밝으심에 비추어 주십시오. 라마의 몸 영원하고, 라마의 밝음을 빨리 만나서 지금 세대부터 모든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랑하고 보우함을 치우치지 않게 항상 살피 주십시오.”²⁷⁾

라모 나이충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제가 어찌 되더라도 달라이 라마를 공경하고 경배하고 생각한 큰일을 이루게 해서달라이 라마를 속히 얻어 뵙기 위해 복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대로 이루게 되는 년 월 일 시를 좋은지, 좋은 말로 분명하게 내려주십시오! ... 제가 생각한 일 크게 이루고자 합니다.”²⁸⁾

갈단이 이 당시 강희제에게 크게 패하고 도망다니던 신세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단순히 구원을 요청하는 편지로 읽힐 수도 있지만, 그렇게만 보기에는 지나치게 의존적이다. 갈단은 심지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하기에 좋은 연, 월, 일시까지 달라이 라마 5세의 뜻과 일치시키려고 노력했다. 갈단이 준가르의 수장이면서 동시에 달라이 라마 5세의 제자였다는 이중적 신분이 상호보완적이었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디바, 라모 나이충, 바라이붕 나이충에게 보낸 편지를 중심으로-”, 2013.

27) <강희주접> 제8집 문서120, 532쪽6행~534쪽3행(조병학, “갈단이 티베트에 보낸 서신의 만·한역 비교 분석 시론-달라이 라마, 디바, 라모 나이충, 바라이붕 나이충에게 보낸 편지를 중심으로-”, 2013, pp.50-51 재인용)

28) <강희주접>제8집 문서120(546~550쪽4행) (조병학, “갈단이 티베트에 보낸 서신의 만·한역 비교 분석 시론-달라이 라마, 디바, 라모 나이충, 바라이붕 나이충에게 보낸 편지를 중심으로-”, 2013, pp.60-61 재인용)

2. 겔룩빠 수호자로서의 준가르

갈단은 종교적 사명과 정치적 목적에 명확한 구분을 두지 않았다. 이는 비단 갈단 개인의 수준에서 멈추지 않았다. 준가르= 겔룩빠 수호자의 정체성은 갈단 사후에도 이어졌으며, 준가르의 겔룩빠 우선주의는 너무 견고한 나머지 티베트 불교 안에서 반감과 충격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티베트 학자 텐파 체링 밋상은 1717년 달라이 라마 6세를 둘러싸고 가열되었던 티베트 내부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 군대를 끌고 들어온 준가르가 어떻게 티베트 내부 민심을 잃었는지 설명하면서 준가르의 겔룩빠 우선주의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²⁹⁾

1717년 12월 3일, 거짓된 달라이 라마 6세를 옹립하고 티베트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이유로 라싸에 들어온 체왕 랍탄과 준가르는 비-겔룩빠 사원을 부수고 닝마빠를 비롯한 다른 파벌들의 주요 종교적 유적지를 파괴했다.³⁰⁾ 1704년 출생해 1700년대 티베트 불교사를 기록한 Sum pa mkhan po Ye shes dpal 'byor의 사료는 이 당시 준가르의 행적을 좀 더 자세히 알려준다.

“준가르 군대는 라싸에 침입하여 라짱[칸]을 무찌르고 그에게 삶의 비유한성을 보여주었다. Stag rtse의 지배자 mTsho skyes rdo 섭정

29) Tsering Batsang, T. “Reflection on the Dzungar Persecution of the rNying ma School of Tibetan Buddhism in the 18th Century, Focusing on Its Cause and the Scale of the Destruction.” *Revue d'Etudes Tibetaines*, no. 68, 2024 January, pp.206-248

30) Desideri, “Mission to Tibet: The Extraordinary Eighteenth-century Account of Father Ippolito Desieri,” 2014, pp. 249 (Tsering Batsang, T. “Reflection on the Dzungar Persecution of the rNying ma School of Tibetan Buddhism in the 18th Century, Focusing on Its Causes and the Scale of the Destruction.” P.229에서 재인용)

으로 지명되었다. 그 후에, 준가르…의 지령에 따라, 닝마 bla ma rDorje brag sprul sku의 고위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1718년과 1719년에 모두 숙청되었다. 수도원들[자세한 수도원들 이름 나열]도 모두 파괴되었다.”

Sum pa mkhan po는 아주 명확하게 “준가르가 부처의 가르침을 ‘정화’하였으며 … Tsong kha pa[겔룩빠의 사상적 기초]의 가르침을 드높였다.”라고 서술하기도 했다.³¹⁾

그러나 겔룩빠 우선주의적인 태도는 티베트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대외적으로는 겔룩빠의 대표였지만 대내적으로 닝마빠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던 달라이 라마 5세부터 상계 가초까지 라싸 내부는 준가르보다 더 타 종파를 관용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렇기 때문에 1717년 12월 준가르에 의해서 내려진 전국적인 닝마빠 가르침에 대한 규제와 대규모 반달리즘은 소수의 겔룩빠 우선주의자들 외에는 공포를 불러오는 것이었다. 당시 라싸의 관료였던 mDo mkhar Tseh ring dbang rgyal의 기록 역시 겔룩빠가 자행한 반달리즘의 부정적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기술되어 있다.

“티베트 땅에서 준가르 군사들은[붓다의] 가르침을 해쳤고 많은 고승들을 죽였다. 그들은 dBus와 gTsang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기도 했다. 그들의 음식과 물 역시[빼앗겼다.] 간결하게 말해서, 그들은 말과 좋은 풀을 비롯한 많은 추가적인,

31) Ye shes dpal 'byor(1704-1788), “History of the Gelug Monasteris of Tibet and the Annals of Kokonor”, 1982. (Tsering Batsang, T. “Reflection on the Dzungar Persecution of the rNying ma School of Tibetan Buddhism in the 18th Century, Focusing on Its Causes and the Scale of the Destruction” P.230에서 재인용)

새로운 세금을 거뒀고; 공공을 괴롭혔으며 그들더러 단 한 순간도 행복한 [삶]을 누리게 놔두지 않았다.”³²⁾

IV. 중앙아시아 패권 경쟁에서의 청나라

2. ‘문수보살’의 수사적 의미

이와 비교하여 청나라는 적어도 갈단과 싸우던 1679년까지는 티베트 불교의 수호자로서 자신을 인지하지 않았다. 티베트 불교 내부에서 청 황제의 지위가 무척이나 수사적인 것이며 현실 정치와 거의 연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티베트 불교에서 중원의 지배자는 ‘문수보살’로 치환되었다. 이는 종교적으로 문수보살이 중국의 오대산에 산다는 전설이 내려져 왔기 때문이다. 즉, 오대산을 포함한 영역을 다스리는 중국의 통치자는 관음보살의 화신인 달라이 라마, 아미타불의 화신인 판첸 라마와 병렬하여 존중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문수보살로서의 지위는 어디까지나 지리적인 근거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실제로 그 황제가 어떤 민족에서 나왔는지와는 관련이 없었다. 원나라의 쿠빌라이 칸은 문수보살의 화신

32) mDo mkhar Tshe ring dbang rgyal “Mid bang rtogs brjod” 1981. pp. 379 (Tsering Batsang, T. “Reflection on the Dzungar Persecution of the rNying ma School of Tibetan Buddhism in the 18th Century, Focusing on Its Causes and the Scale of the Destruction.” P.237에서 재인용)

이었고 명 성조 역시 문수보살의 화신이었다. 1641년, 당시 티베트 불교의 실질적 지배자였던 구시 칸은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를 두고 ‘문수보살의 화신’이라고 불렀고, 1646년 순치제가 청조로의 계승에 승리하자 곧바로 그를 문수보살의 화신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가장 승리한 문수보살의 화신이 명나라의 권력을 장악하고 중국을 점령했으며, 위대하고 자비로운 관음보살이 전륜성왕으로 화신하여 우리 칸이 점령한 티베트를 교화하고 있다.”

따라서 문수보살이라는 지위는 수사적인 것에 그쳤으며, 중원의 정치적 싸움에 실질적인 힘을 쏟아주지는 못했다. 반대로 중원의 통치자가 문수보살의 화신이라는 지위를 매개로 중앙아시아에 대한 실질 통치권을 인정받는 일도 없었다. 1635년 청나라는 “모든 몽골인의 대칸”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어 원 제국의 유산을 계승할 정당성을 얻었으나, 이는 몽골 민족을 통치할 수 있다는 뜻에 불과했다. 실질적으로 몽골 제국이 통치하고 있던 모든 땅을 청나라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는 아니었다. 즉, 문수보살이라는 티베트 불교적 지위는 이미 복속한 몽골 민족이 청 황제에게 반발하지 않도록 만들 수는 있었으나, 새로이 일어나는 몽골 제국을 합리적으로 장악할 근거를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 할하 몽골의 투항과 ‘천자’ 논리의 적용

그렇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의 패권 경쟁에서 청나라가 몽골족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티베트 불교에서 비롯된 권위가 아니라 자신들

이 실질적으로 중앙아시아 평원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도덕적 의무에 충실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했다. 1688년 할하와 준가르의 분쟁, 그리고 이에 따른 할하 몽골의 청나라 투항은 ‘천자’로서의 청 황제의 지위가 중앙아시아까지 닿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앞서 쿠빌라이의 방계로 출발한 준가르가 혈통에서 부족한 정당성을 메우기 위해 종교를 적극 활용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혈통적인 방면에서 볼 때, 준가르보다 더 우위에 있었던, 즉 몽골족의 ‘본가’로 취급되었던 나라가 할하였다. 1662년 할하는(마치 준가르 좌익을 통치하던 생계가 1670년 준가르 우익의 이복형제에게 살해당한 것처럼)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할하 우익이 권력을 두고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이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할하 좌익이 우익을 사실상 통치하는 모양이 되자, 이것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강화 회의가 열렸다. 1686년의 강화 회의에는 할하 우익의 대표(시라), 달라이 라마 5세를 대리하는 라싸 간덴 사원의 좌주, 할하 좌익의 대표(자쿤 도르지와 쩍춘담바 후투투 1세), 강희제의 대리인 청나라 이번원의 상서 아라니가 입회했다.³³⁾

이 강화 회의에서 할하 좌익의 자쿤 도르지가 할하 우익(자삭투 한가)의 백성들을 반환하고 더는 자삭투 한가의 지배를 침범하지 않는 내용의 화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자쿤 도르지가 이 화약을 이행하지 않고 자삭투 한가를 멸망시키자, 1688년 갈단의 준가르는 할하를 궤멸시킨다. 할하와 준가르 사이에서도 흥미로운 종교적 역학 관계가 보인다. 갈단은 쩍춘담바 후투투 1세의 스승의 전생자로 인정받았다. 그러한 쩍춘담바 후투투 1세가 자신의 스승을 대리하는 간덴 사원의 좌주와 동등한 것처럼 행세하는 것을 달라이 라마 5세와 자

33) 강희제의 편지, 오카다 히데히로 지음, 남상궁 역. 2014.

신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여 더 분개했다는 설이 있다.

이 일화가 어디까지 사실이었는지, 또 얼마나 간단한 군사적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쳤는지는 미지수다. 다만 당시 티베트가 할하몽골이 겔룩빠가 아닌 다른 종파와 연합할 가능성을 경계했다는 점, 쩍춘담바 후투투 1세가 달라이 라마 5세와는 다른 영적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였다는 점, 추후 달라이 라마 5세의 섭정 상계 가초가 쩍춘담바 후투투 1세의 실각은 환영했다는 점은 이 당시 준가르-할하 사이에 혈통적인 경쟁 외에도 종교 분쟁적인 측면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준가르에게 패배한 할하(쩍춘담바 후투투 1세와 자쿰 도르지)는 청나라로 도망쳐 강희제에게 귀순을 요청했다. 할하의 귀순은 향후 청나라가 준가르를 ‘징벌’할 때 무척이나 중요한 명분으로 떠올랐다. 이제 강희제는 옛 할하에 살았던 백성들의 안위를 보살피고 이 지역의 분쟁거리를 정당하게 토벌할 수 있는, 즉 할하 몽골의 ‘형’이자 ‘아버지’, 그리고 ‘천자’가 되었다.

1691년의 도론 노르 회맹은 강희제가 이러한 지위를 견고하게 굳히기 위해서 기획된 이벤트였다. 도론 노르 회맹은 청나라와 준가르의 우란부통 전투에서 준가르가 대승을 거두고 난 직후 이루어진 회맹으로, 청나라는 내몽골 부족들과 투향한 할하 수령들이 모두 이 회맹에 참석하게 했다. 도론 노르는 원나라의 쿠빌라이 한이 나라의 여름 수도를 지은 곳이기도 하다.³⁴⁾ 쩍춘담바 후투투 1세는 “깊은 자비를 가지고 중생을 구하고 널리 이익을 퍼는 것이 부처입니다만 신들은 폐하의 은혜를 받아 특히 구원을 받았습시다. 이것이야말로 활

34) 상동, p. 83

불을 만난 것입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이라고 인사했다. 할하의 세 명의 한이 삼궐구고두의 예를 바치자 강희제는 할하 수령들을 팔기에 편성시키고 청조의 작위를 내렸다. 이로 인해 강희제는 공식적으로 할하의 통치자가 되었다.

할하의 삼궐구고두가 있고 난 후 바로 다음 날 강희제는 열병식을 거행했다. 청군의 전투대형과 나팔소리, 전투 개시의 함성, 소총 소리 등은 할하 사람들이 여럿 입회한 가운데에 진행되었다. 일련의 의식은 팔기에 소속된 몽골인들과 새로이 편입된 할하 몽골에게 청이 무력적으로 절대 준가르에게 밀리지 않으며 무척 우세하다는 것을 증명해주었다.³⁵⁾

젍춘담바 후투투 1세의 ‘활불’ 표현에도 불구하고 강희제가 갈단을 토벌하러 나갔을 때 중점으로 두었던 것은 천자로서의 의무였다. 1696년 갈단을 처벌하기 위해 나선 제1차 친정에서 강희제는 이렇게 연설한 바 있다.

“갈단이 할하와 외변 몽골인들의 재산을 빼앗고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짐은] 천지 종묘사직에 고한 뒤 갈단을 반드시 멸하려고 출정하였다. … 우리 조상 태조 고황제, 태종 문황제께서는 스스로 검을 휘두르며 나라를 세웠다. 짐이 선조를 본받아 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가 약속을 깨뜨리고 이대로 돌아가게 되면 서로 군은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빠진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북경에 돌아가 천지, 태묘, 사직에 무어라고 아뢴 것인가?”³⁶⁾

35) 상동, p. 86

36) <청성조인황제실록> 172권 강희35년4월, <친정평정상모방략> 22권, 강희35년 4월 을미의 기록(오카다 히데히로, 남상궁 역의<강희제의 편지> p.107-8에서 재인용)

강희제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자신의 출병을 무를 수 없음을 설명한다. 첫째, 갈단이 할하를 괴롭혔기 때문에 할하의 대변인, 또는 할하의 통치자로서 반드시 갈단을 벌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만주 황제의 후예로써 검을 휘두르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서로군 한 개 대대로 갈단을 상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점이다. 갈단을 공격하는 이유에 티베트 불교에 대한 언급은 없다. 오히려 자신에게 복속한 할하를 마땅히 돌봐야 하는 도덕적 의무가 나타난다.

그의 천하적 사고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강희제는 1696년 5월 14일(음력4월14일) 즈음 명의 성조 영락제 시절 외몽골 원정 기념으로 금호산 바위에 새겨진 명문을 보게 된다. 금호산 바위에는 “대명황제가 오랑캐를 토벌하고 육군을 거느리고 이곳을 지나다. 짐이 이곳을 지난 것은 4월14일; 고비가 칼날이 되고 천산이 칼등이 되도록 오랑캐를 일소하여 영원히 사막을 깨끗이 하리라.”라고 적혀 있었다. 강희제는 5월 15일 황태자 윤잉에게 전하는 편지에 따로 종이를 꺼내고 “짐이 이곳을 지나는 것은 바로 4월 14일”이라고 한문으로 베껴 썼다.³⁷⁾ 그가 갈단을 토벌하는 논리의 기반으로 ‘오랑캐를 일소하여 영원히 사막을 깨끗이 하는’ 중화적 사상이 분명히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강희제의 제1차 친정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강희제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갈단은 도주했다. 그러나 도주하다가 존 모드에서 청나라의 서로군을 맞닥뜨리게 된다. 존 모드 전투에서 갈단군의 주력은 궤멸했다. 갈단의 조카 체왕 랍탄이 준가르 본국에서 실권을 잡고 있었고, 이때까지만 하여도 체왕 랍탄과 청나라는 협력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금 힘을 기를 수도 없었다. 많은 오이라트 부족민과

37) 만무주점 한역 문서162, p.77, 황태자의 주접에 기록된 주비(5월14일) (오카다 히데히로, 남상궁 역의<강희제의 편지> p.113에서 재인용)

준가르 사람들이 청나라에 투항한다. 그 중 한 명은 갈단의 부하 담바 하시하였다. 강희제는 황태자 윤잉에게 보내는 6월 17일자 편지에 담바 하시하가 이렇게 말했다고 쓴다.

“스스로 생각하건대 주인(갈단)은 맹세를 깨뜨리고 폐하에게 죄를 얻었기 때문에 천벌이 내려 파국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이 전부터 사람을 죽이고 남의 처자를 갈라놓고 살아와서 지금의 화가 자신들에게 미친 것입니다. … 우리는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향하는 곳엔 적이 없었지만, 만주에 적대하는 자는 천하에 없으므로 자신들의 오이라트는 멸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³⁸⁾

담바 하시하가 실제로 이러한 말을 했을 지는 미지수다. 강희제가 황태자 윤잉에게 보내는 편지는 청 조정의 대신들과 황태후에게 공유될 만한 것이었으며, 강희제는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황태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강희제 스스로가 ‘만주에 적대하는 자는 천하에 없다’라는 인식이 몽골족 내에 있다는 인식을 청조에 공식적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는 점이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갈단의 무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이는 강희제의 친정을 정당화하는 강력한 이유로서 사용되었다.

천자로서 중앙아시아의 혼란에 개입할 도덕적 의무는 갈단이 죽은 후에도 이어졌다.³⁹⁾ 갈단의 정치적 라이벌이자 조카인 체왕 랍탄을 제압할 때도 강희제는 유사한 논리를 사용했다. 1705년(강희44년), 강희제는 체왕 랍탄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38) 만문주첩 문서53, pp.244-254, 황태자에게 보내는 상서(6월17일) (오카다 히데히로, 남상궁 역의<강희제의 편지> p.147에서 재인용)

39) 조병학, “18세기 초 청·준가르몽고 관계 연구 –<청내각몽고당당> 중 체왕 랍탄[tsewang labtan]관련 기사 중심으로-”, 2011.

“을 겨을 너의 곳으로부터 도망해온 부르구터이의 말에 따르면, 체왕 랍탄이 군대를 준비하여, 할하 등을 노획하고 토벌한다고 말했다. … 네가 약탈해간 우리의 단진 랍탄 부하들의 여인과 아이들, 또 우리의 도망간 도망자들을 하나도 숨기지 말고 전부 보낸다면, 너의 압둘라 자이상 등의 회자들을 나중에 보내고 사신 무역을 예전대로 행하게 하겠다. 만약 보내지 않는다면 압둘라 자이상 등을 보낼 일이 없으며 너의 사신 무역 또한 행하지 마라.”⁴⁰⁾

4년 후인 1709년(강희48년)의 당당은 좀 더 적나라하다.

“예전의 체왕 랍탄 너는 갈단과 반목한 모든 일을 성심으로 상주하여 행한 일로 나는 어여삐 여겨 너의 사신 무역을 행하게 하였으며, 수없이 좋은 칙서를 내려 은혜를 베풀어 사신을 파견하였다. 후에 단진 랍탄이 찾아온 것을 체왕 랍탄 너는 군대를 파견하여 카룬을 밀고 들어와 추격하는 사람을 보내(사람과 물건을) 빼앗아 갔다. … 또 모든 왕, 대신들, 천하의 모든 생명체가 모두 감화되어 하나로 살아가는데 오직 체왕 랍탄이 이처럼 외톨이로 있다는 하니, 내 천성대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여, 너의 잘못을 모두 관대히 용서해주었다. … 체왕 랍탄 네가 반드시 전례대로 사신 무역을 하고 싶다면 네 스스로 알타이, 향가이, 홉드, 우란 굴 등에서(행하는) 회맹에 오라. 그렇지 않고 네 생각에 어떤 곳에서 만나고 싶다면 회맹 장소를 정하고 빨리 상주하라. 아직(여전히) 전의 칙지대로 너와 함께 회맹에서 의논하고자 한다.”⁴¹⁾

40) <청내각몽고당당> 11권No.250, 강희44년10월30일의 기사. (조병학, “18세기 초 청·준가르몽고 관계 연구:<청내각몽고당당> 중 체왕 랍탄[tsewang labtan] 관련 기사 중심으로-”, 2011, p.235에서 재인용)

41) <청내각몽고당당> 11권No.255, 강희48년11월 13일의 기사. (조병학, “18세기 초 청·준가르몽고 관계 연구:<청내각몽고당당> 중 체왕 랍탄[tsewang labtan]

천하의 안정을 구가해야 할 천자로서 체왕 랍탄의 비협조성을 더는 좌시할 수 없으므로 하루 빨리 청나라가 주도하는 회맹에 참석하라는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다. 강희제는 체왕 랍탄과 자신의 관계를 동등하게 보고 있지 않다. 이는 갈단을 친정하려 나섰을 때 ‘벌을 주겠다’고 천명한 것과 비슷한 논지다. 강희제가 직접 통치가 아닌 회맹이라는 해결책을 통해 준가르를 복속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세 차례의 친정, 그것도 먼 중앙아시아까지의 친정을 도모한 당시 청나라에는 또 다른 대규모 친정을 벌일 만한 여력이 남아 있지 않았다. 또한 갈단 친정의 사례와는 다르게 체왕 랍탄이 준가르 내부에서 싸울 수 있다는 점도 청나라에게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둘째, 갈단과 강희제의 관계와 다르게 체왕 랍탄과 강희제는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협력 관계에 있었다. 이를 명시적으로 깨는 사건이 없다면 갈단의 사례에서는 설득력이 있었던 ‘정벌’의 논리가 무너질 수 있었다. 천자 스스로 천하의 안정을 깨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로사비가 이해한 것처럼 당시 청나라에게는 다중적 자기인식이 분명히 존재했다. 만주족이지만 몽골족과의 혼인으로 인해 몽골과 가까웠고, 몽골의 전투력과 군사력은 중국의 다수인 한족을 누르고 천자로 인정받는 중요한 배경이 되어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몽골족의 대변자로 준가르몽골이 떠오르는 것은 청나라에게 단순히 변경 지역의 불안뿐만 아니라 국가 내부의 기반을 흔드는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주지해야 될 점은, 그렇다고 해서 청나라가 한족 세계의 대표자인 천자로서의 위치를 버리면서 몽골 통합에 집중하지는 않았

관련 기사 중심으로-”, 2011, p.239에서 재인용)

다는 점이다. 청나라는 선부르게 갈단이나 준가르가 차지하고 있는 티베트 불교에서의 정체성에 도전하려 들지 않았다. 강희제 집권 시기 청나라는 티베트 불교를 존중했지만 자신더러 활발이라고 지칭하지 않았다. 달라이 라마5세의 사망이 밝혀지고 일대 혼란이 벌어진 티베트를 안정시키기 위해 ‘가짜 달라이 라마’ (즉 달라이 라마 6세)를 잡아오라고 하는 명을 보면 당시 청나라가 티베트 불교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 수 있다.

“내 뜻은, 몽골 대중의 마음은 모두 달라이 라마에게 기울어있어, 그가 비록 가짜 달라이 라마일지라도 달라이 라마라는 이름으로 몽골 대중은 모두 그에게 복종한다. 만일 조정에서 사람을 보내 잡지 못하고 채왕 랍탄이 가서 맞이한다면 서역 몽골은 모두 채왕 랍탄에게 향할 것이다.”⁴²⁾

즉, 달라이 라마가 진실된 자인지 아닌지는 청나라에게 그리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 이는 달라이 라마 7세 칼상 감초에 대한 청나라의 입장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현상과 일맥상통한다. 강희44년(1705년) 청나라는 원래 지목되었던 달라이 라마 6세 대신 당시 청조가 후원하고 있던 티베트의 권력자 라짱 한이 옹립한 새로운 달라이 라마 6세의 지위를 인정한다. 그러나 강희56년(1717년) 준가르의 채왕 랍탄이 청조가 폐위한 6세의 전생자라며 ‘칼상 감초’를 내세워 라싸로 밀고 들어온다. 3년이 지난 강희59년(1720년), 청나라는 칼상 감초를 달라이 라마 7세로 공식 승인하고 라싸에 진군해 준가르부에 대한 대규모 군사 작전을 감행했다.⁴³⁾

이러한 정치 행위에서 강희제가 티베트 불교의 종교적인 면모보다

42) Zahiruddin Ahmad, “Sino-Tibetan relations in the seventeenth century.” 1970.

43) 류정아, “준가르부 침공 기간 중 청조의 티베트 지배의 실상.” 2009.

는 현실 정치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훨씬 더 높게 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겐룩빠 우선주의를 주창하다가 티베트 내부에서 민심을 점점 잃어버린 준가르몽골과는 사뭇 대립되는 행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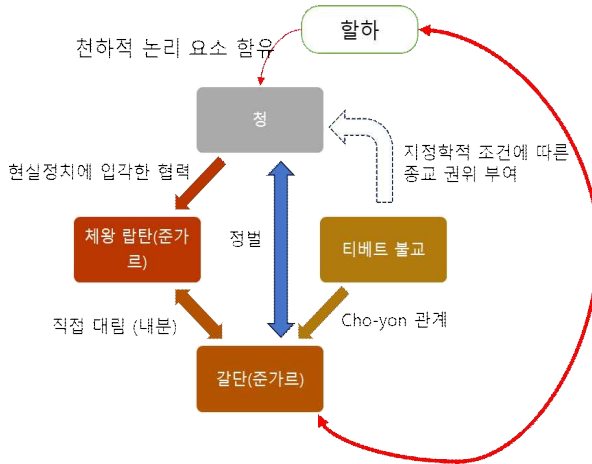
강희제가 있었을 때의 청나라는 티베트 불교를 어디까지나 중앙아시아의 민심을 좌우하고 정치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장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위에서 보았듯 강희제가 갈단을 대응할 때나 체왕 랍탄을 대응할 때 그는 천자로서의 자기 위치를 끈질기게 사용했다. 강희제는 달라이라마가 몽골 대중의 민심을 결정짓는 요소임을 알았으나, 그만큼 이미 달라이라마에게서 종교적인 권위를 인정받은 준가르몽골과 동일한 명분을 가지고 싸운다면 자신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았다. 또 한 편으로는 한족이 완전히 만주족에 대한 신뢰가 자리잡지 않은 상황에서(강희제는 1673년부터 1681년까지 삼번의 난에 시달렸다) 선불리 다른 종교를 믿는 이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선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 놓인 강희제에게 할하 몽골의 투항은 중앙아시아 패권을 두고 경쟁할 정당성을 부여하는 전환점이었다. 투항 이전까지 준가르는 “겐룩빠의 수호자”라는 종교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몽골 세계에서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갈단의 ‘보속투 칸’에 대항하는 것은 단순히 갈단 개인을 적으로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위를 하사한 티베트의 달라이라마를 포함하여 모든 몽골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할하 몽골이 청나라에 투항함으로써 경쟁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이제 준가르는 ‘몽골(일부라 할지라도)을 침략하고 괴롭히는 자’가 되었고 청나라는 ‘몽골 백성들의 보호자’라는 새로운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할하의 투항은 청나라의 천자 논리를 중앙아시아까지 확장하

게 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 강희제가 갈단 정벌을 ‘천지 종묘 사직에 고한 뒤’ 결정했다고 언급한 것은 이를 개인적 야심이나 변경 지역의 다툼이 아닌 천자로서의 숭고한 의무로 포장하려는 의도였다. 또한 이러한 천자 논리는 기존 몽골 세계의 정치 질서와도 양립 가능했다. 몽골족에게 천자는 낯선 개념이 아니었다. 원나라 시기부터 몽골 대칸들은 중원의 천자 역할을 겸해왔고, 명나라 시기에도 몽골 족은 중원 왕조와 조공-책봉 관계를 유지해왔다. 따라서 청나라가 천자로서 몽골을 보호한다는 논리는 종교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친숙한 전통에 기반한 것이었다. 이는 추후 티베트의 중국에 대한 지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기반을 제공했다.

〈그림4〉 할하 투항(1691)이후 중앙아시아 패권 경쟁 구도



3. 티베트 불교 수호자의 대체

1717년 준가르의 하미 공략과 이후 벌어진 준가르의 겔룩빠 우선주의 반달리즘은 티베트에서 비-겔룩빠 승려들이 탈출하거나 도망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이 청나라의 ‘천자적 의무’에 정치적 합당성을 더해줬음은 당연한 일이다. 강희제가 죽고 옹정제가 즉위한 1723년부터 청나라는 본격적으로 준가르가 잃어버린 종교적 권위를 대체하기 시작한다.

옹정 원년(1723년) 청나라는 준가르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티베트 정치인 캉첸내를 중심으로 새로운 내각을 출범시켰다. 4년 뒤 캉첸내가 암살당하자 청조는 이를 빌미로 라싸에 파병해 캉첸내 암살 세력을 숙청하고 라싸에 대신 상주하기 시작했다. 이 때 옹정제는 달라이 라마가 거주할 수 있는 사원 건립을 명하고 달라이 라마 7세를 책봉하기에 이른다. 달라이 라마 7세가 거처할 사원과 그에 따른 경비, 달라이 라마 7세의 수행원들을 지원할 경비는 모두 청조가 부담했다. 다음은 청나라의 신하였던 악종기가 청조가 달라이 라마 7세의 체제 비용을 제공할 것을 아뢰는 상소문이다.

“달라이 라마가 리탕에 도착하자마자 라싸의 모든 물자가 바로 도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도착하자마자 필요한 물자는 미리 그 지급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황상께서 겔룩빠를 진흥하시는 넓은 인덕에 부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⁴⁴⁾

이러한 상주에 옹정제는 “지극히 옳다. … 라마의 모든 사용 물자는 충족하게 지급하도록 해라.”라는 명령을 내렸다.

44) 옹정6년12월 초7일 상주, p.5 (류정아, “준가르부 침공 기간 중 청조의 티베트 지배의 실상.” 2009, p. 287 재인용)

옹정9년(1731년) 준가르와 청나라는 군사적 대립을 일단 중지하고 강화 협상을 통해 잠시 준가르부와의 관계 정상화에 돌입한다. 이 때 달라이 라마 7세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었던 쪽은 준가르가 아니라 청조였다. 청나라는 이 시기 과친왕을 파견하여 달라이 라마 7세와 회담을 하고 오도록 명령했는데, 이는 달라이 라마7세와 옹정제의 회담을 대신하려는 의도였다. 회담을 하고 돌아온 과친왕은 달라이 라마7세가 황제의 자비를 청송했다며 이렇게 보고했다.

“어렸을 때에는 성조황제[강희제]의 커다란 자비로 장군을 파견해서 병사들을 통솔해서 라싸의 달라이 라마의 성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또 다시 황상을 은혜를 입어 그것을 해야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후에 황제의 얼굴을 배견하도록이라는 언지가 있어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만 아직 천연두에 걸리지 않아 …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지금 … 다시 은혜를 받아 단지 교를 진흥시키고 성왕의 만년가복을 경하하겠다고 말씀드릴 뿐입니다.”⁴⁵⁾

티베트 사료인 달라이 라마 7세전에서도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다.

“달라이 라마께서는 당분간 도매 지역[암도와 캄 지역을 포함한 동티베트 지역]에 불교 중생을 위해 커다란 일을 하실 시기라고 생각하여 마음으로부터 황제의 언질대로 하시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⁴⁶⁾

중국 측 사료뿐만 아니라 티베트 측 자체 기록 역시 달라이 라마

45) 세종실록155권, 옹정13년4월 갑오일. (류정아, “준가르부 침공 기간 중 청조의 티베트 지배의 실상.” 2009, p. 291 재인용)

46) Lcang skya rol pa'i rdo rjes dpag bsam rinpo ch'i snye ma, p. 233 (류정아, “준가르부 침공 기간 중 청조의 티베트 지배의 실상.” 2009, pp. 291-2 재인용)

7세가 자발적으로 청 황제가 지시한 이동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고 서술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강희제의 신중한 접근으로부터 발생한 종교적 권위 대체 과정이라고 보인다. 종교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할하 몽골 차원으로 고정되었던 보호의 의무를 준가르의 종교적 권위 공백을 틈타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에 대한 보호 의무로 확장시킨 것이다.

이렇듯 천자의 보호 의무는 종교적인 권위와 점차 융합되기 시작했다. 옹정12년과 13년 〈청대옹화궁당안〉은 왕부에 티베트 불교 사원을 개축하자는 조서가 수록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옹정제 시기 이후 건륭제의 시기 때는 건륭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방대한 규모의 겔룩빠 사원 건립을 추진하게 된다. 이는 티베트 불교 신자들의 눈길을 베이징으로 유인하고, 준가르몽골과 티베트 겔룩빠 세력 사이의 연대를 훨씬 약화시키려는 시도였다.⁴⁷⁾

이러한 시도로서 건립된 옹화궁은 건륭제의 의도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옹화궁은 베이징 최대 규모의 겔룩빠 사원으로서 달라이 라마, 뵘첸 어르더니, 쩌춘담바 쿠틉투와 쟁까 쿠틉투 등 티베트 불교의 영수들이 모두 다녀가는 곳이 되어 베이징을 티베트 불교의 ‘성지’로 탈바꿈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옹화궁은 건륭제가 태어난 곳으로, 이곳을 티베트 불교 사원으로 개조한 것은 건륭제 개인에 대한 종교적 권위를 간접적으로(그렇지만 확실하게) 높이는 효과도 있었다.

따라서 다민족 제국으로서 이 시기 청나라의 정체성 설정은 단일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는 청나라 내부의 다중적 정체성과 더불어 국제정치적 고려가 수반된 일이었다. 강희제는 수사적인 말에 불과한 문수보살로서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도 있었다. 보속투 한으로

47) 안윤아, 조병학 “옹화궁 시론1 -옹화궁의 기능과 옹화궁을 통한 건륭제 시기의 티베트 불교정책-”. 2019.

서의 갈단만큼이나 티베트 불교에서 인정한 지도자가 청 황제임을 천명하고 보속투 한과 문수보살의 대등한 싸움인 것처럼 말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강희제는 갈단과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5세 사이에 존재하는 개인적인 스승-제자 관계가 훨씬 더 긴밀하며 종교적으로 접근했을 때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수사라는 점을 이해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천자 지위에 집중하고, 할하 몽골의 투항을 종교적인 것으로 비화하지 않고 오히려 천자 범위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탈바꿈시켰다. 이는 갈단과의 싸움에서 좋은 명분이 되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청나라 내부 한족의 반발을 잠재우는 효과까지 가져왔다.

‘문수보살’로서의 정체성은 갈단이 죽고 난 다음, 종교적인 목적을 명확하게 띄고 있던 준가르에 대한 인기가 점점 떨어졌을 때에 비로소 빛을 발했다. 이 때에도 청나라는 종교적인 신분을 천명하지 않고 달라이 라마 7세의 권한을 인정하면서 다만 티베트의 안녕을 지킬 도덕적 의무가 그에게 주어진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는 원래 존재했지만 허울뿐이었던 문수보살로서의 종교적 권위와 만나 준가르가 잃어버린 티베트 불교의 수호자 역할을 채우는 데에 유용하게 쓰였다.

V. 결론

페어뱅크로 대표되는 ‘한화된 정복왕조’ 이론은 청나라가 결국 전통적 천하 질서를 계승했다고 보았지만, 이는 청나라가 보여준 정체성 활용의 전략적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반면 로사비의 ‘동등자 사이의 중국’ 개념과 그로 영향을 받은 신청사적 사고는 청나라의 다민족적 특성에 매몰되어 청나라가 천자 논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측면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청나라상은 이 두 해석을 종합하되 새로운 차원을 추가한다. 청나라는 상황에 맞추어서 정체성을 관리했다. 강희제가 갈단과의 경쟁에서 종교적 정체성을 무시하고 세속적 정체성(천자)에 집중하여 강희제-갈단, 또는 강희제-제왕 랑탄의 갈등은 철저하게 도덕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나라가 휘하에 있는 다른 나라를 ‘벌 준다’ ‘정벌한다’라고 의식하게 만든 것, 반면 옹정제 이후 종교적 권위에 공백이 생기자 비로소 티베트 불교의 후원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내세운 것은 이러한 전략적 정체성 관리의 전형을 보여준다.

즉, 페어뱅크가 주목한 조선이나 안남과의 관계에서 나타는 전통 천하질서와 로사비가 강조한 서북 기마민족과의 현실정치적 관계는 사실 청나라의 동일한 전략적 사고에서 나온 서로 다른 표현이었다. 청나라는 상대방의 성격과 자신의 역량, 그리고 국제정치적 타이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정체성을 선택적으로 활용했다.

청나라와 준가르의 중앙아시아 패권 경쟁은 단순한 영토 다툼을 넘어서서 서로 다른 정체성 전략의 경쟁이었다. 준가르가 겔룩빠 수호자라는 단일하고 순수한 종교적 정체성을 내세운 반면, 청나라는 천자와 보살이라는 복합적 정체성을 국제정치적인 상황에 맞춰 순차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특히 할하 몽골의 투항을 계기로 천자로서의 보호 의무를 중앙아시아까지 확장하는 한편, 문수보살로서의 종교적 정체성은 준가르의 극단주의가 티베트 내부에서 반감을 산 이후, 즉 최적의 타이밍에 비로소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이는 청나라가 종교에 대한 실용주의적 접근을 견지한 반면 준가르가 종교적 사명에 너무 몰입하여 현실 정치에서의 우위를 놓쳤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청나라의 복합적 정체성은 정당성 요소가 쉽게 약화되지 않는 강점을 보여주었다. 천자로서의 도덕적 의무는 추후 종교적인 후원을 정당화했고, 종교적인 후원은 천자로서의 덕치를 입증했다. 할

하에 대한 보호는 천자 지위를 실증했으며 티베트 안정을 위해 달라이 라마 7세를 보호하는 것은 보살로서의 자비를 보여주는 일례였다. 이러한 상호보완적 구조는 청나라가 중앙아시아에서 지속 가능한 패권을 구축할 수 있게 해준 핵심 요인이었다.

이러한 복합적 정체성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의 질문은 현대 중국에서도 큰 울림을 가진다. 현대 중국은 ‘위대한 중화민족’이라는 슬로건 아래, 소수민족을 융합하면서 국가의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 현대 국가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러나 소수민족의 민족어를 국가시험에서 배제하고, 국가의 통일된 목표 지향을 위해 민족적 특수성을 점진적으로 약화시키는 현재의 접근법은 청나라의 전략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청나라의 경험이 현대 중국에 주는 교훈은 복합적 정체성의 전략적 활용이 단순한 동화나 억압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청나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 대내성을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적재적소에 조율했으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정체성을 전환함으로써 장기적 안정을 확보했다. 현대 중국이 추구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성과를 거두려면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복합적 자기인식이 대내의 소수민족들에게도 통용되어야 한다. 즉, 개발도상국에게는 남남 협력의 대표자로, 또 대국들 사이에서는 책임감 있는 대국의 대표로 보이게 하려는 그 유연성이 소수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대하는 데에서도 발휘되어야 한다.

청나라와 준가르 중 청나라가 티베트 불교의 지지를 얻고 결국 준가르를 멸망시키는 데에 성공한 가장 주요한 이유는 다양성을 통일성의 적이 아닌 자산으로 활용한 데 있었다. 이는 21세기 다민족 국가의 운영에도 여전히 유효한 통찰을 제공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 〈강희제의 편지〉 오카다 히데히로 지음, 남상궁 옮김. 1979. 경인문화사.
- 〈열하의 피서산장〉 웨난·진취엔 지음, 심규호·유소영 옮김. 2003. 일빛.
- 〈Emperor of China: Self-Portrait of Kang-Hsi〉 Spence, J. 1974.
- 〈清代潘部研究——以政治变迁为中心〉 张永江. 2013. 黑龙江教育出版社.
- 〈康熙事典〉 王思治 编著. 2010. 紫禁城出版社.

2. 논문

- “18세기 초 청·준가르몽고 관계 연구.” 조병학. 2011
- “준가르부 침공 기간(1728-1733) 중 청조의 티베트 지배의 실상.” 류정아.
- “옹화궁 시론I. -옹화궁의 기능과 옹화궁을 통한 건륭제 시기의 티베트 불교 정책-.” 안윤아, 조병학.
- “갈단이 티베트에 보낸 서신의 만/한역 비교 분석 시론.” 조병학. 2013.
- “강희제의 제1차 대 준가르 몽골 친정 과정 및 영향.” 조병학. 2013. 몽골학 제34호.
- 17세기 중후반 준가르의 정치-생계의 집권기를 중심으로-, 윤성제 (2014)
- “The Tibet-Dzungar Ideological Alliance’s Challenge to the Qing

Empire and the Adaptation of Qing Ideology in the mid-18th century.” Wang, X. 2021. Historiskainstitutionen. [Master’s Thesis]

“Lamas, Emperors, and Rituals: Political Implications in Qing Imperial Ceremonies”, 1993, Hevia J.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Sino-Tibetan Relations in the Seventeenth Century”, Zahiruddin Ahmad, 1970.

『萬國公法』 번역과 질서의 충돌 이화원

이현

이화여자대학교

I. 서론

19세기 중후반, 중국은 서구 열강의 침략과 외교적 압력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전통적 세계관인 ‘천하(天下)’ 질서는 심각한 위협을 받았고, 국가적 위기감 속에서 세계에 대한 중국의 인식 역시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서양의 국제법(International Law)이 중국어로 번역된 사건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스스로의 정체성과 세계 내에서의 위치를 재정립하려는 사상사적·정치적 행위로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1864년 윌리엄 마틴(William A.P. Martin)이 번역한 헨리 휘튼(Henry Wheaton)의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는 중국어로 『萬國公法』이라는 명칭으로 옮겨졌다. 여기서 사용된 ‘만국(萬國)’이라는 용어 선택은 단순한 언어적 대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당시 중국 지식인과 번역자들이 서구의 ‘international’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어떠한 세계관을 상상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당시 번역자들은 어째서 'international'이라는 개념에 대응하는 용어로 '만국(萬國)'을 선택했는가라는 본질적인 물음을 중심에 놓고 탐구를 전개한다. 이 질문은 윌리엄 마틴의 번역 행위를 통해 당시 중국의 세계관과 질서 개념이 서구적 개념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조정되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다. Zhiguang Yin은 이 번역이 "단순한 외국어의 도입이 아니라, '천하'와 '국제'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질서 간의 충돌이었다"고 지적하였다. (Zhiguang Yin, 2016) Yin에 따르면, 윌리엄 마틴의 번역은 서구 국가 간 평등을 전제하는 '만국' 개념을 채택함으로써, 위계적이고 중국 중심적인 천하 질서와는 다른 질서 상상력을 중국에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Zhiguang Yin, 2016) 이러한 문제 제기를 통해, 본 논문은 당시 번역 현장에서 작동한 다양한 사상적 긴장과 타협의 과정을 밝혀내고자 한다. 결국 이 연구는 마틴의 번역 선택이 가진 정치적 함의와, 중국이 전통적인 세계관을 재구성하며 근대적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겪었던 개념적 혼란과 타협을 심도 있게 조명할 것이다.

『萬國公法』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이 번역본의 도입 경위, 마틴이라는 번역자의 역할, 그리고 국제법이라는 서구 법제의 수용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이러한 접근은 청말 중국이 서구 열강과의 외교적 충돌 속에서 국제법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제도사적 관점에서 조망해왔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다. 예컨대, Yin은 윌리엄 마틴이 휘튼의 국제법을 '기독교적 보편주의'라는 틀로 재구성하여 중국에 소개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편 가치로서의 국제법이 중국의 정치 질서와 접합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Zhiguang Yin, 2016)

그러나 이 연구는 마틴의 문명론적 번역 시도에 집중하는 한편, 번역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한 중국 협력자들의 개념 인식이나 질서 체

계의 충돌, 협상의 구체적 국면에는 충분히 접근하지 못한다. Rune Svarverud의 저작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는 Wheaton의 국제법 번역이 Late Qing China의 질서 재편 및 실용적 외교 대응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음을 강조한다. (Rune Svarverud, 2007) 특히 Wheaton 번역이 단순한 문화 수입이 아니라, 서구 질서와의 적응과 자강운동이라는 국가적 기획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조명한다. 그러나 이 역시 '국제법 도입'이라는 제도사 중심의 분석에 머무르며, 정작 'international'을 '만국'으로 번역하게 된 개념사적 긴장 구조, 즉 '국제'라는 표현이 아닌 '만국'이라는 용어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적 교착 상태에 대해서는 분석이 부족하다.

한편 Han Sang-hee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국제법 용어가 어떻게 순환되고 확산되었는지를 비교사적으로 분석하면서, 일본에서는 '國際'가 표준화된 반면, 중국에서는 '萬國'이라는 용어가 자리 잡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Han Sang-hee, 2010) 그러나 이 역시 표면적 언어정책의 차이에 초점을 둘 뿐, 중국 내부에서 왜 그러한 번역어 선택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개념사적·사상사적 분석은 제공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Ignacio de la Rasilla는 Wheaton 번역을 통해 청말 중국이 국제 규범 질서의 일부로 재편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주장하였고 (Ignacio de la Rasilla & Cai Congyan, 2023), Deborah Cao는 중국 법률언어 체계에서 번역이 수행하는 문화적 기능을 분석하였다. (Deborah Cao, 2007)

그러나 이들 연구는 '번역어'의 선택이 야기하는 언어적 갈등과 정치적 타협의 장면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였고, 특히 '만국'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천하'와 '국제' 사이의 질서 인식을 조정하려 했는지에 대한 내적 복원을 시도하지 않았다. Lydia Liu가 제시한 'translingual practice' 개념은 번역의 문화정치성을 이론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지만, 이를 휘튼-마틴 번역의 실제 사례에 적용한 연구는 아직 드문 실정이다. (Lydia Liu, 1995)

요컨대, 기존 연구들은 국제법 도입의 제도사적 경위나 마틴의 번역자로서의 기획에 조명을 비추었지만, “왜 하필 만국이었는가”라는 질문에는 충분히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 번역어 선택이라는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언어적 결정은 사실, 서구 국가체계의 보편성과 중국 천하질서의 위계적 보편주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벌어진 깊은 사상적 협상과 절충의 결과였다. 본 논문은 바로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번역 현장을 사상적 긴장이 교차하는 공간으로 설정하고, 마틴과 중국 협력자들 간의 개념적 상상력의 충돌 구조를 복원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제법 제도의 도입 경위나 번역자의 개인적 의도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번역이라는 행위를 둘러싼 사상사적 맥락과 정치적 긴장을 복원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international’을 ‘만국(萬國)’으로 번역한 선택은 단순한 어휘의 치환이 아니라, 당대 중국 지식인들이 서구의 국제질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자신들의 전통적 질서 인식과 어떻게 연결·충돌·조정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결정이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9세기 중후반 청말의 국제법 번역 현장을 ‘질서 간 충돌의 장’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즉, 번역 당시의 논의 구조, 마틴과 청조 협력자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중국 지식인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전통적 공법 개념 및 천하 인식이 서구 국제법 담론과 충돌하며 발생한 의미 생성의 과정을 복원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만국’이라는 번역어가 어떻게 정치적·사상적 절충의 산물로 등장했는지를 중심에 두고 분석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일본에서는 같은 시기 ‘international’을 ‘국제(國際)’로 번역하며 서구 질서를 받아들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만국’과 ‘국제’라는 상이한 번역어 선택의 비교를 통해 중국이 보여준 언어 선택의 정치성을 조명할 것이다. 이를 통해 번역이라는 실천이 단지 외국 개

념을 옮기는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 인식과 질서 상상력을 창출하는 사상적·정치적 행위임을 드러낼 것이다.

Yin은 이와 관련하여, 중국 지식인들이 마틴의 번역에 수동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유 속에서 고유한 ‘공법’ 개념을 구성하려는 시도가 존재했음을 강조한다. 그는 번역이 단지 외래 개념의 수용이 아니라, 기존의 ‘천하’ 질서를 재구성하려는 능동적 협상의 과정이었다고 보았다.(Zhiguang Yin, 2016) 또한 Mingqian Li 역시 번역어 선택이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새로운 국제 질서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전통적 제도와 개념을 재구성한 실천이었다는 점을 분석하였다.(Mingqian Li, 2021) 더 나아가 J d’Aspremon은 중국어권과 영어권 국제법 담론이 서로 다른 의미질서에 기반하고 있으며, 같은 사건조차도 서로 다른 내러티브로 전개된다는 점을 지적한다.(J d’Aspremon, 2021) 이처럼 번역은 단지 의미를 전달하는 통로가 아니라, 문화적 해석이 개입되는 복합적 장소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이론적 논의들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왜 하필 만국이었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에 놓고, 번역어 선택의 사상사적 함의를 복원하고자 한다. 이는 중국의 국제법 수용사를 언어정치적 맥락 속에서 새롭게 조망함과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의 질서 전환과 언어 선택의 역학을 해명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II. 국제법 번역의 출발점: 제도 도입에서 질서 인식의 전환으로

1. 서구 열강과의 충돌, 아편전쟁 이후 외교의 제도화 필요성

(1) 아편전쟁의 충격과 불평등 조약 체제

1840년 아편전쟁은 청조가 천하 중심의 위계적 외교 질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직면하게 만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난징조약(1842)과 베이징조약(1860)을 통해 중국은 주권, 영토, 경제적 자율성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고, 외교는 더 이상 전통적 예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실용적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내에서 ‘신수외교(信守外交, treaty-observing diplomacy)’라는 새로운 외교 전략의 등장을 촉진했다. 이는 위계와 예법 중심의 외교 의례가 아닌, 국제 조약과 규범을 기반으로 한 법적·제도적 외교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했다. 기존의 ‘서구는 야만, 중국은 문명’이라는 외교적 자기 인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았고, 외교적 실용성과 제도화가 긴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Rune Svarverud는 이러한 변화를 “도덕적 위계질서에서 조약 기반의 외교로의 인식론적·제도적 전환”으로 설명한다.⁴⁸⁾ Deng과 Fairbank 또한 난징조약 이후 청조가 불평등 조약 체제 속에서 서구의 ‘주권 평등’ 원칙을 수용하게 되었음을 지적하며, 이는 중국 외교 정체성의 근본적 변화였다고 분석한다.⁴⁹⁾ HanSang-hee는 이 시기를 중국 법제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간주하면서, 서구의 압력 속에서 중국은 법을 강제와 복종의 수단이 아니라 협상의 구조로 인식

48) Rune Svarverud, *International Law as World Order in Late Imperial China*, Brill, 2007, p. 36.

49) Deng Siyu & John K. Fairbank, *Research Guide for China's Response to the West*, Harvard University Press, 1954, p. 51.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조약·주권·법률 등의 개념을 번역하고 이해할 필요성이 촉발되었다고 본다.⁵⁰⁾

이러한 외부적 충격은 동시에 내부적 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전통적 외교문서와 예의서신, 조공 예절에 의존한 외교 체계로는 근대 국가들과의 실제적인 외교 대응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861년, 청조는 총리아문(總理衙門)을 설치하여 보다 실무적인 외교 대응 기구를 출범시켰으며, 국제법 번역 사업은 이 새로운 외교 제도 구축의 일환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결국 아편전쟁은 단순한 무력 충돌을 넘어, 중국이 자신이 위치한 세계 질서의 근본 틀을 재검토하게 만든 계기였다. ‘만국공법’의 번역은 이와 같은 변화의 산물이며, 청조가 법적 언어와 외교 규범을 통해 서구 열강과 새로운 방식의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 속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Ignacio de la Rasilla와 Congyan Cai가 지적했듯, 아편전쟁은 “중화 중심 세계관의 인식론적·존재론적 기반을 분열시킨 사건”이었다.⁵¹⁾ 따라서 번역은 단지 제도의 도입이 아니라, 사유 방식의 전환이기도 했다.

(2) 총리아문(總理衙門)의 설립과 의의

1861년 3월, 공친왕(恭親王)의 주도로 설립된 총리아문(總理衙門, Zongli Yamen)은 청조 외교 체계의 역사적 전환을 상징하는 제도적 사건이었다. 공식 명칭인 ‘총리각국사무아문(總理各國事務衙門)’은 ‘모든

50) Han Sang-hee, *The Circulation of International Legal Terms in East Asia*, p. 4.

51) Ignacio de la Rasilla & Cai Congyan, *The Cambridge Handbook of China and International Law*, 2024, Ch. 1.

국가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관청’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며, 기존의 조공 중심 외교 질서로부터 벗어나 다자간 외교 관계를 상정하는 새로운 외교 인식의 전환을 예고했다. 이는 1729년 옹정제의 군기처 설립 이후 청조 중앙기구에서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제도적 혁신이었다는 점에서, 외교뿐 아니라 행정사상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⁵²⁾

총리아문은 이전의 임시적 외교 대응 기구들과는 달리, 외국과의 상시 외교를 수행하는 상설 기관이었다. 이를 통해 청조는 서구 열강의 존재를 단순한 ‘화이의 경계 밖 존재’가 아니라, 교섭 가능한 주권 국가들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실제 외교 실무를 담당할 전문 관청이 필요하다는 내적 자각에 도달한 것이다. 특히 ‘各國’이라는 표현은 과거의 ‘천하’적 언어체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다국적 질서와 수평적 외교 구조를 암시하는 언어적 전환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Ignacio de la Rasilla와 Cai Congyan은 이 명칭에 주목하여, “Zongli Yamen의 명칭에서부터 이미 중화 중심 질서에서 국제적 외교 사고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반영되었다”고 분석한다.⁵³⁾

총리아문은 단순한 외교 대응기구를 넘어, 이후 청조의 ‘자강운동’과 ‘동치중흥’을 이끄는 핵심 제도 기반이 되었다. 공친왕과 문상(文祥)의 지도 아래, 총리아문은 외국 공사들과의 협상, 조약 해석, 통번역 업무는 물론, 서구 제도와 법률에 대한 연구와 번역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곧 국제법이라는 낯선 개념에 대한 제도적 수용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며, ‘만국공법’ 번역 작업 또한 이 기관의 주도 하에 착수되었다. Svarverud는 이를 “Wheaton의 국제법 번역은 Zongli Yamen의 주도로 시작된 체계적 대응이었다”고 평가하며, 당시 청조가 국제 질서에 실질

52) Masataka Banno, *China and the West, 1858–1861*, Harvard University Press, 1964, p. 87.

53) Ignacio de la Rasilla & Cai Congyan, 위의 책.

적으로 편입되려 했던 시도를 제도 차원에서 입증한다.⁵⁴⁾

총리아문 설립의 정치적 정당성은 마틴이 직접 언급한 회고적 기록에서도 드러난다. 『A Cycle of Cathay』에서 마틴은 “공친왕 자신이 직접 나에게 서구 국가들이 어떤 법에 따라 관계를 맺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번역을 의뢰했다”고 밝히고 있다.⁵⁵⁾ 이로 미루어 볼 때 『萬國公法』의 번역은 개인의 자발적 선교 활동이나 학술적 호기심이 아닌, 청조 외교 전략의 일환으로서 제도적으로 기획된 실천이었다.

이처럼 총리아문은 서구 열강의 압력에 ‘정면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제도였지만, 동시에 청조 내부의 질서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지표였다. 전통적인 외정-내정 분리 구조 속에서, ‘외정’을 전문적·제도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총리아문의 등장은 이후 Wheaton 번역이라는 구체적 작업의 실현 기반이 되었으며, ‘각국’이라는 언어 인식은 이후 ‘만국’이라는 번역어 선택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총리아문은 단순한 관료 조직을 넘어, 질서 감각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구현한 장소로서 해석될 수 있다. 총리아문은 단순한 외교기구가 아니라, 중국이 ‘천하’에서 ‘각국’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언어 감각의 제도화를 보여주며, 이후 ‘萬國’이라는 개념 선택의 구조적 기반을 제공했다.

2. 국제법 번역 대상의 선택과 도입 배경

(1) 국제법 지식의 필요성 인식

청 정부가 국제법 번역이라는 결단을 내리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은,

54) Rune Svarverud, 위의 책, p. 39.

55) William A. P. Martin, A Cycle of Cathay, 1900, p. 276.

단순한 외교 기술의 부재가 아니라 국제 외교 질서의 룰을 몰랐다는 사실 자체가 외교적 약점이 된다는 현실 인식이었다. 특히 공친왕은 아편 전쟁 이후 불평등 조약 체제에 내재된 서구의 법적 논리와 제도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외교 무대에서의 협상력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그는 로버트 하트(Robert Hart)의 조언을 받아들여, 윌리엄 마틴(W. A. P. Martin)에게 서구 국제법의 핵심 규범이 체계화된 헨리 휘튼(Henry Wheaton)의 『국제법 요소(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를 번역할 것을 공식 의뢰하였다.⁵⁶⁾

이 번역 작업은 단순히 서구 법이론의 수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총리아문이 실제로 외교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텍스트를 전략적으로 선별하여 24개의 장을 번역하게 했다는 점에서, 청 정부는 국제법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전 외교를 위한 생존 도구로 간주하고 있었다. 특히 마틴이 사용한 판본은 Wheaton 원서의 6판이자, 미국 외교관 윌리엄 비치 로렌스(William Beach Lawrence)가 주석을 덧붙인 1855년판이었다. 이 판본은 외교, 조약, 전쟁, 사절단의 권리 등 실제 국제 분쟁과 교섭의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국제법=문명국의 외교규범’이라는 가치질서 또한 강화되었다.⁵⁷⁾

이러한 전략적 번역 결정은 당대 중국의 외교관들이 처한 실질적 조건에서도 절실한 과제였다. 당시 서구 외교관들과의 교섭에서 Wheaton의 논리에 근거한 주장들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고, 청 정부는 이들 논변을 이해하고 대응할 기본적인 법률 언어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마틴은 회고록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중

56) Rune Svarverud, 위의 책, pp. 41-43

57) Yan, Tsz-ting, A study of late Qing collaborative translation, 2011, p.

국의 국제법에 대한 무지는, 그녀가 고립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 중 하나였다”⁵⁸⁾고 진술하며, Wheaton 번역이 단순한 언어작업이 아니라 중국이 ‘고립’을 벗어나 ‘문명화’로 나아가기 위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실천이었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마틴은 Wheaton 번역을 총리아문의 요청에 따른 수동적 수행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나는 Wheaton의 국제법을 중국어로 번역할 필요성을 끊임없이 주장해왔다”⁵⁹⁾며, 본인의 적극적 판단과 신념에 따라 이 번역을 수행했음을 분명히 한다. 이는 ‘총리아문이 마틴에게 번역을 지시했다’는 일방적 설명을 넘어서, 당시 번역 현장이 개인 번역자의 문명론적 신념과 청 정부의 외교 전략이 교차한 장소였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번역의 내용 자체도 마틴의 신학적·문명론적 관점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며, Zhiguang Yin은 이를 “국제법이 단순히 서구 지식으로 수용된 것이 아니라, 중국 전통 질서와 접합되도록 번역의 과정에서 재구성되었다”⁶⁰⁾고 설명한다.

결국 휘튼의 국제법 텍스트 선택은, 청 정부가 자국의 외교 역량을 법률 언어로 무장시키기 위한 시도였으며, 동시에 마틴이 이해한 ‘국제법= 문명국의 보편 규범’이라는 사고방식과 접합된 정치적 번역 프로젝트였다. 이러한 이중적 동학 속에서 ‘국제법 번역’이라는 사건은 단순한 이식이 아니라, 지식과 질서가 재조정되는 사상사적 공간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58) William A. P. Martin, *The Awakening of China*, p. 285.

59) William A. P. Martin, 위의 책, p. 287.

60) Zhiguang Yin, 위의 책, pp. 7-8.

(2) 프로이센-덴마크 선박 사건과 국제법의 실용적 가치 입증

1864년, 다구(大沽, Dagu) 항 인근 중국 해역에서 발생한 프로이센-덴마크 선박 나포 사건은 청조가 국제법 번역을 단행하게 된 결정적 계기이자, 마틴 번역의 실효성을 입증한 외교적 사례로 기록된다. 당시 프로이센은 덴마크와의 유럽 전쟁 중 세 척의 덴마크 선박을 중국 해안 근처에서 나포하였고, 이에 대해 공친왕은 중국 관할 수역에서 이루어진 군사행위는 중국의 주권과 중립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였다.⁶¹⁾

공친왕은 휘튼의 책에서 제시된 전시 중립국의 권리, 그리고 국가 간 조약에 명시된 영해(Territorial Sea) 개념을 근거로 삼아, 프로이센 측에 조약 위반을 항의하였다. 그는 특히 “중국과 귀국(프로이센) 간 체결된 평화 조약에는 '중국 해양(中國海洋)'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외국과의 조약 전체에 적용되는 공통적 원칙이자 관할권의 표시”⁶²⁾라고 서한을 통해 주장했다. 이때 공친왕은 Wheaton이 규정한 중립국 해역에서의 무력행위 금지 원칙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국제법이 현실 외교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실증해 보였다.

이 사건은 양국 간의 무력 충돌로 비화되지 않았고, 중국 측의 항의가 받아들여진 채 평화적으로 종결되었다. 이후 청 정부는 Wheaton 번역의 외교적 유용성에 주목하며, 마틴의 번역본에 대한 예산 지원과 정식 출판을 승인하게 된다. 마틴은 이 경험을 회고하며 “중국 외교부로부터 감사의 상소를 받았고, 이 번역본이 자국 외교관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⁶³⁾

61) Rune Svarverud, 위의 책, pp. 45-46.

62) Rune Svarverud, 위의 책, pp. 46

이 사건은 Wheaton 번역이 단지 학문적 호기심이나 문명론적 열망에서 비롯된 작업이 아니라, 국가 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수행된 ‘실용적 번역’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또한 공친왕이 중국 전통의 ‘내해(內海)’ 개념을 Wheaton의 ‘영해(territorial sea)’ 개념에 접속시켜 서구 국제법 언어로 자국의 질서를 해석하고 정당화했다는 점에서, 당시 번역이 단지 언어의 치환이 아니라 사상적 접합의 시도였음을 드러낸다. Han Sang-hee는 이 사건을 “국제법 범주의 지역화(localization)”의 사례로 평가하며, ‘territorial sea’라는 개념이 이 시점부터 동아시아 문맥에서 구체적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고 분석한다.⁶⁴⁾

결국 1864년 다구 사건은 ‘번역의 효용성’을 실증한 외교 현장이자, ‘만국공법’이 출판되기 전 이미 중국의 외교 전략에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Carrai는 이 사건을 가리켜 “국제법이 단순히 번역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 외교 분쟁에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그 보편성과 실천 가능성을 입증한 전환점”⁶⁵⁾이라 평가한다.

이처럼 Wheaton의 국제법이 청조 외교 체계 안으로 제도적으로 도입되는 과정은, 단순한 외래 지식의 수용이 아니라, 전통 질서와의 충돌을 예고하는 변곡점이었다. 총리아문의 설립, 휘튼 번역의 승인, 번역 인력의 조직 등은 외형상 서구 질서への 제도적 적응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질서 언어’의 전환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내재해 있었다. 청말 관료들과 번역자들은 단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가능하게 하는 세계 인식, 즉 ‘국가란 무엇이며,

63) William A. P. Martin, *The Awakening of China*, p. 288.

64) Han Sang-hee, 위의 논문, pp. 6-7.

65) Maria Adele Carrai, *The Politics of History in the Late Qing Era*, 2020, pp. 12-13.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사유 구조의 전환을 마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Wheaton 번역의 본격화는 단지 기술적 작업이 아닌, 서구적 개념어들을 중국의 사상 전통 속에 어떻게 배치하고, 충돌을 조정할 것인가라는 개념사적 과제로 이어졌다. 이제 논의는 제도사적 맥락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번역자 마틴과 청조 관료들이 ‘international’을 둘러싸고 벌인 사유의 협상, 그리고 ‘만국’이라는 표현을 통해 어떤 절충이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Ⅲ. ‘만국’이라는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번역 현장의 충돌과 절충

1. 마틴의 ‘international’ 해석과 문명주의적 의도

(1) 보편주의 전략으로서의 번역: 마틴의 문명 선교와 자연법 해석

마틴에게 국제법 번역은 단순히 청조 외교의 실무적 결핍을 보완하기 위한 기술적 작업이 아니었다. 그의 시선에서 Wheaton의 국제법은 서구 문명 세계의 윤리적 우위와 질서를 표현하는 법체계였으며, 이를 중국에 이식하는 번역 행위는 곧 “기독교적 정의의 보편화”라는 문명 선교의 연장이었다. 그는 번역 작업을 통해 중국을 “신과 그의 영원한 정의(the eternal justice of God)”의 질서에 편입시키고자 하였고, 이를 문명화 사명의 일부로 인식하였다.⁶⁶⁾

이러한 전략은 단지 외교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실용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마틴은 휘튼의 자연법적 국제법을 유교적 질서 개념과 도덕적으로 조응시키는 방식으로 번역을 기획했다. Zhiguang Yin의 분석에 따르면, 그는 ‘natural law’를 ‘성법(性法)’으로 옮기며

66) William A. P. Martin, *A Cycle of Cathay*, p. 276.

유교 인성론과 연결시켰고, 국제법의 ‘보편적 정당성’을 천리(天理)라는 용어로 치환함으로써 중국 지식인의 사유틀 안에 이를 자연스럽게 배치하려 했다.⁶⁷⁾ 이 같은 번역 전략은 유교 윤리를 차용한 정치적 합리화 장치로 기능했으며, 마틴의 문명주의적 의도를 은폐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그는 더욱이 중국의 춘추전국시대를 서구 국제법의 기원으로 설정하는 고대화 전략을 취했다. Maria Adele Carrai는 마틴이 춘추전국시대를 ‘proto-international law’의 시기로 재해석하고, 당시의 제후국 간 질서를 유럽의 근대 주권국 체제에 대응시키려 했음을 지적한다.⁶⁸⁾ 마틴은 이를 통해 국제법의 도입을 중국의 전통에 뿌리내린 복원 행위로 보이게 만들었고, 중국 지식인들에게 ‘서구 질서의 수입’이 아니라 ‘고유 질서의 재확인’으로 받아들이게 하려 했다.

이러한 보편화 전략은 마틴 자신의 회고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그는 “중국이 도덕적·외교적 측면에서 문명국가들과 나란히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궁극적 목표였다고 말한다. 그의 시선에서 국제법은 ‘법’ 이전에 ‘문명’이었고, 번역은 곧 도덕적 세계 질서 설계라는 사상적 기획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번역 전략은 청조 지식인들이 이해하던 공법(公法) 개념, 즉 내외 구분과 조공질서를 전제로 한 질서 구조와는 본질적 충돌을 빚었다. 겉으로는 “도덕”과 “천리”의 언어가 같아 보일 수 있었지만, 그 안에 내포된 질서의 전제 조건—예컨대 서구식 주권국가의 평등한 분립과 계약 관계—는 천하관에 기반한 위계적 국제관과 양립 불가능했다. 결과적으로 마틴의 번역은, 청말 지식인들과 협력자들에

67) Zhiguang Yin, 위의 책, pp. 7-8.

68) Maria Adele Carrai, 위의 책, p. 10

게 단순한 번역물이 아닌 사상적 충격으로 작용했으며, 이후 1.2절에서 분석할 “중국 고대 공법의 발명”이라는 절충 전략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2) 중국적 수용을 위한 ‘고대화’ 전략: 춘추전국 시대의 발명

윌리엄 마틴은 Wheaton의 국제법을 단순한 외래 지식으로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국의 전통 속에서 이미 유사한 규범 체계가 존재했음을 강조함으로써, 번역된 개념에 대한 문화적 거부감을 줄이려 했다. 그는 특히 춘추전국 시대의 제후국 간 외교 관행을 서구 국제법의 원형으로 제시하며, 국제법의 중국적 기원을 구성하려는 ‘고대화 전략’을 취했다. 이러한 전략은 국제법을 ‘본래 중국에도 존재했던 질서’로 재현함으로써, 외래 질서의 정당성을 내재적 전통에서 찾는 역사화 작업이었다.

마틴은 *A Cycle of Cathay*에서 “중국에 국제법을 소개하기 위해 나는 그 기원을 고대 제후국들의 교섭에서 추적하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춘추전국 시대의 사례를 통해 국제법의 ‘rudiments’를 상정했다.⁶⁹⁾ 그는 공자의 『춘추』에 나타난 ‘공법’(春秋公法) 개념을 서구의 자연법(natural law)에 대응시키며, 도덕적 보편성의 동형성을 구성하고자 했다. Zhiguang Yin은 이 과정이 단순한 개념의 병치가 아니라, 자연법과 천리(天理)의 연결을 통해 국제법의 윤리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전략적 의미 전치(substitution of meaning)라고 지적한다.⁷⁰⁾

Maria Adele Carrai 역시 마틴이 이 전략을 통해 국제법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하고자 했다고 분석한다. 그녀에 따르면, “중국 고대에

69) William A. P. Martin, 위의 책, p. 278.

70) Zhiguang Yin, 위의 책, pp. 7-9.

국제법의 뿌리를 두는 방식으로 마틴은 문화적 친연감을 형성하고, 저항을 최소화하려 했다.”⁷¹⁾ 이는 마틴의 번역이 단순한 외교 문서 번역이 아니라, 문화적 수용을 위한 설계 작업이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대화 전략은 표면적으로는 중국 전통에 대한 존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구 질서의 도입을 정당화하는 문명 전략의 일환이었다. 마틴은 ‘중국에도 공법이 있었다’는 프레임을 활용해, 국제법이 외래 질서라는 사실을 흐리며 ‘문화적 자존심’을 자극하지 않도록 번역의 이데올로기를 구성했다. 이는 동시대 청조 관료들에게 국제법을 일종의 ‘자기 질서의 재발견’으로 인식하게 하여, 법질서의 전환에 대한 심리적 저항을 약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춘추 공법’은 실제로는 내치의 도덕적 원리이자 군주 권위의 정당화 장치였으며, 유럽의 주권국 간 평등한 계약 질서로서의 국제법과는 기초 전제에서 상충하는 개념이었다. 이로써 마틴의 고대화 전략은 전통 질서와 외래 질서가 충돌하는 접점을 형성했으며, 이 개념적 충돌은 이후 번역어 선택의 정치성과 연결된다.

2. ‘천하’ 질서vs ‘국제’ 개념의 충돌

(1) 개념의 충돌: 천하 질서와 국제 체계의 구조적 차이

‘국제법’을 번역하고 수용하는 과정은 단순한 언어 전환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질서 상상력의 충돌이었다. 청말 중국이 마주한 국제법은 평등한 주권 국가 간의 계약적 질서를 전제로 한 체계였지만, 당시 중국의 외교 질서는 여전히 ‘천하(天下)’ 중심의 위계적 공간 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이 두 체계는 질서 구성 방식, 법의 정당화 근거,

71) Maria Adele Carrai, 위의 책, p. 11.

문명 인식이라는 핵심 항목에서 본질적으로 충돌하였다.

천하질서는 중국을 문명의 중심으로 설정하고 주변을 야만으로 상정하는 문화적 위계 구조에 기반해 있었다. 『서경』에 나타난 “천하에 왕토 아닌 땅이 없다(普天之下莫非王土)”는 표현은 경계 없는 확장 가능성을 전제로 하며, 이는 명확한 국경과 주권을 전제로 하는 서구의 영토 질서와는 결정적으로 상반되었다. Wang Hui는 ‘천하’가 단순한 정치 질서가 아니라, 경계가 없는 포섭의 우주론(cosmology of inclusion without boundary)이라고 지적하면서, 당시 번역어 ‘만국’이 이러한 확장적 상상력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었음을 설명한다⁷²⁾.

반면, 서구 국제법은 웨스탈리아 체제를 기점으로 법적 평등과 영토 주권, 그리고 계약에 기반한 상호 규범을 중심으로 구축된 체계였다. 이 체계는 문화적 우열보다는 형식적 동등성을 강조하며, 외교와 전쟁, 중립과 간섭 등을 모두 조약이나 국제 규범에 따라 규정한다. 이는 위계와 문화적 우위를 전제로 했던 천하질서와의 절충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정합성이 강한 질서 체계였다.

이러한 체계 간 충돌은 번역의 현장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interference(간섭)’라는 국제법 용어는 Mingqian Li의 분석에 따르면 청대 문헌에서 7가지 다른 표현(간섭, 방해, 삼입, 관여, 침입 등)으로 번역되었으며, 이는 국제법 개념이 기존 질서의 언어 구조와 제대로 맞물리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⁷³⁾ 또한 ‘공법(公法)’이라는 표현도 단지 법적 규범이 아닌 유교적 리(理)와 의(義)를 통해 해석되며, 서구의 법적 정의와 동등하게 이해되지 못했다. 이처럼 번역 과정은 용어를 옮기는 작업이 아니라, 정치철학적 정당성을 재구

72) Wang Hui, *The Rise of Modern Chinese Thought*, p. 245.

73) Mingqian Li, *A Linguistic Approach to Late Qing China's Encounter with International Law*, pp. 5-6.

성하는 ‘개념투쟁’의 장이었다.

1864년의 프로이센-덴마크 선박 사건은 이러한 질서 간 충돌이 실제 외교적 실천에서도 나타난 대표적 사례였다. 이 사건에서 공친 왕은 보하이만이 ‘내양(內洋)’, 즉 중국의 ‘내해(inner ocean)’라고 주장하며 외국 간의 군사적 충돌이 중국의 중립을 침해했다고 항의하였다. 하지만 이 때의 ‘내해’ 개념은 Wheaton의 국제법이 규정한 ‘영해(territorial sea)’와는 그 개념 범주와 법적 근거가 상이했으며, 결국 Wheaton의 논리적 해석을 통해 중국식 ‘내해’ 개념이 보편적 국제법의 틀 안에서 재정의되는 방식으로 수용되었다.⁷⁴⁾ 이는 천하 중심 질서와 국제법 질서가 단순히 병존하지 않고, 특정한 권위 구조 안에서 상호 조정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다.

요컨대, ‘천하’와 ‘international’은 단지 표현 양식의 차이가 아니라, 질서를 정당화하고 세계를 구조화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하나는 문명 중심의 위계적 확장 체계이며, 다른 하나는 주권 평등의 경제적 질서이다. 이 개념 간 충돌은 단순한 용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번역자와 수용자가 어떤 세계를 질서로 상상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international’을 ‘만국’으로 번역한 선택은 언어적 결정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이고 사상사적인 절충의 결과였다.

(2) 충돌의 외교적 현현: 프로이센-덴마크 선박 사건과 용어의 혼란

‘천하’ 질서와 국제법 질서의 충돌은 단지 개념적 사유의 차원에 그치지 않았다. 이러한 추상적 대립은 1864년의 프로이센-덴마크 선박 나포 사건이라는 구체적 외교 분쟁의 형태로 표면화되었다. 이 사

74) Rune Svarverud, 위의 책, pp. 45-46

건은 Wheaton의 국제법이 청조 외교 실무에 최초로 실천적 도구로 사용된 사례이자, 서구 개념어의 수용이 갖는 사유구조적 충돌을 입증하는 결정적 장면이었다.

1864년 봄, 프로이센과 덴마크 간 유럽 전쟁이 한창일 때, 프로이센은 중국 텐진 인근 다구(大沽, Dagū) 항구에서 세 척의 덴마크 선박을 나포하였다. 이에 대해 청조를 대표한 공친왕(恭親王)은 즉각 항의하며, 해당 해역이 중국의 내양(內洋, inner ocean)에 해당하므로 외국의 전시행위가 허용될 수 없는 영해임을 주장하였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분쟁이 아니라, 서구 국제법의 ‘territorial sea’ 개념과 중국식 ‘내해’ 개념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었다.

공친왕은 프로이센 측 장관 레푸스(von Rehfues)에게 보내는 항의 서한에서, 중국 해역은 조약상 명시된 ‘중국해(中國海)’에 해당하며, 이는 ‘외국과의 평화 조약에 의해 관할이 보장된 구역’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는 이 논리를 Wheaton의 국제법 논리, 특히 ‘중립국의 권리’와 ‘해양 관할권’에 관한 조항에 근거하여 구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중립이 침해되었음을 국제법적으로 주장하였다.⁷⁵⁾

하지만 이때의 ‘내해’라는 표현은 국제법상으로는 명확한 정의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territorial sea’와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다. 즉, 중국 측은 Wheaton의 국제법 개념을 자국의 전통 질서 속 개념과 등치시키려는 시도를 했지만, 양자의 개념적 기반은 본질적으로 달랐던 것이다. 이는 용어 선택이 단순한 번역 행위가 아니라, 질서 개념 전체의 전유와 조정이 요구되는 문제였음을 드러낸다.

Mingqian Li는 이러한 개념적 혼란을 ‘interference(간섭)’의 번역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포착한다. 그에 따르면 ‘간섭’은 청대 문헌에서

75) Rune Svarverud, 위의 책, pp. 113-116

7가지 이상으로 번역되었으며(干涉, 侵擾, 窺伺, 插手등), 이는 개념의 비가시성과 문화적 저항을 반영한 결과였다.⁷⁶⁾ ‘territorial sea’와 ‘inner ocean’ 간의 불일치도 마찬가지로, 개념의 불일치가 외교 실천에서 법적 모호성과 충돌을 유발한 사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중국 외교가 Wheaton의 국제법을 실질적으로 활용한 첫 사례로 평가받는다. 사건은 평화적으로 해결되었고, 공친왕은 곧바로 마틴의 번역본을 공식적으로 출판할 것을 상주하였다. 그는 번역서가 자국 외교관들에게 실질적 유용성을 제공했다는 점을 근거로 예산 배정을 요청했고, 이는 『萬國公法』의 본격적인 유통으로 이어졌다.⁷⁷⁾ 이는 번역이 단지 사상의 도입이 아닌, 정치적 실천과 제도화의 출발점이었음을 상징하는 장면이다.

요컨대, 이 사건은 천하질서의 내재 개념인 ‘포섭과 중심성’과, 국제법의 핵심 원리인 ‘경계와 권리의 분리’가 현장에서 충돌한 사건이었다. 동시에 개념의 불일치와 용어의 모호성이 외교적 대응을 제약하거나 오히려 창조적으로 조정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마틴의 번역본은 이 지점에서 단지 서구 법률 지식의 이식이 아니라, 질서 전환의 도구로서 기능하였으며, 이로써 ‘만국공법’은 외교 현장에서 검증된 정치적 실천물로서 위상을 획득하게 된다.

(3) ‘간섭’ 번역의 다의성과 문화적 저항

‘interference’라는 단어는 국제법에서 국가 간 내정 불간섭의 원칙, 혹은 무력 개입의 금지와 같은 중요한 규범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76) Mingqian Li, 위의 책, pp. 5-6.

77) William A.P. Martin, 위의 책, p. 288.

19세기 말 중국어로 이 개념을 번역하는 과정은 단순한 어휘 선택이 아니라, 서구 국제법의 개념 질서와 유교적 정치 문화 간 충돌이 응축된 실천적 장면이었다. 당시 ‘간섭’은 하나의 일관된 번역어로 정착되지 못하고, 무려 일곱 가지 이상의 다양한 표현들—干涉, 插手, 介入, 壓力, 控制, 攪擾, 調停—로 번역되었다.⁷⁸⁾ 이러한 번역의 파편화는 ‘간섭’이라는 개념이 중국 지식인들의 사유 체계 내에서 명확한 대응점을 갖지 못했음을 반영한다.

이처럼 ‘interference’의 번역은 단지 언어적 불안정의 문제가 아니라, 개념적 불투명성과 문화적 거부감의 결과로 이해되어야 한다. 유교적 정치 질서에서 ‘간섭’은 위계적 관계에서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개입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자율성 침해라기보다 교화의 연장선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강했다. 반면, 서구 국제법은 개별 국가의 ‘주권 불가침’을 핵심 원리로 삼았기에, 간섭은 그 자체로 법적 위반이자 위협 행위였다. 이처럼 한 용어에 대응하는 질서의 상상 방식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간섭’은 번역자들에게 정치적, 문화적으로도 낯선 개념이었고, 이는 곧 다의적 번역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용어의 불안정성은 구체적 외교 현장에서의 혼란으로도 이어졌다. 특히 ‘간섭’과 관련된 개념은 외교적 항의, 내정 간섭 금지, 또는 중재 요청 등의 상황에서 정확한 법적 효력을 발휘해야 했지만, 해당 용어들이 일관되지 못한 상태로 번역되자 실무 외교의 신뢰성과 일관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Svarverud는 이러한 용어의 다중성과 불확실성이 중국 측이 국제법 질서에 온전히 편입되는 데 구조적 장애로 작용했음을 지적하며, 번역이 곧 개념 수용의 전선이자, 질서 간 협상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⁷⁹⁾

78) Mingqian Li, 위의 책, pp. 113-117

79) Rune Svarverud, 위의 책, pp. 108-110

결국, ‘간섭’이라는 단어 하나를 두고 나타난 번역의 분열은, 청말 국제법 번역이 단지 외래 개념을 옮기는 언어 행위가 아니라, 서구 질서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개념사적 투쟁의 장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왜 청조가 ‘international’이라는 단어를 대응시키는데 있어, 법적·계약적 상호주의를 전제로 하는 ‘국제(國際)’보다, 보다 포괄적이고 정합성 부담이 적은 ‘만국(萬國)’이라는 용어를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3. 번역자-수용자 간 협상 과정

(1) 협력 구조의 형성: 번역의 제도화와 인력 배치

『萬國公法』의 번역은 단순히 마틴 개인의 작업이 아닌, 청말 국가 기구와 지식인 집단이 공동으로 수행한 협력 번역의 결과물이었다. 마틴이 번역을 처음 제안했을 당시, 그는 “유능한 관리 한 명”의 지원만을 요청했으나, 청조는 이를 ‘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훨씬 더 조직적인 대응을 펼쳤다. 총리아문은 1차적으로 4인의 문사(何師孟, 李達文, 張煒, 曹景榮)를 파견하여 마틴의 초안 작성을 지원하게 했고, 이후 번역의 난해함과 의미 전달의 문제를 인식한 뒤, 6개월에 걸쳐 2차 인력 4인(陳欽, 李常華, 方濬師, 毛鴻圖)을 추가로 파견하여 문체 교정과 개념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체계적 인력 배치는, 번역 작업이 단순한 언어적 수용이 아니라 청조의 외교적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획의 일부였음을 시사한다.⁸⁰⁾

이러한 협력은 표면적으로는 번역 지원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청조 관료와 학자들이 번역의 개념 선택과 문체 구성에 실질적으로 개입

80) Yan, Tsz-ting, 위의 논문, pp. 27-35

한 과정이었다. 예컨대, ‘주권(主權)’과 같은 개념어는 유교 전통에서 유래한 ‘주인(主人)’의 의미망과 결합되어 조정되었으며, ‘공법(公法)’의 경우에도 단일한 국제 규범의 의미로 번역되기보다는, “나라 간 교류를 위해 지켜야 할 공공적 법칙”이라는 다소 유동적인 정의로 정리되었다.⁸¹⁾ 이는 서구 국제법 개념이 단순히 옮겨진 것이 아니라, 번역자들에 의해 재구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협업 구조는 마틴 자신의 회고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는 당시 중국 학자들과 “각 개념어의 의미를 반복적으로 논의하고, 문체를 다듬는 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했다”고 언급하며, 번역이 다층적 협의와 조정의 산물이었음을 강조한다.⁸²⁾ 또한, 마틴이 번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 자체가 공친왕과 문상 등 청 고위 관료의 요청에 기반하고 있으며, 번역을 위한 ‘중국인 보조자 집단’을 청조가 직접 조직하여 제공하였다는 사실은, 이 작업이 청말 국가 권력의 기획 아래 수행된 체계적 작업이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⁸³⁾

결국, 『萬國公法』 번역은 단일한 지식인의 결과물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와 사상적 충돌이 교차된 협상 공간에서 조율된 결과였다. 이는 단지 공동의 노동이라는 의미를 넘어, 번역자와 수용자가 함께 새로운 질서를 협상하고 조정해낸 구조를 보여준다. 이러한 협력 구조를 전제로 할 때, ‘왜 하필 만국인가’라는 질문은 단지 언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복수의 주체가 상이한 질서 감각을 조정한 결과였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81) C. L. Tsinghua China Law Review, p. 10

82) William A.P. Martin, 위의 책, p. 280

83) William A.P. Martin, .p.287

(2) 사유의 충돌: 언어·문화적 협상의 구체적 사례

마틴의 『萬國公法』 번역은 단순한 언어적 전달이 아닌, 외교적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프랑스 외교관 클레츠코프스키(Kleczkowski)는 이를 두고 “그를 죽여야 한다(choke him off)”고 격분했으며, “중국이 이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끝없는 문제(endless trouble)에 시달릴 것”이라 주장했다(Carrai, 2020: 12).

이는 번역 자체가 식민적 불균형 질서에 균열을 줄 수 있는 정치적 사건으로 여겨졌음을 보여준다. 미국 선교사 S. W. Williams 역시 Wheaton의 국제법 번역이 조약체제 전반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으며, 이는 번역의 파급력이 ‘통역된 지식’을 넘어 ‘전략적 재무장’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 내부에서도 마틴은 ‘트로이의 선물’처럼 의심받았고, 황실 인준이 지연되던 중 1864년 프로이센-덴마크 사건을 계기로 『萬國公法』의 실용성이 증명되면서 비로소 공식 출간이 허락되었다. 이 과정은 곧, 번역이라는 행위가 정치적 긴장의 협상장이자, 제국적 지식을 둘러싼 재맥락화의 장이었음을 보여준다.

『萬國公法』의 번역 현장은 단순한 어휘 대체나 문장 전환의 작업이 아니라, 서구적 질서 체계와 중국 전통 사유 체계가 충돌하며 의미의 경계를 새롭게 재편하는 사상적 교섭의 장이었다. 마틴과 청조 관료, 그리고 번역자 집단은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과 정치적 입장을 바탕으로 ‘공법’, ‘주권’, ‘간섭’, ‘비준’ 등의 핵심 개념을 번역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긴장과 갈등을 경험하였다.

이와 같은 충돌은 구체적 사례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대표적인 일화로, 마틴이 전신기의 원리를 시연하며 서구 문명의 과학적 우월성을 강조하자, 한 한림학사는 “중국은 사천년간 전신 없이도

대제국이었다”는 말로 응수하였다.⁸⁴⁾ 이 발언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기술문명의 진보가 곧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중국식 세계관의 자존적 발현이었다. 서구의 문명론적 서사에 대한 이와 같은 반발은 이후 번역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출현하였다.

예컨대, ‘ratification’이라는 개념의 번역을 둘러싼 충돌은 그러한 긴장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천진조약 체결 당시에는 이 개념이 ‘批准’으로 번역되었지만, 『萬國公法』 번역에서는 동일한 개념이 다른 표현으로 옮겨졌다.⁸⁵⁾ 이는 단순한 번역상의 일관성 부족이 아니라, 외교적 승인 행위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서구 국제법에서 ‘비준’은 국가 간 법적 의무 확정 행위로 작동하는 반면, 청조의 세계관에서는 군주권의 발현과 권위에 대한 직접적 연결 고리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또한 ‘공법(公法)’ 개념을 둘러싼 해석 역시 격렬한 사상적 교섭의 장이 되었다. 마틴은 공법을 기독교적 자연법 혹은 ‘보편선’의 개념과 연결 지으려는 의도를 내비쳤지만, 청조 협력자들은 “公者, 非一國所得私也”라는 해석을 제시하며, ‘공법’은 특정 국가가 독점할 수 없는 공공적 원칙이라는 유교적 관념에 근거한 것임을 강조하였다.⁸⁶⁾ 이 과정에서 Woolsey 번역본은 마틴이 ‘공법’의 정의를 유교적 정당성의 문법으로 포장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주며, 단어 하나를 둘러싼 사상적 포섭과 조율의 긴장을 증언하는 사료로 작용한다.⁸⁷⁾

이러한 사례들은 번역이 자동적이거나 중립적인 과정이 아니라, 정치적 질서를 둘러싼 해석투쟁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각각의 용어는

84) Yan, Tsz-ting, 위의 논문, pp. 35-37

85) Yan, Tsz-ting, 위의 논문, pp. 38-39

86) Yan, Tsz-ting, 위의 논문, pp. 40

87) Rune Svarverud, 위의 책, pp. 122-125

단순히 언어적 등가물을 찾는 문제를 넘어, 질서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상상할 것인가라는 보다 본질적인 정치적 질문과 직결되었다. 따라서 『萬國公法』의 번역은 ‘무엇을 어떻게 번역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충돌하고 조정되었는가’를 통해 그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

(3) 개념어 선택의 협상: 의미는 어떻게 조정되었는가?

『萬國公法』 번역 과정은 단지 외래 개념을 중국어로 치환하는 작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존 사유 체계와 상충하는 서구 개념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둘러싼 의미의 협상 과정, 다시 말해 정치적 번역 행위의 현장이었다. 청말 번역자들은 단어를 옮긴 것이 아니라, 질서를 조정하였다. 이 조정의 과정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주권(主權)’, ‘공법(公法)’, ‘ratification’과 같은 개념어들을 둘러싼 의미의 창출과 절충이었다.

우선 ‘주권(主權)’ 개념은 유교적 정치 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개념이었다. 유교적 맥락에서 군주의 권위는 하늘(天)로부터 위임된 덕치(德治)의 산물로서, 군민 간 계약에 기반한 서구적 주권 개념과는 상이한 기반 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번역자들은 이 개념을 단순히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기존 ‘성군(聖君)’ 개념의 언어자산을 확장하여 ‘主權’이라는 용어를 구성하였다.⁸⁸⁾ 이는 새로운 개념을 번역이라는 외피 안에서 내부적으로 창출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공법(公法)’ 개념 또한 유사한 절충의 산물이었다. 마틴은 이를 서구 자연법 전통에 따라 ‘보편적 공공선’의 법으로 이해했지만, 청조 협력자들은 유교의 ‘의(義)’·‘리(理)’ 개념에 기반하여 그 의미를 조정

88) Yan, Tsz-ting, 위의 논문, pp. 45-46

하였다. 이 과정은 Woolsey 번역본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었는데, 이 번역은 공법을 “邦國所持以交際者，謂之法... 公者，非一國所得私也”라고 정의하였다.⁸⁹⁾ ‘공’이라는 개념이 특정 국가의 이익이 아닌 다자 간 질서를 전제로 한다는 유교적 보편주의로 포섭되며, 서구 국제법의 이념과 일종의 접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조정은 ‘ratification’의 번역에서도 드러난다. 이 개념은 천진조약에서는 ‘批准’으로 번역되었으나, 『萬國公法』 번역에서는 다른 표현이 채택되었다. 이는 청조 관료들이 조약의 비준이라는 행위를 단순한 승인 절차로 이해하기보다, 황제의 절대적 권위와 직접 충돌하는 정치 행위로 간주했기 때문이다.⁹⁰⁾ 결과적으로 번역자들은 이러한 긴장을 우회하기 위해 보다 중립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을 택함으로써 개념어를 둘러싼 문화적 긴장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번역이 단지 언어의 문제를 넘어서, 세계관의 조율이라는 정치적·문화적 작업이었음을 입증한다. 번역자는 단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상 간 충돌의 결과로서 의미를 조율한 행위자였다. 이는 번역이 곧 개념 충돌의 협상장이었다는 명제를 다시금 확인시켜 준다.

4. ‘국제’ 대신 ‘만국’ 선택의 사유구

(1) 공간적 상상력의 흔적: ‘만국’과 천하적 질서의 연속성

청말 중국에서 ‘international’이라는 개념을 번역함에 있어 ‘국제(國際)’가 아닌 ‘만국(萬國)’이라는 표현이 채택된 것은 단순한 어휘상의 대체가 아니었다. 이 용어 선택은 청조 지식인들이 당면한 근대 국제질서와 전통 ‘천하’ 질서 사이의 긴장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89) Woolsey edition, 위의 논문, pp. 12-13.

90) Rune Svarverud, 위의 책, pp. 128-129

공간적·정치적 절충이었다. 곧, 이는 질서 간 충돌의 결과이자, 세계 인식의 조율 장면이었다.

무엇보다 ‘만국’이라는 표현은 전통적 유교 세계관의 공간 질서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만국’은 천하(天下)의 중심에 위치한 중국이 주변을 점차 포섭해 가는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계층적 세계관의 확장선상에 있으며, 이는 ‘보편 문명’의 세계를 지향하는 무경계적 공간 상상력에 기반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만국’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자 기준으로서 역할한다는 인식을 유지한 채,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인정하는 표현이었다.⁹¹⁾ 반면, ‘국제’는 각 국이 경계(boundaries)를 지닌 동등한 주권체로 구성된 세계라는 근대 서구의 정치 질서를 전제한다. 이 차이는 단어의 선택을 넘어, 세계의 구조를 어떻게 상상하는가에 관한 사유 방식의 차이를 드러낸다.⁹²⁾

‘만국’ 선택은 단지 공간적 전통의 반영일 뿐 아니라, 정치적 타협의 결과이기도 하다. 청조 관료들과 번역자들은 서구 국제법을 완전히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을 자국 질서의 언어로 변형하여 수용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마틴은 『萬國公法』을 단순한 번역물이 아닌, 고대 중국에도 유사한 법 전통이 있었다는 “중국 고대 국제법” 발명담론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는 청조 지식인들의 문화적 자존감과 정치적 위신을 보존하려는 시도와 절묘하게 결합하였다.⁹³⁾ 결국 ‘만국’은 서구 체제를 수용하면서도 기존 수사 전통을 해체하지 않으려는 타협의 언어적 형식이 된 것이다.

또한 이 용어 선택은 당대 언어 구조의 제약과 창의성의 산물이었다. 19세기 중엽 중국어에는 오늘날 ‘international’을 정확히 지칭할 수 있

91) Wang Hui, 위의 책, pp. 78-82.

92) Rune Svarverud, 위의 책, pp. 145-147

93) Rune Svarverud, 위의 책, pp. 147

는 ‘국가 간’ 개념어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번역자들은 ‘국제’라는 조어보다는, 보다 포괄적이고 유연한 개념어인 ‘만국’을 통해 그 의미를 포섭하려 했다. 이 같은 전략은 유교적 언어 체계의 자원을 재배치하여 새로운 개념을 번역하는 창조적 실천으로 해석될 수 있다.⁹⁴⁾

이러한 선택은 일본의 사례와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일본은 1873년 미쓰쿠리 린쇼(箕作麟祥)에 의해 ‘국제법(國際法)’이라는 신조어를 창조하였고, 이는 근대적 국가 체계를 전제로 한 국제질서를 명시적으로 수용한 결과였다. 반면 중국은 ‘만국’이라는 표현을 통해 외래 개념을 내면화하면서도 전통 질서를 해체하지 않는 방식의 수용 전략을 택하였다.⁹⁵⁾

요컨대 ‘만국’이라는 용어의 선택은 단지 번역상의 편의가 아니라, 사유 구조, 정치적 타협, 언어적 한계의 교차점에서 이루어진 절충적 산물이었다. 이 용어는 천하질서의 공간적 유산을 보존하면서도, 외부의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는 문화적 수용의 전략어로 기능하였다. 이는 번역이 단순한 개념 대응이 아닌, 세계 질서를 구성하는 사상사적 행위였음을 시사한다.

(2) 타협의 언어: 마틴과 청조 관료의 수사적 협상

‘international’이라는 개념이 ‘만국’으로 번역된 과정은 단순한 어휘 선택이 아니라, 문명 담론과 질서 인식이 충돌하고 조정된 수사적 협상의 장이었다. 청조는 서구의 제도와 이론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으나, 동시에 자국의 전통 질서를 직접적으로 해체하지 않으려는 수사적

94) Yan, Tsz-ting, 위의 논문, pp. 48-50

95) Han Sang-hee, 위의 논문, pp. 200–204.

보존 전략을 취했다. 반면, 마틴은 기독교적 자연법의 보편성을 중국에 소개하려는 문명화 사명을 갖고 있었으나, 그것이 청조 관료들의 수용 범주 안에서 수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문화적 포장이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마틴은 『萬國公法』의 핵심 개념들을 단순히 서구 법적 언어로 전달하기보다는, 그것을 중국 고유의 사유 전통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번역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공법(公法)’의 개념 정립이다. 마틴은 ‘public law’를 ‘공법’으로 옮긴 뒤, 이를 단지 법적 규칙이 아닌 도덕 질서와 공공성을 담은 개념으로 해석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공법은 국가들이 교류할 때 따르는 법이며, ‘공’이란 어느 한 나라가 독점할 수 없는 것이라 하였다”.⁹⁶⁾ 이는 유교 전통에서 ‘공(公)’이 지닌 도덕적, 비독점적 성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서구 국제법 개념을 자국 질서의 언어로 해석하려는 전략이었다.

마틴 자신도 『A Cycle of Cathay』에서, 자신이 용어를 중국 관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음을 인정한다.⁹⁷⁾ 그는 “‘public law’를 나는 ‘공법’이라 번역했으며, 이를 중국 전통 개념에 부합하도록 설명하였다”고 회고하였다. 이는 그가 단순한 언어 전달자가 아니라, 문화적 의미를 협상하는 실천적 번역자였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그는 춘추전국시대에 이미 중국에는 유사한 국제 질서가 존재했다는 ‘중국 고대 국제법’ 발명 담론을 통해, 청조 엘리트의 문화적 자존감에 호소하려 했다.⁹⁸⁾

한편, 청조 관료들 역시 이 번역 작업에 수동적으로 임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틴의 문명주의적 서술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과 충돌하는 지점에서 수사적 조정을 요구하였으며, 일부 협력자는 번역 과정에서 용어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전통 어휘로 변형하는 방식으로

96) Woolsey edition, 위의 논문, pp. 12-14.

97) William A. P. Martin, A Cycle of Cathay, p. 283.

98) Maria Adele Carrai, 위의 책, pp. 217-222.

저항과 절충을 병행하였다.⁹⁹⁾ 이들은 마틴이 제안한 기독교적 자연법의 세계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그것을 ‘공(公)’이나 ‘의(義)’와 같은 유교 어휘를 통해 재해석하고, 번역 언어 안에서 새로운 의미 체계를 구성하려 하였다.¹⁰⁰⁾

이와 같은 조율의 결과로 선택된 번역어가 바로 ‘만국’이었다. ‘만국’은 마틴이 지향한 보편 문명 담론과, 청조 관료들이 수호하려 했던 전통 질서가 상호 양보를 통해 구축한 상징적 언어 공간이었다. 이는 ‘만국’이 단지 ‘international’의 공간적 대응어로 쓰인 것이 아니라, 문명론과 정치현실이 타협한 수사적 결정체임을 보여준다.

(3) 창조적 번역과 질서 상상력

‘만국’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어휘 차용이 아니었다. 그것은 당대 중국어의 어휘적 공백 속에서 사유 체계를 새롭게 조직하고자 했던 창조적 번역의 산물이었다. 19세기 중엽, 중국어에는 ‘international’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포괄할 수 있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다. ‘國際’라는 용어는 아직 발명되지 않았으며, 이후 1873년에야 일본의 미츠쿠리 린쇼(箕作麟祥)가 『國際法』이라는 번역어를 창안하면서 처음 등장하게 된다.¹⁰¹⁾ 반면 중국의 번역자들은 기존 어휘 자원 내에서 사상의 틈을 메우기 위한 창조적 전략을 선택하였다.

‘萬國’은 본래 존재하던 표현이었으나, 『萬國公法』의 번역 과정에서는 이 전통 어휘가 새로운 맥락 속에서 재의미화되었다. 번역자들은 ‘만국’을 단순한 수사적 장치가 아니라, 서구적 개념을 수용 가능한 형

99) Yan, Tsz-ting, 위의 논문, pp. 37-39

100) Rune Svarverud, 위의 책, pp. 145-150

101) Han Sang-hee, 위의 논문, pp. 202-203.

태로 재배치한 결과물로 구성하였다. 이는“단어를 고른 것”이 아니라, 의미를 담기 위해 단어를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었다. 이러한 작업은 Svarverud가 지적하듯, 기존 어휘 안에 새로운 개념을 담는 ‘semantic innovation’의 시도였으며¹⁰²⁾, 그 과정에서 ‘주권(主權)’, ‘공법(公法)’, ‘간섭(干涉)’과 같은 신조어들 또한 동시에 탄생하였다.¹⁰³⁾

이러한 창조적 번역은 단순한 언어의 기교를 넘어선, 질서에 대한 상상력의 산물이었다. 번역자들은 유교적 어휘(‘義’, ‘理’, ‘公’ 등)를 재맥락화함으로써, 기존의 천하적 공간성과 서구적 국가 체계를 병치하려는 시도를 감행하였다. ‘만국’은 곧 무경계의 도덕적 세계(天下)와 다수 국가의 법적 질서(international system)를 동시에 표현하는 하이브리드적 개념이었다. Zhiguang Yin이 말하듯, 이러한 번역은 단순한 대응(transposition)이 아니라, 정치적·철학적 투쟁이 벌어지는 개념 공간에서의 협상 결과였다.¹⁰⁴⁾

요컨대 ‘국제’라는 표현이 부재한 상황에서, 번역자들은 ‘만국’이라는 표현을 통해 서구 국제 질서를 천하 질서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창조적 번역을 시도했다. 이는 단어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적 질서를 구성하기 위한 수사적 상상력의 결과였으며, 당시 번역자들이 단순한 중계자가 아니라 개념 생산의 주체였음을 시사한다.

V. 결론

본 논문은 『萬國公法』에서 ‘international’이 ‘국제’가 아닌 ‘만국’으로 번역된 이유를 단순한 어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 인식의

102) Rune Svarverud, 위의 책, pp. 153-157

103) Yan, Tsz-ting, 위의 논문, pp. 45-48

104) Zhiguang Yin, 위의 책, pp. 11-13.

충돌과 협상, 그리고 번역자들의 사상적 조정이라는 구조 속에서 조망하였다. 이 과정은 ‘천하’라는 유교적 보편 질서와 서구 국제법의 평등 국가 체계 간의 충돌, 마틴과 청조 관료 사이의 협상, 언어적 대안의 조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국’이라는 용어의 선택으로 이어진 사상사적·정치사적 긴장의 연속선상이었다.

첫째, ‘국제’라는 표현이 아닌 ‘만국’이 채택된 것은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닌, 세계 질서에 대한 서로 다른 상상력 간의 충돌에 기인하였다. 청말 중국은 서구의 국가 체계가 전제하는 경계 중심의 세계관에 대해, 경계가 없는 천하적 공간성으로 응답하였다. 이 점에서, ‘만국’은 천하 질서의 확장적 연속선 위에 놓인 표현이자, 새로운 국제적 맥락 속에서 의미를 재편성한 결과였다.

둘째, 번역의 현장은 단순한 의미의 전달이 아니라, 문화적·정치적 협상장이었다. 마틴은 기독교 자연법을 보편 질서로 삼고 이를 중국에 이식하려 했으나, 청조 관료들은 전통적 어휘와 사유 구조를 통해 이를 재조정하였다. Maria Adele Carrai가 지적하듯, 마틴의 번역은 “중국 전통과 서구 국제법의 접합을 시도한 정치적 행위”였으며, 그 결과는 충돌이 아닌 타협이었다.¹⁰⁵⁾

셋째, ‘만국’이라는 번역어의 채택은 기존 질서의 포기라기보다, 유교적 언어를 보존하며 새로운 질서를 수용하려는 절충적 시도였다. 공법(公法)을 ‘모든 나라가 따르는 비독점적 법’으로 설명하거나, ‘주권’을 군주 권위가 아닌 공동 질서로 재맥락화한 사례들은, 번역이 단순한 등가 대응이 아니라 개념 창조의 장이었음을 보여준다. Zhiguang Yin의 표현대로, 번역은 “보편성의 구성”이며, 중국 질서와 서구 질서가 협상한 공간이었다.¹⁰⁶⁾

105) Maria Adele Carrai, 위의 책, p. 219.

106) Zhiguang Yin, 위의 책, pp. 11–13.

결론적으로, ‘만국’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언어적 편의가 아니라, 동아시아 사유의 전환점에서 등장한 질서적 상상력의 산물이다. 이 용어는 ‘국제’라는 단어가 갖는 근대국가 중심주의와는 다른 방식으로, 중국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질서를 수용할 수 있는 정치적 언어로서 기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법’의 수용이라는 외형적 제도사에서 벗어나, 번역을 통한 질서 구성의 내면을 복원하는 시도로서, 중국 근대성과 동아시아 개념사의 탐구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본 연구는 『萬國公法』 번역에서 ‘international’이라는 개념이 ‘만국’으로 옮겨진 사건을 단순한 언어 선택이 아니라, 사상사적 전환의 결정적 장면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근대 국제질서의 수용이라는 외형적 제도사의 틀을 넘어서, 중국 지식인들이 기존의 천하 질서를 어떻게 재구성하며 새로운 개념 질서를 사유했는가를 복원하는 시도였다.

‘만국’이라는 표현은 근대 국가 간 질서를 지시하는 ‘국제(國際)’와는 다른 공간적 상상력에서 기원한 것이다. 그것은 무경계적 보편성을 전제하는 천하관의 확장된 표현이며, 청조가 서구의 평등주의 국제 질서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자국의 위계적 문명론적 질서를 수사적으로 보존하고자 했던 전략적 언어 선택이었다. Wang Hui가 지적하듯, ‘만국’은 ‘천하-만방-만국’으로 이어지는 연속적 공간 질서 속에서 동아시아적 보편주의의 언어로 기능하였다(Wang, 2023, p. 81).

또한, 번역된 국제법 개념들은 단순히 대응어를 찾는 기술적 과정이 아니라, 개념의 재맥락화를 통한 정치적·도덕적 질서의 재구성 과정이었다. 예컨대 ‘공법(公法)’은 “公者, 非一國所得私也”라는 표현을 통해, 기독교 자연법적 보편성이 아닌 유교적 공공성과 도덕 질서의 언어로 변안되었다. 이는 ‘공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중국 전통의 공(公)-의(義)-리(理)의 문맥 안에서 유의미하게 새로 조직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번역 행위는 결과적으로 중국적 언어와 개념의 틀 속에서 서구 국제법 체계를 소화하고 저항하며 동시에 변형하는 복합적 사상 운동이었다. Mingqian Li는 이를 두고 “번역은 서구 법 질서를 중국적 사유 구조 안에서 수용·조정·재구성하려는 시도”였다고 분석하며, 그것이 단순한 ‘언어 이전’을 넘어서는 의미 생산의 장이었음을 강조한다(Li, 2023, pp. 115 – 117).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청말 번역 현장이 단순한 도입이 아닌 동아시아적 질서의 재조직이 벌어진 정치적 공간이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는 오늘날 중국이 국제법을 수용하고 재해석하는 방식에도 역사적 연속선을 제공하며, “인류 운명공동체”와 같은 현대 담론의 문화적 기원을 설명하는 데에도 이론적 단서를 제공한다. 번역은 과거에도, 지금도 질서 구성의 장치이자 정체성 구성의 실천이다.

〈참고문헌〉

- Banno, Masataka. 1964. "China and the West, 1858–1861: The Origins of the Tsungli Yame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ao, Deborah. 2007. "Translating law." Vol.33. Multilingual Matters.
- Carrai, M.A. 2020. "The Politics of History in the Late Qing Era: Will I am AP Martin and a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for China." *Journal of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Revued'histoire du droit international*, 22(2-3),269–305.
- d'Aspremont, Jean. 2021, "Aftermeaning: The 엘리자베스 경기 틀어준 사람들 앞에서 보려고** of forms in international law." Edward Elgar Publishing.
- De la Rasilla, Ignacio, and Congyan Cai, eds. 2024. "The Cambridge Handbook of China and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ng Siyu & John K. Fairbank, 1954. *Research Guide for China's Response to the West.* Harvard University Press.
- Han Sang-hee. 2010. "The Circulation of International Legal Terms in East Asia."
- Li, Ming qian. 2021. "A Linguistic Approach to Late Qing China's Encounter with International Law." *Crossroads: Studies on the History of Exchange Relations in the East Asian World*21:35–58.
- Liu, Lydia H. 2022. "Translingual Practice: Literature, National

- Culture, and Translated Modernity—안녕.”1900–1937.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Martin, William A.P. 1898. “A Cycle of Catha Happy, or China, South and North, with Personal Reminiscences.”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 Martin, William A.P. 1908. “The Awakening of China.”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2,4:633–670.
- Svarverud, Rune. 2007. “International Law as World Order in Late Imperial China: Translation, Reception and Discourse, 1847–1911.” Leiden: Brill.
- UPDATE, C.L. “Tsinghua China Law Review.”
- Wang, H. 2023. “The rise of modern Chinese thought.” Harvard University Press.
- Yan, T.T. 2011. “A study of late Qing labor active translation.” HKU Theses Online (HKUTO).
- Yin, Zhiguang. 2016. “Heavenly Principles? The Translation of International Law in 19th-Century China and the Constitution of Universality.” Working Paper, University of Exeter.

청과 조선의 대일외교 인식: 이홍장과 이유원의 서신을 중심으로

원명원

조도영

사랑방 24기

I. 서론

1860년 아편전쟁의 패배는 중국의 전통적 천하질서에 변화를 가져왔다. 새롭게 등장한 서구의 해양세력들은 북경에 공사관 설치를 요구하였으며, 더 나아가 청이 근대적 조약체제로 들어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당시의 실권자인 공친왕은 근대적 외교를 전담하는 기관인 총리아문을 설치하지만 기존의 전통적 원리에 따라 교섭을 담당하던 예부, 이번원이 존재하던 상태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총리아문은 각 부처와 권한 문제를 두고 논쟁을 겪기도 하였고, 이러한 문제는 더 나아가 조공관계를 통해 유지되던 조청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주지하다시피 전통적인 국제관계는 ‘외교’가 아닌 ‘사대교린’이었으며 ‘인신무외교(人臣無外交)’라는 원칙이 지대한 영향을 발휘했다. 그러나 예부만을 통한 전통적인 교류관계로는 격변하는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기 어려웠으며, 조약체계를 관리하는 총리아문까지 등장하

자 따라 인신무외교 원칙을 느슨하게 적용함으로써 실무적 해결책을 강구하는 사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일례로 북경에 파견되었던 정사 류후조(柳厚祚)는 예부상서 만청려(萬靑藜)의 처소를 방문하여 프랑스의 군사적 움직임과 관련된 내용을 조선 조정에게 전달하는 편지(短札)를 받아오기도 하였다.¹⁰⁷⁾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진행된 조선의 이유원과 청의 이홍장이 교환한 서신은 개항기의 과도기적 성격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둘의 서신 교환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다. 서신 교환을 연미론의 체결과정의 시작점으로 평가한 송병기의 논문을 시작으로 서신의 왕복 날짜를 실증적으로 밝혀내는 권혁수의 연구¹⁰⁸⁾를 포함하여, 최근에는 이홍장과 이유원의 서신을 매개한 유지개와 이유원의 시문 교류로 확장된 연구¹⁰⁹⁾도 진행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연구성과를 고려함과 동시에, 이홍장과 이유원이 모두 전통적인 유학자이면서 개항과 근대라는 세계적 변화에 대응책을 마련한 실권자이기도 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둘의 서신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 원인을 동아시아 질서변화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각자의 서신이 담고 있는 국가의 외교적 사건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개항기의 정치외교적 사건이 어떻게 과도기적 질서 속에서 표현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107) 손성욱. 2018, "'外交'의 균열과 모색: 1860~70년대 淸·朝관계." 역사학보, 240, 537쪽.

108) 권혁수. (2003). 한중관계의 근대적 전환과정에서 나타난 비밀 외교채널 -이홍장과 이유원의 왕복서신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37, 215-239.

109) 리보,노요한. (2018). [번역] 조선 문인 李裕元과 游智開의 시문 교류. 동아한학연구, 13, 151-173.

Ⅱ. 서신교환의 정치적 맥락

직예총독이 된 이홍장은 일본의 확장욕을 주된 위협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는 이홍장만의 판단이 아닌 당시 대외관계를 주도하고 있던 총리아문의 주된 의견이었다.

“만일 영국과 프랑스 등이 조선에 출병한다면 그 목적은 크리스티교 포교와 통상에 불과하다. 이들 국가는 서로를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을 점령하여 토지를 빼앗을 리는 없다. 그러나 일본은 견제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토지를 탐낼 수도 있다. 만일 조선이 일본에게 점령된다면 일본은 중국과 인접하게 되어 커다란 걱정거리가 될 것이다. 일본에게 있어서 포교와 통상은 안중에도 없다.”¹¹⁰⁾

그리하여 청은 1873년 ‘청일수호조규’의 제1조를 통하여 양국은 서로의 ‘소속방토(所屬邦土)’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조약을 삽입하였다. 청은 노골적으로 조선이나 여타의 조공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청의 입장에서는 엄연한 천조의 일원인 변속이 소속방토라는 단어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이에 근거하여 조공국, 특히 직예 지역과 가까이 있는 조선을 보호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여겼다.¹¹¹⁾ 그러나 청의 낙관적인 기대와는 달리 일본은 1874년 중국의 외변 중 하나인

110) 同治六年二月十五日, 總理衙門의附片,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1972, 『清季中日韓關係史料』第2卷, 54쪽, 재인용: 오카모토 다카시, 홍미화. (2011). 일본의 류큐 병합과 동아시아 질서의 전환. 동북아역사논총, 32, 69쪽.

111) 김재선. 2012. 이홍장(李鴻章)의 대외정책(對外政策) 연구(研究). 동국사학, 53, 447쪽.

대만으로 출병하였다. 1871년 11월 경에 류큐의 표류민이 타이완에 포착된 후 원주민에게 살해당하였다는 것이 출병의 근거였다. 일본은 1872년 류큐 국왕을 류큐번왕으로 임명하는 등, 류큐를 오키나와로 전환하는 폐번치현의 과정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고 류큐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1874년에 출병을 감행한 것이다.

청에게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당시 청은 북쪽에서는 러시아, 운남 지역에서는 영국, 안남에서는 프랑스 등 육지 변경을 통한 여러 국가들의 압박과 마주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이 대만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청의 지위를 종주국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은 이홍장에게 더욱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이홍장은 이 시기까지 국가 간의 교제란 천자로부터 조공국에 이르기까지 각각 그 이름에 맞는 의무와 규범을 실천함으로써 성립된다고 보았다.¹¹²⁾ 그러나 일본은 일본이 류큐의 종주국으로서 류큐인이 대만에 표류되어 살해당한 것에 관하여 군사력을 실현한 반면, 청은 대만인 중 ‘생변’은 청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다는 핑계로 책임을 피했기에 종주국이 아니라는 것을 공인했다고 주장하며 대만 출병을 정당화했다¹¹³⁾

당초 청일수호조규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비롯되는 안보 위협을 억제하고 그 시간을 이용하여 서양세력을 견제하는 변경외교에 집중하려고 했던 청의 계획은 틀어졌다. 오히려 전력적 요충지인 북경과 동북지방에 접한 조선으로 일본이 침략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더해졌다. 이에 청은 북양해군을 양성함으로써 해양방어 정책을 개진하면서도, 조선의 외교적 움직임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프랑스의 해군 제독 지켈은(Giquel)은 대만 출병 후에도 나가사키에 5천 명의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며 일본의 조

112) 김재선, 2012, 440쪽.

113) 오카모토, 홍미화, 2011, 79쪽.

선 침략 가능성을 타진하기에까지 이른다.

총리아문은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1874년 6월 예부를 통해 조선에게 자문을 직접 보내기도 하였다.¹¹⁴⁾ 이홍장은 안보위기가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로 전례를 따라 예부를 통하여 조선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정보 전달의 신속성이나 전달하는 내용의 민감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조선과 교류할 소통망을 찾게 된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당시 영의정이었던 이유원은 청이 보내온 자문에 대하여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총리아문(總理衙門)에서 우리나라에 알리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저 그 일만 말하는 것으로 그쳐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통상(通商) 등의 얘기를 하여 마치 공갈을 치고 유혹하듯이 한단 말입니까?”¹¹⁵⁾

이렇듯 이유원은 흥선대원군과 정치적으로 대립하며 고종의 친정을 돕고 있었지만, 그가 개화나 통상에 적극적인 인물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이유원은 전통적인 위정척사파의 주장을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이홍장과의 서신교환에서도 보인다. 따라서 청이 암시한 통상 제안에는 거부감을 들어내면서도 이홍장과의 비밀연결선을 만듦으로써 한 이유원의 정치적인 동기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이유원은 일본의 대만 출병이 발생한 지 1년 후인 1875년에 북경에 주청사로 등장한다. 당시 조선은 고종이 최익현의 상소를 계기로 흥선대원군을 실각시킨 후 친정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

114) 정선모. 2012. 李裕元の 乙亥燕行과 江華島條約. 동방한문학, 52, 5쪽.

115) 『조선왕조실록』 고종 11년 6월 25일.

다. 고종은 대원군 시기의 업적을 부정하는 방식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세워나가기 시작했다. 외교적 측면에서는 대원군 시기 대일업무를 담당한 훈도 안동준(安東駿)을 공묵 유용협의로 심문하고, 경상도 관찰사 김세호(金世鎬), 전 동래부사 정현덕(鄭顯德)에게 유배형을 내린 것이 대표적이다.¹¹⁶⁾ 이러한 조치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이 외교문서에 ‘황(皇)’자를 사용하고 이를 ‘귀국(貴國)’이라는 단어보다 한 칸 높여서 적은 일로 인하여 조선과 일본의 외교가 단절되었던 ‘서계 문제’를 타개하기 위함이었다. 동시에 민비는 당시 후궁으로부터 먼저 태어난 완화궁이 대원군의 총애를 받는 상황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실각 후에도 대원군 세력이 언제 반격을 해올지 모르는 만큼, 민비에게는 자신의 아들을 세자에 빨리 책봉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러던 와중 총리아문이 서양세력에 관한 정보를 담당하고 또 이를 조선에 자문을 보내어 알려주는 상황에 이르자, 조선 조정으로서의 외국과의 교섭에 대처하기 위하여 총리아문과의 연결망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1876년 진하사 정사인 남정순(南廷順)과 1878년 동지사 정사인 이용숙(李容肅)을 통해 총리아문의 실력자가 이홍장이라는 사실 또한 조선 조정에 보고 되었다.¹¹⁷⁾ 그렇기에 고종은 이전부터 잦은 사직서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당상관이자 측근으로 두려고 했던 이 유원을 세자 책봉 주청사라는 명목으로 청에 파견한다.

즉, 예부와 총리아문으로 분리된 외교 채널 속에서 기존의 인신무 외교 원칙이 서서히 와해되며 실질적인 사무를 위한 인신 간의 접촉이 늘어난 환경을 바탕으로 청은 안보의 관점 속에서, 조선은 내외부의 정치적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네트워크’를 추

116) 김종학, 2021, 『흥선대원군 평전』, 서울: 선인, 150쪽.

117) 권혁수, 2003, 225쪽.

구할 동기가 있었다. 그리고 이유원이 사행길 길목에 있는 영평부(永平府)의 지부(知府) 유지개(游智開)를 통해 이홍장에게 서신을 보냄으로써 이홍장과 이유원은 서신 교환을 시작한다. 또한 둘의 정치적 위상을 고려해 볼 때, 서신의 내용은 당대 정부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자들이 각 국가의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홍장은 서신의 내용을 총리아문에 보고하거나 총리아문으로부터 지시를 받기도 하였고, 김윤식 또한 이유원이 받은 서신은 고종과 공유되었다고 증언하였다.¹¹⁸⁾ 그러한 의미에서 서신 교환이 아닌 서신 외 교라고 호칭할 수 있는 맥락이 구성된다.

Ⅲ. 서신의 내용과 함의

1. 대일정책으로서의 서신 교환과 강화도 조약

이유원의 첫 편지는 1876년 1월 9일 유지개에게 전달되었고 첫 편지인 만큼 이홍장의 건강을 염려하고 공덕을 기리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르침을 내려주신다면 더한 영광이 없겠다”¹¹⁹⁾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가르침이 필요한 상황이 무엇인지는 표현되지 않는다. 첫 번째 편지인 만큼 실무적인 이야기보다는 서신 교환의 성사여부에 방점을 두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홍장은 유지개로부터 편지를 받은 바로 다음날에 답신을 보낸다. 그는 서신 속에서 조선을 “중화의 방패”¹²⁰⁾로 표현하는데 이는 앞서 말한 중국의 동북 3성

118) 권혁수, 2003, 227쪽.

119) 李裕元-李鴻章 서한, “若下答教, 與榮無比” 동북아역사넷. (2025년 3월 15일). <http://contents.nahf.or.kr/search/item/list.do>

안보 위기 의식과 상응하다. 뒤이어 “일본국과 귀국은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니 왕래와 교제함이 어떠하신지?”¹²¹⁾라며 일본과의 관계 문제를 물어본다. 이는 이홍장이 조선문제에 대해 ‘가르침’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대일관계에 관한 것임을 드러낸다. 다만 뒤이어 이홍장은 “[중국의] 형세를 보면, 이미 문을 잠그고 자치[自治]할 수 없다.”¹²²⁾라고 말한다. 이는 아편전쟁 이후 서양과의 교역을 시작한 중국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도 있으나, 실은 조선에 전쟁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시 청이 명 때처럼 조선에 적극적인 병역 파견은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이홍장이 총리아문에 보낸 문서에서 잘 드러난다.

양국이 서로 원망하고 노여워하면 전쟁이 일어나기 쉬운 법입니다. 조선의 상황을 보면 빈약해서 그 세력이 일본을 대적할 수 없으니, 장차 조선이 혹 이전 명나라 때처럼 중국에 구원을 요청하게 되면 우리는 장차 어떻게 응해야 하겠습니까?¹²³⁾

특히, 이홍장이 해당 편지를 전달할 때는 운요호 사건이 발생하여 일본이 선보사(先報使)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를 1875년에 부산으로 파견하여 서계 문제와 운요호 사건 처리에 관한 사절 파견을

120) 李裕元-李鴻章 서한, “東方爲中華屏蔽”, 동북아역사넷.

121) 李裕元-李鴻章 서한, “日本與貴國, 疆宇相望, 通來交際如何”, 동북아역사넷.

122) 李裕元-李鴻章 서한, “揆厥形勢, 既未能閉關自治”, 동북아역사넷.

123) 李文忠公全書.譯署函稿 卷四, 「論日本派使入朝鮮(光緒元年十二月十三日)」, “兩相怨怒, 則兵端易開, 度朝鮮貧弱, 其勢不足以敵日本, 將來該國或援前明故事, 求救大邦, 我將 何以應之”, 재인용: 정선모. (2012). 李裕元의 乙亥燕行과 江華島條約. 동방한문학, 52, 15쪽.

예고하고 있던 상황이었다.¹²⁴⁾ 더욱이, 일본 문제에 관한 이유원의 답신이 도착하기 전인 1876년 1월 24일에는 직예보정(直隸保定)에서 이홍장과 모리 아리노리(森有禮)가 만나 조선 문제에 대해 회담을 열었다. 모리 아리노리는 이 자리에서 조선의 속국문제를 언급하며 조선은 속국이 아닌 독립국이라는 주장을 펴며 청의 간섭을 배제하려 했다. 이홍장은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라는 전통적인 명분론과 청일수호조규의 ‘소속방토’ 조약을 통해 모리 아리노리의 논리에 맞서려고 했지만, 모리 아리노리는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국가를 속국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국제법적 논리로 이홍장에 맞선다.¹²⁵⁾ 보정회담이 양국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데 그친 상황 속에서 이홍장의 방점은 조선과 일본에서 실질적인 전쟁이 개시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조선은 1876년 조일수호조규, 일명 강화도 조약을 맺는다. 그러나 조선의 입장에서 강화도 조약은 근대적 국제법 체계로 진입하는 분수령이었다기보다는 왜관을 통해 교린 관계를 유지하던 일본과의 관계가 서계 문제로 단절된 일을 복원한 성격으로 이해되었다. 조규 제1관의 “자주지방(自主之邦)”은 정교와 외교는 조선의 권리에 해당된다는 전통적 개념을 계승한 개념으로 이해되었¹²⁶⁾, 일본 또한 정한론으로부터 비롯된 국내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자신들이 제안한 초안에 대한 조선 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조규를 체결하고자 했기 때문이다.¹²⁷⁾

124) 김종학, 2016. 조일수호조규는 포함외교의 산물이었는가?. 역사비평, 114, 42쪽.

125) 김재선, 2012, 444쪽.

126) 유바다. (2016). 1876년 朝日修好條規의 체결과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 한국근현대사연구, 78, 33쪽.

127) 김종학, 2016, 44쪽.

이는 보정회담과 강화도 조약의 후에 작성된 1876년 6월 6일 이유원의 편지에서도 “요사이에 강화도에서 만나 사신을 접견하고 수신사를 보내니, 그 우호가 옛날과 같아 앞으로 온전하고 완만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의 일은 시종일관 오로지 당신[이홍장]께 달려있을 뿐입니다.”¹²⁸⁾라는 표현을 통해 엿볼 수 있다. 또한 “[이홍장이] 다시 자문을 보내어 경계를 엄중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이어 분쟁을 풀어주는 일이 있었다.”¹²⁹⁾라는 표현은 보정회담을 비롯하여 청이 조선을 속국으로 지정하여 일본을 억제할 수 있었다는 당시의 인식을 보여준다. 이는 1874년 연행사로 파견되었던 강위(姜瑋)에 의해 조선이 ‘소속방토’로서 청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로도 뒷받침된다.¹³⁰⁾ 강화도 조약이 근대 조약 체제로의 편입이 아닌 서계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의 관습을 재개하였다고 인식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청이 운요호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점은 조선과 청이 당시의 양국관계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이해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 조선과 청은 조약 체제로의 진입이라는 문제를 건들이지 않고 기존의 사대교린 체제의 틀 안에서 1876년의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인식한 것이다.

이후 1877년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가 초대 조선 공사로 부임하고, 항구를 열어 일본과의 교역이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그러나 이유원은 개항 이후 일본의 모습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앞서 말했듯 이유원은 통상은 곧 서학의 유입이라는 입장을 바탕으로 개항을 반대한 전형적인 위정척사파에 가까운 인물이었다. 이유원은 1878년

128) 李裕元-李鴻章 서한, “邇者會訖, 接見遣使修信, 其好如舊而向後周全, 專靠於爵前終始之地”, 동북아역사넷.

129) 李裕元-李鴻章 서한, “示戒嚴之方 繼有解紛之舉”, 동북아역사넷.

130) 유바다, 2016, 23쪽.

상소를 통하여 덕원 개항지가 태조 이성계의 조상이 묻혀있는 속릉과 가깝다고 주장하며 덕원 개항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후에도 인천은 서울과 가깝기에 개항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친다.¹³¹⁾ 이를 통해 이유원이 인식한 당대 외교문제의 핵심은 기존의 수호(修好)를 재개한 것으로 여겨진 조일수호조약이 가져온 개항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유원은 1878년 보낸 서신에서도 “관북지역의 영흥은 우리 왕조의 고향 땅[粉榆]인데, 그중 함흥과 문천과 안변은 선왕의 룡이 있는 곳입니다. 덕원, 원산은 문천과 하루 밤이면 달을 거리이므로 [개항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일본]이 기회를 엿보아 서로 대치 중에 있으니 무척이나 걱정됩니다.”¹³²⁾라고 말하며 개항 위치 문제를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하나부사 공사가 부산에서의 무역과 관련하여 항의한 일과 관련하여 “저들[하나부사]가 돌아갈 때에, 그 문서가 불손하고 또한 무역의 손해에 관한 배상을 운운하니, 내년 봄에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겠습니다.”¹³³⁾라고 말하며 일본과의 협상에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한다.

이와 같이 이유원은 1875년 편지가 시작된 이후로 1878년까지 꾸준히 대일본 관련 사무의 조정을 이홍장에게 요청하는 목적으로 서신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홍장의 경우는 1878년부터 편지의 내용이 사뭇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일본이 귀국[조선]에게 있어서 단

131) 이유원, 2023, 『가오고략4』, 이상아 역, 서울: 성균관대학교동아시아학술원, 312~316쪽.

132) 李裕元-李鴻章 서한, 關北之永興, 卽小邦粉榆之鄉也, 咸興文川安邊, 先陵所奉也, 德源之元山, 與文川之陵寢, 咫尺相望, 此無可許之道, 而彼必欲窺覷, 乃已方在相持之中, 極悶極悶, 동북아역사넷.

133) 李裕元-李鴻章 서한, 彼使還歸時, 其書不恭, 且有貿易失利賠償等說, 未知春間有何事端矣, 동북아역사넷.

지 악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여 이와 잇몸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데, 귀국이 자신들을 상대해주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합니다.”¹³⁴⁾라는 말로 일본과 평화적인 관계를 맺기를 희망하면서, 동시에 “서양국가 중 미국과 영국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통상에만 뜻이 있으니 영토를 침범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영토가 세 개의 주에 걸쳐있고, 우리 동북 지방과도 국경을 맞닿고 있습니다. 또한 때대로 영토를 잠식하려는 행위를 취하고, 동쪽 바다의 해안가에 자리잡고 있는 조선과 일본에도 병선을 보내어 상황을 몰래 살펴보니, [러시아의 위협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¹³⁵⁾라고 말하며 러시아를 새로운 주제로 꺼내기 시작한다. 따라서 일본의 조선 침략에 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던 이홍장이 어떠한 계기로 러시아의 위협을 언급하는지, 또한 그 일환으로 일본과의 제휴를 제시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2. 이리분쟁과 류큐처분에 따른 군세전략

러시아는 1854년에 발발한 크림전쟁으로 동유럽 및 발칸반도에서 부동향을 확보하려는 시도에 실패하였다. 이에 러시아는 동쪽으로 눈을 돌려 1858년 아이훈조약(愛琿條約)을 통하여 아무르강 부근을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아편전쟁 이후 서방세력이 연해주 부근 혹은 조선 부근에 항구를 설치함으로써 태평양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생기자, 러시아는 연해주 지역에서의 세력을 강화함으로써 이

134) 李裕元-李鴻章 서한, 其於貴國 不特並無惡意 似欲聯爲輔車 引爲唇齒 頗疑貴國不肯 傾誠相待, 동북아역사넷.

135) 李裕元-李鴻章 서한, 泰西英美各邦, 相距過遠, 志在通商, 無利人土地之心, 俄跨有三洲邊境, 實與我東北各界毗連, 又時以蠶食鯨吞爲事. 貴國與日本, 濱臨東海, 俄國兵船, 游奕窺伺, 而終不能免, 동북아역사넷

를 저지하고자 하였다.¹³⁶⁾ 러시아는 제2차 아편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1860년 11월 북경조약을 통하여 두만강까지 국경을 확대하며 목표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그러던 와중 1871년 과거 준가르의 지역이었던 신장 부근 이리 지역에서 이슬람교도 봉기가 발발하자, 러시아는 봉기를 진압한 후 이리 지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881년 2월 이리조약을 통해 분쟁이 일단락 될 때까지 이리 분쟁을 조절하는 문제는 단순한 양국의 국경 분쟁을 넘어 전쟁이 발발할 경우의 이해관계자인 각국의 움직임을 예상해야 하는 국제적인 것으로 변해갔다. 특히 북경조약을 통해 조선과 러시아가 국경을 접하고 있었던 만큼 이홍장의 입장에서는 일본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러시아의 남침을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 “러시아와 튀르키예 간의 강화조약이 성립되어 서쪽이 일이 마무리되었고, 동쪽의 일을 도모하려 한다.”¹³⁷⁾라는 이홍장의 편지 문구는 이러한 당시 청의 외교적 노선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답장에서 이유원은 러시아 문제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는 이홍장이 과거 중국역사의 사례를 들며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 일본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일면 수용하면서도, 서신의 주된 내용을 개항 후 일본 관료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구성함으로써 러시아 문제 자체를 논의에서 치워버린다.

그러나 1878년 이후 1881년까지 러시아와의 이리분쟁은 더욱 격화되었고, 함포의 수입과 제작 등에 자원을 투자하며 조선 사무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더욱이, 이홍장은 비록 대만출병과

136) 한동훈, 2021, "19세기 후반 조선과 러시아의 상호인식과 외교정책," 국내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서울, 47쪽.

137) 李裕元-李鴻章 서한, “邇聞俄國與土耳其和議已成, 西事方戢, 將圖東略”, 동북아역사넷.

류큐의 외무권 박탈 등 일본이 청일수호조규의 ‘소속방토’ 방침을 어기는 일이 있었으나, 운요호 사건이 강화도 조약이라는 ‘수호갱신’으로 마무리된 만큼 일본이 조선으로 침략하는 것은 방지하는 것에 성공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청은 이중의 고난을 지니고 있었다. 이리 분쟁으로 인하여 재원이 서북방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다시 한 번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은 1879년 청의 조공국이었던 류큐를 일본 영토로 병합시켰고, 청은 칙유를 통해 사실상 이를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이전부터 일본과 청이 다르게 해석하였던 ‘소속방토’에 대한 해석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것이었다. 강화도 조약은 청일수호조규의 체제가 유지되었다는 해석할 여지가 남아있었지만 류큐의 병합은 이러한 청의 해석이 안일한 태도였음을 드러냈다. 이홍장은 주일공사 하여장에게 보낸 류큐 문제에 관한 답변서는 이홍장의 판단실수를 잘 보여준다.

말을 듣지 않더라도 한 번 더 말을 하면 일본도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즉각적인 폐번치현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류큐도 그 토지를 보전할 수 있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책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이다. [...] 청일수호조규 제1조에 ‘양국의 소속방토는 서로 예의를 가지고 존중하고 침략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 이것으로 일본의 침략도 조금은 저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¹³⁸⁾

138) 光緒四年五月九日, 「密議日本爭琉球事」, 吳汝綸 編, 1965, 『李文忠公全集』 譯署函稿 卷8, 文海出版社, 1~2쪽. 재인용: 오카모토 다카시, 홍미화. (2011). 일본의 류큐 병합과 동아시아 질서의 전환. 동북아역사논총, 32. 91쪽.

이러한 정세 판단의 결과로 류큐를 잃어버리고도 이를 황제의 칙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청은 제거되지 않은 일본의 위협과 새롭게 등장한 러시아의 위협을 모두 방어하기 위하여 조선이 서양의 각국과 통상조약을 맺는 ‘균세(均勢)’ 전략을 제안하도록 한다. 류큐처분에 관한 정여창의 상소는 이러한 청 조정의 입장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조선이 어쩔 수 없이 일본과 조약을 맺은 이상, 서양 각국과도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은 조선을 병탄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서양은 타국을 멸망시킨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장래에 만일 일본과 조선이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게 되면, 조약을 맺고 있는 각국이 모두 반대하여 일본이 마음대로 횡포를 부릴 수 없게 될 것이다.¹³⁹⁾

이홍장은 앞서 일본이 조선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낸 이후, 류큐처분의 과정을 거치며 조선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서양과 통상조약을 맺으라고 권유하기 시작한다. 먼저 이홍장은 “예로부터 교린의 방법은 응대하는 방법이 적합하면 원수도 우방이 되고, 응대하는 방법이 적합하지 못하면 우방도 원수가 된다.”라고 말하며 일본과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위치시켜야 한다고 말한다.¹⁴⁰⁾ 그리고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이유에 관해서는 “만일 일본이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서양의 국가와 결합하여 항구로부터 오는

139) 光緒五年四月二十五日, 「前福建巡撫丁日昌奏」, 中國史學會 主編, 1961, 『洋務運動』 第2冊, 中國近代史資料叢刊, 上海人民出版社, 394~395쪽. 재인용: 오카모토 다카시, 홍미화. (2011). 일본의 류큐 병합과 동아시아 질서의 전환. 동북아역사논총, 32. 96쪽.

140) 李裕元-李鴻章 서한, “自古交隣之道 因應得其宜 則仇敵可爲外援 因應未得其宜 則外援可爲仇敵”, 동북아역사넷.

이익을 통해 서양을 꺾어내고, 아니면 북쪽의 러시아와 손을 잡아 영토를 확장하려는 욕심을 낸다면, 조선이 형세는 고립되고 우려는 더욱 커질 것”¹⁴¹⁾이기 때문이라도 뒷받침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법으로 다양한 나라들과의 조약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 생각해보건대, ‘독으로 독을 제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적의 술수를 제어하고 이 기회를 틈타 차례차례 태서의 여러 나라들과 조약을 맺어 일본을 견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¹⁴²⁾

또한 이홍장은 이러한 자신의 계획은 국제법(公法)에 의해 보장되는 실효성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유원은 서양열강과의 조약을 통해 일본을 견제하라는 이독제독(以毒制毒) 전략에 대해 기존의 편지와는 다르게 강력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다. 사실 이러한 반응은 이유원의 균세 전략 권고 이전에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유원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 말하는 이홍장에게

대저 러시아와 일본의 사정은 [청이] 베풀어주는 정보가 없다면 암연하게 암실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관계없이 마치 억울함을 풀기위해 [청으로] 달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적을] 압박

141) 李裕元-李鴻章 서한, “萬一日本陰結英法美諸邦, 誘以開埠之利, 抑或北與俄羅斯勾合, 導以拓土之謀, 則貴國勢成孤注, 隱憂方大, 동북아역사넷.

142) 李裕元-李鴻章 서한, 爲今之計 似宜用以毒攻毒 以敵制敵之策 乘機次第 亦與泰西各國立約 籍以牽制日本”, 동북아역사넷.

해주는 은혜를 바랄 뿐이니, 이는 단순히 저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닌 온 나라의 의견입니다.”¹⁴³⁾

즉, 조공국으로써 조선은 타국과 통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며 일본과의 실질적 사무에만 청의 중재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리고 이는 청이 청일수호조규를 통해 시행하고자 하였던 전략과도 일치한다.

우리 작전(爵前)[이홍장]께서는 성망이 먼 곳까지 떨치시고 모획이 중외에 적절해서 [...] 일본인이 대만을 노리는 것을 우려할 필요가 없으며 폐방은 오랫동안 그 길러 준 은혜를 입었으니 또한 항상 이를 믿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¹⁴⁴⁾

이러한 발언은 청이 처음에 수행하고자 했던 전략이기도 하며, 조선에게 강화도 조약은 이러한 청의 능력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했다. 따라서 조선의 입장에서는 서양과 일본이 조선에서 이권을 노리는 것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어째서 청은 조선의 외교적 전략을 수정하라고 권고하는지 알 필요가 있었다. 다만 청은 상국의 체통을 위하여 앞서 언급된 “자치가 불가능하다”라는 표현 말고는 달리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다.

143) 李裕元과의 서한 왕복 보고, “大抵俄洋事狀, 日本情形, 若非下布之纖悉, 漠然尚在暗室中矣。無論何方何人何事, 如有走愬之端, 則惟冀鎮壓之澤 此豈小生一人之顛望, 乃舉國齊聲之祝”, 동북아역사넷.

144) 장인성 외 엮음, 『근대한국 국제정치관 자료집: 제1권 개항·대한제국기』,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49쪽.

이러한 청의 입장은 이유원이 이홍장의 서신 속 논리의 모순을 지적하는 근거가 된다.

태서의 공법이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국가를 빼앗거나 멸망시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른 터키를 구원할 때는 공법에 의지할 수 있지만, 이미 멸망한 류큐를 부흥시키는 데는 공법이 시행되기 어렵습니까? [...] 일본은 통상에 익숙하고 제조에 뛰어나서 부강지술을 모두 깨우쳤는데도 오히려 그 창고가 비고 국채가 누적되었으니, [...] 어찌 국고를 고갈하고 국채를 누적해서 일본의 전철을 밟겠습니까?

터키와 일본의 상반된 사례, 그리고 통상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하지만 국채가 쌓이고 있는 일본 등은 모두 이홍장이 이유원을 설득하기 위해 서신에 적었던 내용들이다. 이홍장으로써는 일본에 대한 조선의 적의를 낮추어 전략적 동맹까지는 나아가게 하되, 동시에 러시아와 일본의 위협을 인식하여 중국의 울타리 역할을 해야 했다. 그러나 이 모든 목표의 원인은 중국의 약세에 있었음에도 그것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으로써는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말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즉, 이유원의 반박이 단순히 조선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에 이홍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홍장의 군세 전력은 그 효과는 차치하고서라도 일본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난 실책, 그리고 청 자체의 국력 감소로 인하여 외교적 혼선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청의 주장의 타당성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었다.

덧붙여 청의 외교적 혼선 혹은 변화가 위정척사파로 하여금 개항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생각은 이홍장의 서신과 황준헌의 『조선책략』의 내용적 차이를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김홍집이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어 『조선책략』을 가져올 때, 황준헌은 주일 청국 공사관 참찬관이었다. 이때 그의 상사가 하여장이었으며 하여장과 이홍장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황준헌도 이홍장과 함께 움직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조선책략』의 요지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하라는 것이고, 책의 대부분은 일본에 대해 의심할 조선 내부의 논의를 상정한 후 이를 파훼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도 이홍장과 황준헌, 곧 청이 일본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을 취하지 못했고 조선의 위정자들은 당시 일본과의 개항 후 생긴 문제들에 관심이 있었던 만큼 그들의 신뢰를 얻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자신의 군세 전략을 반대한 이유원의 상소를 확인한 후, 청은 이유원을 통한 서신 교환의 가치에 의문을 가진다. 이홍장은 총리아문에 서신 교환에 대해 보고하며 “[이유원은] 일본과의 개항은 부득이함에서 나온 것이며, 서양과 통상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입을 여는 일이 없다.”¹⁴⁵⁾라고 말하며, “생각하건대, 이유원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것 같다”¹⁴⁶⁾라며 서신 교환의 실효성을 의심한다. 이후 이홍장은 “이유원에게 답장을 보냈으나, 단지 안부를 묻는 형식으로 했다.”¹⁴⁷⁾라는 보고를 통해 이유원을 통해 조선의 외교 정책을 전환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음을 인정한다. 실제로 이유원은

145) 李裕元과의 서한 왕복 보고, 동북아역사넷, (2025년 3월 15일), <http://contents.nahf.or.kr/search/item/list.do>

146) 李裕元과의 서한 왕복 보고. 동북아역사넷.

147) 李裕元과의 서한 왕복 보고. 동북아역사넷.

이어지는 편지에서도 인천 개항과 관련된 불만을 주로 하면서 일본을 통해 전달된 프랑스의 국서를 돌려보냈다는 일 등을 전달한다. 이후 이유원은 청나라로 조선인 유학생을 파견하는 일과 관련되어 이전에 없던 방대한 양의 선물을 보내며 이홍장의 호의를 구하고, 이홍장 역시 형식적인 답변을 이어간다. 그리고 1881년 황준헌의 『조선책략』을 참고하라는 이홍장의 편지를 끝으로 둘의 서신 왕복은 서서히 중단된다. 1880년 통리기무아문이 세워지고, 이유원이 이홍장과 편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변명하며 파직된 것이 영향을 주었고, 결정적으로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이 맺어짐에 따라 조선이 근대적 조약체제로 들어오기 시작하자 더 이상 서신이라는 사적인 연락망을 통해 소통할 필요성이 줄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청은 더 이상 기존의 명분론만으로는 조선을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조선의 외교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다. 이홍장은 류큐 문제를 두고 한 번 협상한 적이 있던 그랜트 전 미국 대통령(Ulysses S. Grant)과 친한 사이라고 알려진 슈펠트 제독(Robert Wilson Shufeldt)이 조선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기존까지 “태서(泰西)”로 지칭하던 통상국을 “연미론(聯美論)”이라는 주장으로 탈바꿈시킨다.¹⁴⁸⁾ 그리고 이러한 적극적인 개입은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후 서울에서 발발한 임오군란을 거치며 감국정치에 가까운 개입으로 발전하는 통로가 된다.

148) 崔蘭英, 2024, 「李鴻章の朝鮮に対する「開国」勸告(二)―「対米開国論」の展開―」, 常磐大学人間科学部紀要『人間科学』41(2) 66쪽.

IV. 결론

본고는 개항기 조선의 외교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그 과도기적 기간인 강화도 조약을 전후로 한 이홍장과 이유원의 서신 교환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전통적인 기관 간의 교류로는 외교적 소통에 차질이 있었던 점을 바탕으로 양 정부가 사실상 공인한 비밀 서신이 주요 소통창구로 떠올랐음에 주목하였고, 내용적으로는 청의 외교적 조언이 조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청이 처했던 국제정세적 위기에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에 집중하였다. 청은 서신 초기에는 대만 출병 등의 사건을 겪으며 일본의 조선 진출을 경계하였지만, 청일 수호조규와 강화도 조약의 체결로 일본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리분쟁을 통해 러시아가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고, 일본이 류큐를 병합함에 따라 조선 정책에도 변화와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고찰은 이후 전개되는 한국외교사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이유원은 서신 교환의 시작부터 끝까지 위정척사적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이유원이 연행사로 파견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의 세계 인식이 유달리 폐쇄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는 「이역죽지사」와 같은 시를 통해 『해국도지』에 등장하는 여러 나라를 묘사하면서도 단순히 이국적인 흥취를 취하기만 하였고¹⁴⁹⁾, 아편전쟁을 위로하기 위하여 열하사로 떠난 친구를 배웅하면서도 병자호란의 기억을 되새기는 태도를 보였다¹⁵⁰⁾. 그가 이홍장과의 서신 교환을 통해 얻으려 한 것은 일본의

149) 이유원, 『가오고략1』, 이성민 역, (서울: 성균관대학교동아시아학술원, 2022), 253쪽.

150) 이유원, 2022, 463쪽.

개항을 저지하거나, 개항 이후의 분쟁을 조절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홍장의 조언에 혼선이 있었던 것 또한 이유원이 본인의 입장을 고수하게 된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고종이 이유원의 서신 교환의 배후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이홍장으로부터 전해진 이독제독 전략이나 황준헌의 『조선책략』 속 전략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만손의 상소문에서 잘 드러나는 것처럼 청의 논리는 세계의 실상과는 무관하게 그 자체의 논리만으로 반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청의 논의라는 명목을 통해 당시 적자에 허덕이던 국고를 보강하려고 조약을 맺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까닭이기도 하다.¹⁵¹⁾ 다만 조미수호통상조약과 동년에 발생한 임오군란은 개항과 근대조약으로의 편입이 국내적인 지지기반을 얻지 못하였던 한계를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서신 교환을 통해 국가의 외교적 사무를 상담받고 또 결정하는 것은 이유원과 이홍장의 사례에 국한되지 않는다. 체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또 그 체제가 변화할 가능성이 적은 국가에서 몇몇은 이와 같은 비밀 서신 교환을 통해 자신의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려 했다. 강화도 조약 당시 주청 영국 공사나 일본 측의 함선을 찾은 오경석(吳慶錫), 청으로부터의 외교적 자주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일본과 교제한 김옥균(金玉均)의 사례¹⁵²⁾는 단순히 개화파와 매국노와 같은 관점이 아닌 당대의 조선 정치의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151) 김종학, 2021, 163쪽.

152) 김종학, 2017, 『개화당의 기원과 비밀외교』, 서울: 일조각, 27~64쪽.

〈참고문헌〉

1. 1차문헌

『조선왕조실록』

李裕元-李鴻章 서한

2. 단행본

김종학, 2017, 『개화당의 기원과 비밀외교』, 서울: 일조각.

김종학, 2021, 『홍선대원군 평전』, 서울: 선인.

이유원, 2023, 『가오고략4』, 이상아 역, 서울: 성균관대학교동아시아학술원,

장인성 외 엮음, 2012, 『근대한국 국제정치관 자료집: 제1권 개항·대한제국기』,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3. 논문

권혁수. 2003. 한중관계의 근대적 전환과정에서 나타난 비밀 외교채널 -이홍장과 이유원의 왕복서신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37, 215-239.

김재선. 2012. 이홍장(李鴻章)의 대외정책(對外政策) 연구(研究). 동국사학, 53(0), 437-472.

- 김종학. (2016). 조일수호조규는 포함외교의 산물이었는가?. 역사비평, 114, 25-56.
- 리보,노요한. 2018. [번역] 조선 문인 李裕元과 游智開의 시문 교류. 동아한학연구, 13, 151-173.
- 손성욱. 2018. "'外交'의 균열과 모색: 1860~70년대 淸·朝관계." 역사학보, 240, 525-570.
- 오카모토 다카시. 2011. 일본의 류큐 병합과 동아시아 질서의 전환 - 청일수호조규를 중심으로 -. 동북아역사논총, 32, 63-103.
- 유바다. 2016. 1876년 朝日修好條規의 체결과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 한국근현대사연구, 78, 7-4
- 정선모. 2012. 李裕元의 乙亥燕行과 江華島條約. 동방한문학, 52, 85-124.
- 崔蘭英, 2024, 「李鴻章の朝鮮に対する「開国」勸告(二) - 「対米開国論」の展開-」, 常磐大学人間科学部紀要『人間科学』 41(2).
- 한동훈, 2021, 19세기 후반 조선과 러시아의 상호인식과 외교정책, 고려

1880년대 청월관계의 갈등: 균세均勢를 위한 자주自主와 번속藩屬 중국국가박물관

최은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 전공 석사과정

I. 서론

베트남은 흔히 조선, 류큐와 함께 중국의 대표적인 조공국으로 꼽힌다. 하지만 세 국가가 제국주의 열강들에게 복속되기 직전에 청이 도입한 정책은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으로, 이 정책적 차이는 각국이 복속된 시기의 차이에서 기원한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이 세 국가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의 차이에서 생겨난 것이기도 했다. 이 논문은 1880년-1883년대에 청이 베트남에 적용한 정책을 통해, 일차적으로는 해당 시기의 대對번속국 외교를 규명하고, 이차적으로는 청 외교에서 베트남의 특수성을 밝혀내고자 한다. 안남의 비협조와 청의 무관심, 그리고 종국적으로 양국이 서로를 경원시하는 태도 때문에, 둘 사이의 직접적인 협조는 1880년까지 없었다.

이 논문에서의 시기 구분은 다음과 같다. 1880년은 11월 10일은 생페테르부르크에서 증기택 주프랑스 청 공사가 바르텔레미 생일레르 프랑스 외무장관에게 1874년 갑술화약의 체결에 대해 첫 번째 항의 서

한을 보낸 시점이고, 1883년은 쿠르베 제독의 후에성 함락과 더불어 이흥장-푸르니에 협약이 체결되어 청과 안남 사이의 종번宗藩관계가 완전히 종식한 시점이다. 이 글은 1880년의 청나라 개입과 1883년 청월관계의 공식적 종식 사이의 시기를 크게 삼분할한다. 첫째, 증기택이라는 인물을 통해 청 조정 내에서 주류였던 안남, 속국과 보호권에 대한 인식을 조망하고자 한다. 둘째, 당정경과 응우옌 반 프엉의 밀서를 통해 베트남의 안보 인식과 베트남이 추진했던 군세 정책의 본질을 밝히고자 한다. 셋째, 안남이 청으로 보낸 마지막 사절단의 사례를 통해 청-안남 관계가 매우 유연했음을 주장하고, 청의 안남 정책이 현실주의적인 성격을 띠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논문의 서론에서는 선행 연구와 1차 사료에 대한 검토에 큰 분량을 할애하여, 이 시기와 관련된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1차 사료 소개

이 시기를 보는데 중요한 사료로는 크게 월, 중, 불 3개국의 사료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베트남 측의 사료다. 청월관계사 연구에 흔히 사용되는 흙정월사통감강목『钦定越史通鉴纲目』은 떠이썬西山 반란(1789년)에서 그쳐서 본 연구에는 이용할 수 없다. 이 시기의 가장 유용한 사료는 응우옌 왕조의 전체 역사를 다루는 대남식록『大南寔錄』이다. 대남식록은 1811년에 자롱 황제의 명으로 시작되었으며, 남북조시대 응우옌 가문의 역사를 다룬 전편前編과 대남 통일 이후를 기록한 정편正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청-대남 관계에 대한 글들만을 수록한 대남실록청월관계사료회편『大南實錄清越關係史料彙編』이 대만 중앙연구원의 동남아 연구 프로젝트東南亞區域研究計劃의 일환으로 출판되었다.¹⁵³⁾ 안타

깝게도 이 문서집은 서울대학교 도서관이 소장 중이지 않아, 본 연구는 대남식록 원본을 사용한다.

다른 중요한 사료는 1880년과 1882년 청행 사절로 임명된 팜 턴 주엣(Phạm Thận Duật范慎通) and 응우옌 투엣(Nguyễn Thuật阮述)의 연행록이다. 팜 턴 주엣은 형부상서刑部尚書이자, 사절단의 흠차대신欽差大臣을 역임했고, 시랑가참지함侍郎加參知銜의 직함을 갖고 있었던 응우옌 투엣은 부사副使를 맡았다. 이 사절단이 공저한 것으로는 천진을 방문하고 집필한 건복원년여청일정『建福元年如清日程』이 있고, 응우옌 투엣이 집필한 기록으로는 왕진일기『往津日記』가 유명하다. 왕진일기는 Paul Demiéville 교수가 홍콩의 Rao Zongyi 교수에게 넘겨주고, 1977년 8월에 방콕에서 개최된 7차 아시아 사학자 학술회의에서 최초로 발표되었다.¹⁵⁴⁾ 오늘날 이 두 글은 모두 2010년 복단대학출판사와 한놈연구원(Viện nghiên cứu Hán Nôm)에서 합작으로 출판한 월남한문연행문집『越南漢文燕行文獻』에 수록되어 있다.¹⁵⁵⁾ 둘째는 중국 측 사료다. 청일관계 연구에 널리 사용되어 왔던 공식 문헌들로는 대청회전『大清會典』, 청사고『清史稿』와 청실록『清實錄』이 존재한다. 하지만, 모두 방대한 양 탓에 문서집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 연구가 사용하는 주된 문헌은 중국근대사 자료총간: 청불전쟁편『中國近代史資料叢刊: 中法戰爭』와 청광서조중불교섭사료『淸光緒朝中法交涉史料』이다. 전자는 샤오슝전邵循正 등이 편찬한 7책짜리 전집인데, 한문으로 번역된 프랑스, 영국, 미국의 외교 문서, 청불일국 간의 협상 자료는 물론, 주요 행위자들

153) 許文堂, 謝奇懿, 《大南實錄清越關係史料彙編》, 口台湾中央研究院東南亞區域研究計劃, 2000

154) 龔敏, 阮述《往津日記》引发的学术因缘——以香港大学饶宗颐学术馆藏戴微、饶宗颐往来书信为中心, 2011

155) 越南漢文燕行文獻集成, 復旦大學出版社, 2010

이 주고받은 서한, 수필과 회고록, 국경 사정 조사 보고서 등을 총망라하고 있다. 후자는 원룡선沈雲龍이라는 역사학자가 편찬한 1600페이지가 넘는 사료집이다. 그 다음은 이홍장 전집『李鴻章全集』이다. 이홍장 전집에서 1880년대 안남에 관한 자료는 33권에 수록되어 있다. 네번째 자료는 곽정이郭廷以, 왕율균王聿均이 편찬한 중법월남교섭당『中法越南交涉檔』¹⁵⁶⁾이다. 이는 1962년에 대만 중앙연구원 근대사 연구소의 주도 하에 수집된 문서집으로, 1875년부터 1911년까지 교섭에 관련된 모든 문서를 수록하고 있는 듯하다. 아쉽게도 이 글 역시 서울대학교 도서관이 소장 중인 문헌이 아니다. 마지막은 대만 근대사연구소近代史研究所 당안관檔案館의 관장검색계통館藏檢索系統¹⁵⁷⁾에서 “완복시阮福時”, “당경송唐景崧”, “당정경唐廷庚”, “범신희范慎燠”을 포함한, 1880년부터 1885년간의 “베트남 목”에 수록된 모든 문서다. 대만 근대사연구소 당안관은 청나라 말기부터 중화민국 시기까지를 아우르는 외교문서집의 60%가량을 디지털화한 자료다. 필자가 한문을 읽을 수 없어서 해당 사이트에 있는 모든 자료를 탐독하진 못했지만, 완복시(뜨득 황제)가 청 병력을 유지해달라고 양광총독에게 보내는 서한¹⁵⁸⁾과 당정경이 모 안남 관리(응우옌 반 뜨영)과 나눈 밀담의 내용을 양광총독에게 전달하는 서한¹⁵⁹⁾을 찾아낼 수 있었다.

156) 郭廷以、王聿均, 中法越南交涉檔, 台湾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962

157) archivesonline.mh.sinica.edu.tw

158)

<https://archivesonline.mh.sinica.edu.tw/detail/2804b68c9023714a7565eb65d759603a/?seq=1>

159)

<https://archivesonline.mh.sinica.edu.tw/detail/fc85a821ddadcf1c7bdf08b1c40b808b/?seq=1>

셋째는 프랑스 측 사료다. 황서黃書라고도 불리우는 프랑스 외교문집 『Documents diplomatiques』은 총 네 문집으로 분류된다. 첫째는 갑술화약부터 부레Bourée 공사가 협상을 시작하는 시점까지(1874년 3월-1882년 12월), 부레 공사 협상 시작부터 쥘 페리와 증기택의 서한까지(1882년 12월-1883년 11월), 리 푸르니에 협약 체결부터 박레 사건으로 청불관계 격화까지(1884년 5월-1884년 7월) 그리고 청불전쟁의 시작부터 청불전쟁의 종전까지(1884년 7월-1885년 12월)로 분류되어 있다. 이 사료는 프랑스의 관점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높지만, 우리가 조명하고자 하는 중월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명확하여, 이 논문에서는 중심으로 다루지 않을 것이다.

2. 선행연구

프랑스, 중국, 베트남 학계의 갑술화약 이후의 청월관계에 천착한 연구를 알아보기 전에, 제3국(한국, 영미권, 일본) 학계에서 축적된 연구 성과를 간략하게 분석하자. 한국에서 중월관계에 대한 연구는 레왕조의 전문가인 유인선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19세기의 안남의 외교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월선越鮮관계가 많았다. 후자에 속하는 연구서로는 윤대영의 1862년부터 1945년의 한월 교류사를 다룬 글과 인하대학교 한국학 연구소에서 최병욱이 주도한 조선과 안남의 조공 사절단이 북경에서 공유한 창화시唱和詩에 대한 연구¹⁶⁰⁾가 대표적이다. 국내에서 越南漢文燕行文獻에 천착한 연구로는 김영죽의 연구(金玲竹, 2013)¹⁶¹⁾와 강찬수(姜贊洙, 2011)¹⁶²⁾의 연구가 유이했

160)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과 베트남 사신, 북경에서 만나다: 창화시唱和詩 연구, 2013

는데, 그마저도 강찬수는 안남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위 문집에서 조선과 교류한 사례를 검토한 연구였다. 그 외에 영미권 연구로 주목할 만한 글로는 Phạm Thân Duật과 Nguyễn Thuật의 사절단의 정치를 “마키아벨리적”이라고 형용한 Tsang과 Nguyen의 논문이 있다.¹⁶³⁾ 두 공저자는 응우옌 왕조의 리반쪽을 위시한 전통적인 사절단과 팜 툰 주엿, 응우옌 투엿의 사절단과 비교하면서, 후자가 전통에서 벗어난, realpolitik적인 외교에 기반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하와이대학의 리암 켈리 (Liam Kelley, 2005)¹⁶⁴⁾가 집필한 단행본은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여청 연행사의 한시를 바탕으로 조공관계를 재구성한다. 그의 연구는 Woodside¹⁶⁵⁾가 주창하고 기존 베트남의 역사 서술 방법을 대표했던 중국 중심적인 관점의 “little China theory”에 도전한다. 그는 Keith Taylor¹⁶⁶⁾의 서술 방법을 이어받아, 베트남의 독자적 정체성을 강조했다라는 의의를 갖는다. 베트남-중국 관계사를 통사적으로 다룬 야마모토 타츠로 (1975)¹⁶⁷⁾를 포함한 일본 학계의 연구도 다수 존재하지만, 필자의 언어적인 한계로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

161) 金玲竹, 베트남 漢文 使行文獻에 담긴 中國見聞, 그 특징적 면모, 2013

162) 姜贊洙, 16-19세기 越南漢文燕行文獻에 수록된 朝鮮 使行文學에 대한 고찰

163) Gabriel F. Y. Tsang, Hoang Yen Nguyen, The Vietnamese Confucian Diplomatic Tradition and the Last Nguyễn Precolonial Envoys' Textual Communication with Li Hongzhang, 2020

164) Liam Kelley, Beyond The Bronze Pillars: Envoy Poetry And The Sino-Vietnamese Relationship, 2005

165) Woodside, Alexander Barton. Vietnam and the Chinese Model: A Comparative Study of Nguyen and Ch'ing Civil Government in the First Half of the Nineteenth Century.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1988

166) Taylor, Keith Weller, The Birth of Vietna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167) 山本達郎, 越南雨中國關係史, 東京, 山川出版社, 1975

19세기 말 안남 역사 전반을 다룬 프랑스 학계의 연구들은 상당히 축적되어 있으나, 주로 안남-청의 국경문제나 프랑스 식민시기에 편중된다는 한계가 있다. 프랑스 학계에서 응우옌 왕조에 대한 가장 권위있는 역사학자인 응우옌 테 아잉(Nguyễn Thế Anh, 1992)¹⁶⁸과 요시하루 츠보이(Yoshiharu Tsuboi, 1987)¹⁶⁹는 안남의 관점에서 안남 왕조의 종말을 조망했다. 하지만 두 연구는 상당히 광범위한 시기를 포괄적으로 조명한다는 맹점이 있다. Philippe Truong(1998)은 응우옌 왕조의 청행 사절단과 조공품으로 바친 베트남 청자를 연구했으나, 본 연구는 이 연구를 접근성의 문제로 탐독하지 못했다.¹⁷⁰ 프랑수아 조요(François Joyaux, 2022)¹⁷¹ 프랑스 사료에만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여 프랑스 인도차이나의 역사를 통사적으로 서술하는데, 그는 19세기 후반 대남은 주체성을 상실한 상태였으며, 중국과 프랑스의 세력권 투쟁의 패러다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또한 그는 대남이 1874년 조약의 2조로써 외교권을 상실하고 보호국이 되는 것임을 알았으나 의도적으로 묵인한 것이며, 항시 중국의 은덕에서 비롯된 보호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간주하고 있다. 그 외에 프랑스로 1880년대 초반의 시기를 다룬 2차 문헌은 거의 없으나, 당시 관찰자들이 남긴 기록들은 일부 존재한다. Pene-Siefert라는 신부가 발간한 단행본¹⁷², 1868년부터 1871년까지 상하이와 광저

168) Nguyen The Anh, Monarchie et fait colonial au Viet-nam. (1875-1925) Le crépuscule d'un ordre traditionnel, Harmattan 1992

169) Yoshiharu Tsuboi, L'empire Vietnamien face à la France et à la Chine, Harmattan, 1987

170) Philippe Truong, Les ambassades en Chine sous la dynastie des Nguyễn (1804 - 1924) et les bleu de Hué. Paris, 1998

171) François Joyaux, Nouvelle histoire de l'Indochine française, 2022

172) Jocelyn Pène-Siefert, La Question Tonkinoise avant et apres le traité avec la Chine, 1885

우에서 차례로 영사직을 맡았던 Dabry de Thiersant의 기록¹⁷³⁾, 통킹 총독을 지낸 해군 제독 Olivier Martellière의 기록¹⁷⁴⁾, Edouard Guillon이라는 법학 교수가 집필한 논설¹⁷⁵⁾, Albert Billot라는 외교관의 역사서¹⁷⁶⁾로, 대부분 1885년 6월 9일 텐진조약이 체결되어 청불전쟁이 막을 내린 이후에 집필된 기록들이다. 상당한 완성도를 보이는 Albert Billot의 역사서를 제외하고는 와전된 경우가 많고, 모든 저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안남 보호화와 관계가 있다고 해도, 주요 행위자가 아닌 적이 많다.

1880년대 초반 청월관계에 대한 가장 많은 연구가 축적된 것은 중국과 대만이다. 평치안의 석사학위 논문은 연행사 문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했으나, 정치적인 함의를 도출하진 않았다¹⁷⁷⁾. 외교사적으로 가장 완성도가 높은 연구는 왕지강王志强의 연구다. 특히, 그의 박사학위 논문¹⁷⁸⁾은 이홍장의 대안남 인식과 정책을 통시적으로 조망하고, 조선의 정책에 준 영향까지 설명한다. 추안 흐씨우와 공저한 논문(王志强, 权赫秀, 2011b)¹⁷⁹⁾은 1883년 Phạm Thận Duật과 Nguyễn

173) Dabry de Thiersant, La solution de la question du Tonkin, au point de vue des intérêts français, 1885

174) Olivier Martellière, La Question du Tonkin, 1886

175) Edouard Guillon, Le conflit franco-chinois (La guerre et les traités) d'après les documents officiels, 1885

176) Albert Billot, L'Affaire du Tonkin. Histoire diplomatique de l'établissement de notre protectorat sur l'Annam et de notre conflit avec la Chine 1882-1885 par un diplomate, 1888

177) 彭茜, Tribute and Literary Exchange: The Study of Vietnamese Envoys to China in the Qing dynasty and Guangxi, 朝貢關係與文學交流: 清代越南來華使臣與廣西研究, 2014

178) 王志强. A study on Li Hongchang's awareness and policy of Vietnamese issue (1881-1886) 李鴻章對越南問題的认识與策略研究, 1881-1886, 2011

179) Wang, Zhiqiang, Quan, Hexiu, From the 1883 voyage of the

Thuật의 사절단의 여정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며,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의 3차 교섭 시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베트남 및 청-티베트 관계 전문가인 쑨홍넨孫宏年이 이 시기에 대해 집필한 논문은 두 편이 있는데, 두 편 모두 각각 2페이지, 6페이지 남짓되는 간략한 논문이다. 첫째는 응우옌 투엇의 사절에 대한 짧은 요약에 해당하고, 두번째는 안남의 사절단이 청에서 목격한 서양 문물에 천착하며, 안남의 근대화 정책이 청을 통해 전개되었다고 주장하는 글이다.

이렇듯 1880년대 베트남 연행사에 대한 선행연구는 10편 정도 된다. 대남식록, 연행록, 청의 외교문서와 프랑스의 외교문서를 두루 참고한 연구는 왕지강의 박사논문이 유일한데, 그는 이홍장의 외교정책에 천착하여 청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재구성하는데는 한계를 갖는다. 그 외에 중요한 연구로는 대만의 라이충칭(賴淙誠)의 박사학위 논문¹⁸⁰⁾은 통상과 국경 획정 문제를 중심으로 청월관계를 다루었다. 양쯔샹의 박사학위 논문(楊紫翔, 2014)¹⁸¹⁾은 19세기 후반 청월관계를 국제정치학적으로 분석한 흔치 않은 학위논문이다. 그는 Brantley Womack, 2006¹⁸²⁾에서 제안된 “불균형”이라는 개념을 인용하여, 전통 청월관계를 불균형적 관계라고 규정한다. 또 대남의 청 인식은 조선이나 류큐의 청 인식과 크게 달라서, 현실주의적 질서에서의 강대

Vietnamese ambassador to China: considering the end of the Zongfan relationship between Vietnam and China. 王志强, 权赫秀, 从1883年越南遣使来华看中越宗藩关系的终结, 2011

180) 賴淙誠,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Việt Nam under the Qing Dynasty: Annual Trade and Border Issues [清越關係研究-以貿易與邊務為探討中心 (1644~1885)]. Ph.D. Dissertation. Taipei, 2006

181) 楊紫翔, 非对称视角下的近代中越相互认识: 以中法越南交涉为中心, The Recent Sino-Vietnamese Mutual Perceptions in the View of Asymmetry --Center on the Sino-French Negotiation Over Vietnam, 2014

182) Womack, Brantley, China and Vietnam: The Politics of Asymmetry, 2006

국과 약소국의 양국 관계의 패러다임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응우옌 호앙 옌이 대만에서 출판한 박사학위 논문은 1849년부터 1877년 사이의 베트남 연행록을 연구하고 있다.¹⁸³⁾

중국의 연구는 크게 3가지 키워드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다. 첫째로, 중국 학계는 청월 관계를 “서세동점”이라는 비극적 숙명을 공유하여, 이에 저항한 연대의 역사로 그려내는 경향이 있다. 쑨홍넨의 연구가 가장 이러한 성향이 두드러지는데, 그는 1882년 대남 사절단의 청 연행은 근대와의 조우이며, 사절단이 귀국한 이후 프득 황제에게 중국을 모방한 모델을 제안했다고 한다. 두 번째 키워드는 “국경 획정”이다. 국경 문제는 한국 학계에서 조청관계를 다루는데는 거의 논의되지 않는데, 왜 청월관계에서는 이 문제가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을까? 우선, 통킹-원난 국경에 흑기군, 황기군을 포함한 비적들이 청-불 관계가 전개되는데 지대한 명분적, 군사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 문제를 둘러싼 청일 협상에서 통상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았던 것에 반해, 프랑스는 안남 점령의 명분으로 삼았던 것이 홍강 유역을 통해 원난과 통상할 수 있는 무역로를 개척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연구 현황은 어떠할까? 베트남 학계의 연구는 전반적으로 동아시아 타국에 비해 전산화가 미진하다. 예컨대, 베트남 학술잡지들을 총망라한 웹사이트에서 “이홍장”을 검색하면 등장하는 연구는 1개에 불과하다.¹⁸⁴⁾ 따라서 본 연구 주제에 대한 베트남 국내

183) 阮黃燕. 2015. 『1849-1877年間越南燕行錄之研究 (博士論文) 』. 國立成功大學, 台南.

184) <https://vjol.info.vn/>. 해당 연구는 이홍장의 양무운동과 베트남의 동유운동을 비교한 논문이다. Phạm Đức Thuận, Phong trào Dương vụ ở Trung Quốc cuối thế kỷ XIX và Phong trào Đông Du ở Việt Nam đầu thế kỷ XX, 2024

성과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으나, 이 시기에 대해 열람 가능한 소수의 논문이 인용하는 주석을 통해 현재 베트남 학계의 성과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쩌득안 (Trần, Đức Anh, 2024)¹⁸⁵⁾는 18세기 19세기의 대남 사절단에 의한 통상 사례를 보고 있으나, 외교사적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는 아니다. 그는 1885년에 프랑스의 중국 전문가이자 통역사 Devéria가 집필한 글¹⁸⁶⁾을 주로 인용하고 있는데, 중국 측의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료적 기여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그가 인용하고 있는 브우 껌 (1966)¹⁸⁷⁾은 응우옌 왕조 하의 사절단을 연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 주제의 문제의식에 가장 부합한다. 안타깝게도, 이 글은 전산화되어 있지 않은 듯하다.

레티호아이탄의 연구¹⁸⁸⁾ 역시 8쪽에 불과한 것에 비해 1802년부터 1885년이라는 방대한 시간을 다루고 있다. 이 글은 프랑스와의 조약들이 기존 청월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일말의 언급도 하지 않으며, 전술한 Devéria의 글을 포함한 사료에 기반하여, 사절의 의례 규정과 형식을 정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응우옌 티 타오, 외(1996)¹⁸⁹⁾은 베트남 연행사의 인물 사전이다. 이 단행본

185) Trần, Đức Anh, Role of the Vietnamese Diplomatic Envoys in Trade between Vietnam and China during the 18-19 Centuries. Tạp chí Khoa học Đại học Đông Á, 3(4), 2024

186) Gabriel Devéria, Histoire des relations de la Chine avec l'Annam-Vietnam du XVIe au XIXe siècle, 1885

187) Bửu Cầm, Các sứ bộ do triều Nguyễn phái sang nhà Thanh (Envoy missions to China, sent by the Nguyễn dynasty). Sử địa (History and Geography magazine.) No 2, 46-51, 1966

188) Lê Thị Hoài Thanh, Hoạt động đi sứ và tiếp sứ trong quan hệ ngoại giao Việt Nam - Trung Quốc dưới triều Nguyễn (1802-1885), 2019

189) Nguyễn Thị Thảo, Phạm Văn Thắm, Nguyễn Kim Oanh (1996). Sứ thần Việt Nam (Vietnamese Envoys.) Hà Nội: Văn hóa Thông tin.

은 알파벳 순으로 정리된 사절단에 대한 간략한 전기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응우옌 투엣과 팜턴주엣에 대한 항목이 각각 한 문단 정도로 지나치게 간략하고, 정보를 뒷받침할만한 사료에 대한 각주가 없다는 약점이 있다. 팜턴주엣과 응우옌투엣의 사절단을 다룬 연구는 한 건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다른 연구에서 이미 수차례 인용된 왕진일기를 다시 소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¹⁹⁰⁾

2015년에 나온 응우옌 호앙 옌의 *베트남의 중국 사절단의 작품들에 대한 외국 연구 정형 총관*¹⁹¹⁾에 의하면, 응우옌 투엣의 왕진일기에 대한 연구가 Trần Kinh Hòa라는 홍콩대학 소속 베트남인 학자에 의해 1980년에 출판된 것이 외국 대학의 베트남 연행록 연구의 최초다. 호앙 옌은 중국 측 연행사에 대한 연구가 총 57건 발견되었는데, 이는 조선의 연행사에 대한 120건이 넘는 논문에 한참 못 미친다며, 사료가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연구 접근성이 더 어려운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 외에 레궤돈의 사절¹⁹²⁾과 당후이쯔의 사절¹⁹³⁾, 그리고 건륭제 80년을 축하하기 위한 사절¹⁹⁴⁾에 대한

190) Phạm Hoàng Quân, Lược tả về sách “Vãng sứ Thiên Tân nhật ký” của Phạm Thận Duật và “Vãng Tân nhật ký” của Nguyễn Thuật/Description about the Book “Vãng sứ Thiên Tân nhật ký” by Phạm Thận Duật and “Vãng Tân nhật ký” by Nguyễn Thuật, 2008

191) Nguyễn Hoàng Yến, Tổng quan tình hình nghiên cứu về các tác phẩm đi sứ Trung Quốc của Việt Nam ở nước ngoài, 2015

192) Hoàng Xuân Hãn, Vụ Bắc sứ năm Canh Thìn đời Cảnh Hưng với Lê Quý Đôn và bài trình bằng văn Nôm” (The Mission to China in Gengchen Year under the Reign of Cảnh Hưng, with Lê Quý Đôn and the Report in Nôm Script.) Sử địa (History and Geography Magazine). Số 6, 3-5., 1967

193) Phạm Tuấn Khánh (1995). Chuyến đi sứ của Đặng Huy Trứ và một tư liệu chưa được công bố (Đặng Huy Trứ mission Journey and a Document not Made Public.) Thông tin Khoa học và Công nghệ (Inform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No 3.

개별적인 연구가 존재하지만, 본 연구의 시기와는 맞지 않는다.

이렇듯, 베트남 학계의 1880년대 중월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웃 중국 학계의 그것에 비해 성과가 매우 미진하다. 호찌민 사회대학에서 나온 “조공책봉 관계로 본 중월관계”¹⁹⁵⁾라는 짧은 논문에서 베트남 학계의 대청외교에 대한 연구적 성향의 편린을 볼 수 있다. 이 글은 송으로부터 독립한 10세기의 딘 왕조와 레 왕조 시절부터, “주권 국가”였으며, “베트남 민족 의식”은 독립 이래로 베트남 역사에서 상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베트남의 민족성”을 베트남 최초의 국가 성립 이전까지 소급적용시키고, “수천 년간 어느 시점에도 중국은 베트남을 번속이라 여기지 않았”으며, 베트남이 스스로가 “독립된 주권 국가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외왕내제를 행했다”고 한다. 하노이 국립 사범 대학의 부학장인 득리엠 역시, 송나라 시대의 조공 관계에 대해 기술하며, 떠이썬과 응우옌 왕조 시절에 베트남이 “방교 邦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며, 중국과의 관계가 종속적이지 않은 관계였다고 주장한다.¹⁹⁶⁾ 그가 인용하고 있는 유일한 베트남 국내 연구가 석사 학위 논문이고, 나머지는 모두 한국 논문(유인선)을 포함한 외국 연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베트남의 응우옌 왕조 후반기의 청월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조야한 민족주의 역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복합적 층위의 담론을 구성하지도 못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194) Nguyễn Duy Chính. Phái đoàn Đại Việt và lễ Bát tuần khánh thọ của Thanh Cao Tông. (Đại Việt Delegation and the 80th Birthday Ceremony of Emperor Qianlong.) TP. Hồ Chí Minh: Văn hóa - Văn nghệ, 2016

195) Quan hệ Đại Việt - Trung Hoa nhìn từ vấn đề ‘sắc phong, triều cống’. <https://hcmussh.edu.vn/news/item/22584>

196) Vũ Đức Liêm, Đừng để “triều cống” đánh lừa: Quan hệ Trung Hoa và Đông Nam Á thời Tống, 2019

이렇게 19세기 천조질서에서 근대국제질서로 이행해가는 과정의 청월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중국, 프랑스, 베트남, 그리고 한국, 영국 및 일본의 학계별로 구분해보았다. 하지만 “국제질서의 전환”이라는 패러다임을 통해 이 시기를 연구한 논문은 거의 모두 중국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낼 수 있었다. 따라서, 주요 당사국들 학계의 연구들을 비교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무릇 토론에서 논의의 비교는 그 단층선을 파악할 수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각국이 서로 다른 층위에서 논의하거나, 서로 다른 증명되지 않은 전제를 바탕으로 논지를 전개한다. 무엇보다 베트남 학계의 중월관계에 관한 연구는 너무 통사적이고, 19세기 말 대청 외교에 관한 연구는 질은 고사하고 양적으로도 충분치 않아서, 그 논의의 지형도를 구축할 수 없다.

3. 역사적 배경

1802년에 새로 설립된 응우옌 왕조와 청의 관계는 동시대 조선과 청의 관계에 비해 다소 소원했다. 이는 조공의 빈도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안남은 태평천국의 난으로 조공 사절단의 통상적인 루트가 끊겨서 1868년까지 조공을 바칠 수 없었고, 이후 1870년, 1872년, 1876년, 1880년, 1883년에 걸쳐서 총 5회 조공 사절단을 보냈다. 이는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안남의 자기인식이다. 안남은 남조南朝를 자처하며, 청과 같은 천조상국을 자처하고 있었고, 비록 청의 사절에는 사대事大의 예를 갖추는데 힘썼지만, 라오스 3국, 캄보디아, 화사火舍국과 수사水舍국¹⁹⁷⁾에 대해서는 황제皇帝를

197) Thủy xá-hỏa xá: 15세기부터 19세기 사이까지 존재했던 중부의 플라이크 고원 지대의 정치체다. 오늘날에도 50만명 남짓되는 Jarai인이라는 소수민족으

내세우는, 전형적인 외왕내제外王內帝의 정책을 구사하고 있었다. 둘째 이유는 중국과 대남의 전쟁에 대한 기억이 아직 생생했다는 것이었다. 1787년에 안남에서는 서산Tây Sơn운동이 발발했고, 폐위된 황제 레찌에우퐁은 중국 광서성으로 망명하였다. 그는 사대자소의 원칙에 호소하며 건륭제에게 반란군인 서산 왕조를 진압할 수 있는 지원을 요청했다. 청은 1788년부터 1789년 사이에 청은 2만명 가량의 군대를 출병했으나, Ngọc Hồi-Đống Đa 전투에서 패배했다. 서산 왕조는 불과 20년 채 지나지 않아, 16세기부터 남부를 장악한 군벌이자 서산 운동에 의해 종식되었던 응우옌朝의 응우옌푹아잉(阮福暎)에 의해 전복당하고 만다.

이후 청의 대남에 대한 미묘한 인식은 1840년 안남의 사절단에 대한 대우에서 드러난다. 청은 원래 대남을 조선, 유구의 반열에 두었으나, 해당 사절단을 조선, 류큐, 시암, 심지어 라오스의 아래로 의전했던 것이다. 대남의 국제적 지위에 대해 민감했던 민망(明命)은 이에 분노하여, “이 일은 청조 예부의 실수다. 고려는 문화가 발달한 나라니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남장南掌은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이고, 섬라暹羅와 유구琉球는 이적의 나라이니, 그렇게 대우할 수 없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너희는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여라. 차라리 처벌받는 것이 낫다”고 한다. 이후 태평천국 운동이 육로를 장악하여 청은 조공을 중단하라는 칙령을 내렸으니, 관계가 개선되지 않았다.

이렇듯 응우옌 왕조에 대한 청의 대우는 레 왕조의 대우보다 훨씬 소원한 것이었다. 청은 안남에게 조공사祖工使만을 보내고 경조사敬

로 구성되어 있었다. 대남의 조공국들 중 가장 작은 나라들이었으며, 이들의 존재는 대남이 스스로를 남조南朝이자 제국이라 칭할 수 있는 정당성의 기반이 되었다.

祖使를 중단해 달라고 흔히 요청했기 때문에 예외적 사절의 횟수가 줄어들었고, 안남 역시 청을 경원하여, 응우옌 왕조의 조공품의 가치는 레 왕조 시절의 그것에 절반에 불과하게 되었다. 마지막 이유는, 단지 안남이 조선보다 북경에서 더 멀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응우옌 왕조가 레 왕조의 수도였던 하노이에서 700km 정도 남쪽에 위치한 후어로 천도하는 바람에 연경까지의 거리가 더 멀어졌었다. 응우옌 왕조의 대청외교는 주로 광서와 광동을 총괄하는 양광총독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로써 청 조정 인사들의 안남에 대한 심리적 거리는 더 멀어졌다. 위 세 요소는 서세동점 시기에 청이 조선보다 안남에 대해 훨씬 더 미온적인 정책을 펼치는 부분적 이유를 제공한다.

대남은 1858년을 시작으로 꾸준히 프랑스의 공격을 받아왔다. 결국 대남은 1862년에 동남부 3성을 할양하고, 1867년에는 서남부 3성을 할양함으로써 프랑스령 코친차이나의 설립을 인가할 수밖에 없었다. 대남 조정은 당시 민란 문제들을 더욱 시급한 문제로 여기고 있었고, 코친차이나의 상실이 불가역적이라고 믿지 않았다. 하지만 1873년에 뒤퓔Dupuis라는 상인이 항해의 자유가 금지되어 있던 홍강을 거슬러 올라가 안남을 위협하던 태평천국의 잔당 황기군과 내통하여, 프랑스 문제가 다시 불거진다. 안남 정부가 뒤퓔을 감금하자, 프랑스스 가르니에 제독이 뒤퓔을 두둔하고 하노이 성채를 공략하던 중 안남 정부와 동맹을 맺은 흑기군에게 피살당했다.

그로 인해 1874년에 프랑스와 안남은 2차 사이공 조약으로도 알려져 있는 갑술화약甲戌和約을 맺었으나, 양국의 조약에 대한 이해는 달랐다. 프랑스는 이 조약을 보호국 조약으로 인식했었으나, 베트남은 단지 가르니에 제독이 사살당한 불미스러운 사건을 끝맺고, 우호적인 관계를 재건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조약 체결 당사자였던 코친차이나의 관료들 또한, 본국의 허락없이 통킹을 공격하였으니 사태

가 확정되어 본국의 추궁을 당할 것을 우려했었다. 게다가 프랑스군은 가르니에 제독이 톡징-중국의 접경 지역인 랑썬에 주둔하고 있던 흑기군에게 피살당한 이후 패주하고 있었으니, 사건이 빨리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따라서, 갑술화약의 내용을 읽어보면, 캄보디아 보호령 조약(1863년)이나, 후일 땃을 바르도 조약(1881년)이나 1차, 2차 후에 조약 (1883, 1884년), 마다가스카르 보호화 조약(1885년)에 비하면, 피보호국에 대한 양보가 매우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갑술화약은 1874년부터 1883년까지 기존에 있었던 상이한 동서東西국제질서 간의 모순을 부각하는 촉매 역할을 하였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베트남의 보호화와 관련된 2조와 3조였다. 프랑스는 베트남을 청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제2조에 “프랑스 대통령은 베트남 왕의 주권과 모든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인정하고, “모든 공격으로부터 안남을 보호, 안남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과 안남 국토 일부를 노략하고 있는 비적/해적들을 파괴하기 위한 지원을 무상으로 약속한다”고 했고, “2조에 대한 보답으로 안남의 국왕은 외교정책을 프랑스의 정책과 같이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모든 세력으로부터 독립”과 “모든 세력으로부터의 보호”가 현대인에게는 상충하는 개념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 “보호령”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지언정 “배타적인 주권의 보장으로서의 보호권”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던 터라, 조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조약의 내용이 안남 측에 많은 부분 양보하고 있는 점을 보아, 속전속결로 조약 체결을 하는 것이 전략적 우위가 보장되지 않은 프랑스에 주요 목표였던 것으로 보인다. 경향이 어찌 되었든, 이때 보호령을 확실히 정의하지 않은 것은 1874년부터 1883년까지 불-월-청 관계를 오염시키는 화근이 된다.

한편, 1880년 이전의 청은 베트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

다. 청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항상 프랑스가 먼저 건의를 했을 때였다. 예컨대, 1875년에 주청 프랑스 공사가 공친왕 이신에게 안남과 맺은 1874년 조약을 통보하고, 청의 입장을 물었을 때, 공친왕은 “안남은 청의 속국이나, 정교금령에서 자주적이니 조약을 맺을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을 뿐이었다. 더욱 구체적으로 청의 정책 기조는 두 갈래로 전개되었다. 첫째는 유영복이 이끄는 흑기군이 전개하던 반프랑스 투쟁을 은밀히 지원하되, 프랑스군과의 직접적인 개입은 피하는 것이었다. 당경송唐景崧은 유영복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¹⁹⁸⁾

적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국경 관리들은 그를 추천했습니다. 유영복의 부하들은 모두 용감하고 전투에 능숙했습니다. 그들에게 관직을 주거나 임시로 칭호를 주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십시오. 사람들을 보내 그곳으로 보내 직접 알리고, 비밀리에 적을 격퇴할 전략을 짜십시오. 또한 그 나라(베트남)의 왕과 대신들을 인도하여 의심을 불식시키고 식량을 제공하십시오. 흑기군은 베트남의 발톱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경의 주요 보루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분쟁을 일으킬 빌미를 만들지 않고, 윈난 지역의 국경 방위를 강화함으로써 프랑스 상인들이 국경을 넘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윈난 및 귀주 총독 잠육영岑毓英은 청과 프랑스 군대가 청월 국경에서 합의해서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외국 세력이 무역을 명분으로 윈난성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¹⁹⁹⁾

198) 敵人慘懾，疆吏薦揚，其部下亦皆剽勇善戰之材。…聞其欲來，誠無路得達；明界以官職，或權給予銜領，自必奮興鼓舞。遣員前往，面為宣示，即與密籌卻敵機宜，並隨行隨事開導該國（越南）君臣，釋其嫌疑，繼以糧餉，以使黑旗軍非獨該國之爪牙，亦即我邊徼之干城。

199) 請旨敕下總理衙門照會轉行駐越南之領事各官，以飭軍於邊界堵剿越南各匪，與法兵不相干涉，勿生嫌疑。至通商一事，前定條約原無雲南地方，雲南亦無通

총리에게 주 월남 영사들에게 각서를 전달하여 프랑스군으로 하여금 국경의 도적들을 진압하게 두고, 프랑스군의 일에 간섭하여 의심을 받지 않게 하도록 지시해 주십시오. 무역과 관련하여, 이전 조약에는 원난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니다. 원난에는 무역할 상품이 없으므로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II. 본론

1. 주프랑스 청 공사 증기택曾紀澤의 항의: 번속의 조약 뺏을 권리?

전술했듯이 청은 줄곧 프랑스에 원론적인 주장만을 되풀이하며, 공식적인 항의는 제기하지 않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청의 대일 정책이 왜 변화하게 되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주요한 추론이 존재한다. 첫째, 1880년 프랑스의 해군장관 조레기베리와 외무장관 생 일레르는 1874년 조약을 이행하지 않는 대남을 응징한다는 명분으로 전쟁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둘째는, 1881년에 증기택을 필두로 러시아에 신장의 대부분을 할양했던 조약을 개정하고 일리 조약을 새롭게 맺으면서, 청은 서양 열강과의 외교 교섭에 일정한 자신감을 획득하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자신감은 단순히 국제법 운용에 대한 숙련도 향상이 아니라, 애초에 이번원을 통해 기미정책을 도입했던 신장 지역을 근대적인 “주권”이 미치는 온전한 영토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확신에 가까웠다. 이와 같은 해석은 양쯔쑹의 논문²⁰⁰⁾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필자는 이 가설이 보다 설

商貨物，應無庸議。

득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1880년 이후 청의 대베트남 정책을 주도한 두 핵심 인물은 증기택과 이홍장이었다. 이들은 모두 청나라에서 드물게 서양 국제법에 정통한 관료들이었다. 증기택은 러시아, 영국, 프랑스 공사를 역임한 외교관으로, 중국 내에서 국제법 전문가로 널리 이름을 떨쳤었다. 증기택으로 대표되는 강경파는 안남이 독자적으로 조약을 체결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직례총독 이홍장은 조선의 사례를 모델로 삼아, 안남에 외부 세력들의 군세로 보존하여 중립화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그러나 이홍장이 추진한 “안남 군세안”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서구 열강들의 거절로 좌절되었고, 애초에 안남의 독립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던 그는 결국 프랑스 영향력 아래로 편입되는 과정을 그대로 방관하게 된다. 한편, 증기택의 속국 개념에 대한 인식은 1880년대 초반과 청월전쟁 이후인 1885년을 기점으로 두드러지게 변화한다. 초기에는 속국을 배타적 영향권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그는, 전쟁 이후에는 속국을 주권 영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게 된다.

증기택은 1880년, 프랑스의 베트남 종속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담은 각서를 프랑스 외무부에 전달했다. 비록 그의 이러한 강경파 노선이 프랑스의 정책 방향을 바꾸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청조 내부에서는 허난성 태수 예문위倪文蔚나 양광총독 장수성張樹聲 등 지방 관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렇다면 월남 문제와 관련하여 증기택이 보낸 일련의 항의 서한들은 어떠한 함의를 갖는가? 증기택은 총리아문에 제출한 각서에서 일곱 가지 주요 쟁점을 제기 하였고, 그중 두 번째 항목에서 그는 베

200) 杨紫翔, 非对称视角下的近代中越相互认识: 以中法越南交涉为中心, The Recent Sino-Vietnamese Mutual Perceptions in the View of Asymmetry --Center on the Sino-French Negotiation Over Vietnam, 2014

트남이 속국이므로 자주적으로 조약을 맺을 수 없다고 천명하였다. 이는 갑술화약만의 법적 무효성을 설파하려고 한 시도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월남의 조약 체결 권한 자체를 차단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다. 증기택은 프랑스와 월남 간에 체결된 1874년의 조약을 논하면서:

외교부가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아 매우 염려된다. 프랑스와 월남 국왕 간에 체결된 조약 2조에선, 프랑스가 베트남 국왕을 독립된 국왕으로 인정하며, 방어를 돕겠다고 약속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베트남은 300년 전 여전히 중국의 일부였다. 이후 베트남은 속국이 되어 스스로 내정을 관리했다.²⁰¹⁾ 프랑스가 베트남과 조약을 체결했지만, 중국의 권리는 여전히 남아 있다. 프랑스는 베트남을 보호하고자 했고, 이는 선의에 의해서였다.

중국은 프랑스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아무런 위험도 없다. 둘째, 월남은 중국에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중국은 월남의 요구가 있어야만 개입할 수 있다. (...) 셋째, 월남과 중국은 넓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월남이 중국이 속국이 아니더라도, 중국은 월남의 국경에 대해서 우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서한에는 파병이나 점령에 대한 언급이 없고, 단지 조약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언급만 있을 뿐이다. (...) 당신네 나라가 월남을 보호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중국을 점령할 생각이라면 내가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는가?

이 서한에서 증기택은 안남이 프랑스의 세력권으로 편입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는 이유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안남은 전통적으로 중국의 판도版圖 내에 위치했을 뿐 아니라, 속국이었다는 점이고,

201) 三百年以前，越南尚隸中國版圖。厥後封爲屬國，自理內政。

둘째, 안남이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프랑스군의 주둔을 방기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프랑스가 월남을 보호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언급하는데, 이것은 증기택이 국제법에 무지해서가 아니라, 당시 보호권이라는 실정법적 제도가 현실 정치에 아직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삼 년 전인 1877년 9월 30일, 이에 대해 주청 프랑스 공사 몽모랑(Montmorand)은 프랑스가 안남과 보호국 조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이 개입하지 않는 것을 의아하게 여기며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첫째, 청이 프랑스를 두려워하고 우호적 관계 유지를 중시하여 굳이 불필요한 충돌을 유발시킬 필요가 없어서 묵인한 것이었고, 둘째, 청이 보호국保護國이라는 국제법적 개념의 함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었다.²⁰²⁾ 당시 청에게 “보호”란 전통적 외교 질서에서도 의미를 갖는 개념이었다. 대국이 소국을 보호한다는 것은 가족관계의 연장선인 국제관계에서 대국에게 부여된 도덕적 책무일 뿐 아니라, 화외지민化外之民의 침입으로부터 중국을 방어하기 위한 실용적 의무이기도 했다. 단, 이러한 보호 행위는 속국 군주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어야 정당화될 수 있었기에, 보호는 외교권을 배타적으로 장악한다는 의미와는 거리가 있었다. 더군다나 갑술화약에는 “보호령”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지 않았고, “전통적인 관계를 변화하지 않”는다고 명기되었으니, 청이 이를 두고 격하게 저항할 이유도 부족했던 셈이다.

증기택은 1880년 초에 프랑스 외무부장관 프레시네(Freycinet) 및 주상트페테르부르크 프랑스 영사 상지Chanzy와의 논의에서는 다소

202)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Documents diplomatiques, Affaires du Tonkin, 1874-décembre 1882, number 25, lettre de Montmorand à Decazes

온건한 입장과 어조를 보였다. 그러나 그의 반발은 점증적으로 강경해져, 후일 생 일레르와 질 페리와 토론 시점에 이르러서는 격정적인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그는 “류큐를 일본에 상실한 사건이 중국의 위상에 타격을 주었다”고 평가하며, 전통적인 천조상국으로서의 관념과 천조질서 체계 속에서 프랑스의 안남 보호국화에 저항했다. 증기택의 이러한 입장은 청 조정에서도 일정한 반향을 일으켰으나, 궁극적으로는 정책 결정권자들 사이에서는 주류의 입장은 아니었다. 이홍장은 비교적 온건파였고, 생 일레르의 서한에 따르면 공친왕은 “증기택의 주장은 청 조정의 입장을 전혀 대변하지 않으니 방념하라”고 까지 프랑스 측에 당부했다고 한다.

증기택은 1880년부터 1885년 사이 프랑스 외무부와 꾸준히 서신을 교환했으며, 총리아문에도 더 강경한 방향으로의 정책 변화를 계속 요구했다. 그는 “속국”을 “보호국”에 개념에 빗대어, 기존 속국 관계가 보호령과 다름없었음에도 중국이 이를 방만하게 운영한 탓에 서구 열강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속국”들을 모두 근대적인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전환하고, 내지화시킬 것을 종용했다. 이는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점차 근대 제국주의적 성격으로 변질된 청의 대조선 정책 기조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 시점부터 청은 전통적 속국 관계에 대해 보호국 개념을 소급 적용하며, 양자의 등치를 시도하기 시작한다. 증기택이 청불전쟁이 끝날 무렵 올린 상주문은 이러한 인식과 입장을 매우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다.²⁰³⁾

203) 窃思西洋各大国，近者专以侵夺中华属国为事，而以非真属国为词。该中国之于属国，不问其国内之政，不问其境外之交，本与西洋各国之待属国迥然不同。西藏与蒙古同乃中国之属地，非属国也。然我之管辖西藏，较之西洋之约束属国者犹为宽焉。西洋于该处亦只称中华属国，而已视内地省份份国为有间。我不于此时总揽大权，明示天下，则将来称属地为属国者，将复称属国为非真属

서구 주요 강대국들은 최근 중국의 속국들을 침략하고 점령하는 데 주력하며, 그들이 진정한 속국이 아니라는 변명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속국의 국내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대외관계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는 서구 국가들이 속국을 대하는 방식과는 매우 다릅니다. 티베트와 몽골은 모두 중국의 속지(屬地)이지 속국(屬國)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티베트 관할권은 서구의 속국을 대하는 방식보다 훨씬 관대합니다. 그리하여 서구는 티베트를 중국의 속국으로만 칭하고, 내륙의 지방들과는 구별하여 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완전한 주권적 권위를 확립하고 이를 세계에 분명히 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저희의 속지를 속국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저희의 속국은 진정한 속국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며, 침략과 점령의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확립하고, 국경을 더욱 명확히 하며, 관세 수입이 풍부해지고, 국방을 영구히 보장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변명을 누리고 위협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당정경唐廷庚-응우옌 반 프엉(Nguyễn Văn Tường阮文祥)의 필담: 대남의 자주적인 군세 추구하고 군세를 위한 자주

직례총독 이홍장은 양광총독을 통해 안남에 당정경을 파견한다. 당정경의 중국상인증기운행회사輪船招商局의 부장副將 직위를 갖고 있었으며 정3품 관직도 겸하고 있었다.²⁰⁴⁾ 증기선회사는 양무운동 이래 청의 조선 사업과 자강 사업을 견인하며, 양광총독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당정경에게 부여된 임무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안남의 실제 상황을 정탐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國，又有侵奪之虞矣。…我之主权既著，边界益明，關樞日饒，屏藩永固，兴利也，而除害之道在焉。

204) 대남식록, 8부 535쪽

황기군과 이양재의 난, 그리고 홍강에 주둔한 프랑스군으로 인해 통킹-광서 접경 지역의 왕래가 불편해진 상황 속에서, 이를 우회해 안남 황제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비밀 창구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 홍장과 종번국의 정승이 서한을 교환했다는 점에서 조선의 이유원과 이홍장이 나뉘던 서한이 연상되지만, 두 사례는 실상에서 약간 차이가 있었다. 이홍장은 이유원을 통해 조선이 서양 각국과 수교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수 차례에 걸쳐 서신을 교환하며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반해, 응우옌 반 프엥과의 교류는 단발성에 그쳤다. 더구나 응우옌 반 프엥은 원래 수신인이 아니었고, 황제와 직접 대화하려는 당정경의 요청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응대한 인물이었다. 대남식록에 따르면, 청 관리가 안남 황제를 조문하러 왔으나, 프랑스 관리가 의심할 것을 우려해 응우옌 반 프엥에게 대신 응대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응우옌 반 프엥은 기밀원機密院 소속의 4인 내각대학사內閣大學士 중 한 명이었고, 프득 황제 사후에 톤땃투엣(존실설尊室說)과 함께 어린 황제를 섭정하는 핵심 인물로 부상할 거물 정치인이었다. 그는 예부에서 당정경에게 연회를 열어 환대하고 선물을 증정하였으며, 밀담 후에는 상아와 코뿔소 뿔을 장수성과 이홍장에게 전달할 선물을 주어 보냈다. 당정경은 이 서한을 양광총독에게 보냈고, 총독은 다시 그 내용을 이홍장에게 보고했다.

이 서한에서 응우옌 반 프엥은 안남이 천조天朝에 조공을 바치는 속국屬國인 것은 만국이 아는 사실임을 강조한다. 그가 청 조정에게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였다. 첫째, 연경에 안남 관리를 상주시켜, 프랑스가 조약을 위반할 경우 총리아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둘째, 당시 여러 나라의 영사들이 광둥성에 거주하고 있듯이, 안남 역시 양광총독의 승인을 받아 영사를 광둥에 파견함으로써

무역과 정보 교환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셋째, 영국, 러시아, 프로이센, 미국, 오스트리아, 일본, 프랑스 등에 안남 유학생을 보내서 전문하게 하고, 국가의 부강을 꾀한다. 청의 선박들이 안남보다 해외로 자주 출항하여 서양 전문에 더 용이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제안들은 일정 부분 이홍장에 의해 수용되었다. 그는 안남 문제의 관할 기관을 예부에서 총리아문으로 이관해서, 더 원활하고 신속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두 번째 제안은 시간의 부족으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홍장은 안남 영사를 광둥에 파견하는 방안을 양광총독과 논의했다. 세 번째 제안에 대해서도, 중국의 함선을 임차해서 서양 각국에 유학생을 파견하는 안전에 반대하지 않았다. 물론, 안남의 보호국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어서, 이홍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남은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정책의 실현 여부와 별개로 중요한 점은, 당시 청과 안남의 외교관들이 조공 관계라는 틀을 고수하면서도 시세의 변화에 저항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태의 중대함과 급박함 때문에 기존 공식 교류 채널을 통한 교류가 불가능해졌음을 바로 인식했고, 새로운 채널을 통해 유연하게 소통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이후 이홍장은 영국, 독일, 미국 공사와 접촉해서, 월남과 통상조약을 맺고 수교할 것을 권유했으나, 이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1881년 12월에 주청 영국 공사 토머스 웨이드는 이미 베트남에서 프랑스가 지배력이 확고하므로 수교는 무의미하다고 답변한다. 1883년 6월에 다시 독일 공사에게 동일한 제안을 시도하지만, 독일은 이홍장에게 동정을 표하면서도 안남과 조약을 맺으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미국 공사인 존 러셀 영 역시, 월남에서 정세가 조금 안정된 이후에 다시 논의해보자며 우회적으로 거절했다. 결국 대남은 태국, 스페인, 코친차이나와만 통상조약을 맺고 공사를 파견했다. 이 가운데 스페인은 사실상 프랑

스의 파트너이자 갑술화약의 공동서명국으로, 공사를 파견할 권리가 화약에 명시되어 있었다. 따라서 스페인은 프랑스의 영향력에 균형을 잡아줄 세력으로 기능하지 못했다. 안남의 군세 전략이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은, 청과 안남의 군세 추구가 너무 늦었다는 점에 있다. 이홍장이 본격적으로 안남과 조약을 맺을만한 국가를 찾기 시작한 시점은 1881년으로, 보호령 조약을 맺기 불과 2년 전이었다. 또한 이홍장의 개인적인 태도에도 문제였다. 그는 조선의 문제에 비해 안남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관조 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태도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은 이홍장이 프랑스의 야욕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한 점이다. 그가 1881년에 남긴 서한을 보자.

베트남은 이미 매우 약해져서 모든 면에서 프랑스에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프랑스가 조약을 체결한 이상, 중국이 그들을 만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사절의 의도를 보면, 베트남을 당장 합병할 의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거리를 두고 언제든지 중재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²⁰⁵⁾

프랑스 외교문서집의 1882년 11월 27일에 부레 공사와 이홍장의 회담에서 이홍장이 구상했던 방안을 재구성해볼 수 있다. 그는 프랑스가 윈난 지방에서 통상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며, 단지 마가리Margary 사태 (중국인이 영국인을 사살했던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고 싶다고 했다. 둘째로는, 안남과 청 사이에 오랜 전통적인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프랑스에게 빼앗기는 모양새가 되면 국내에서 큰 반발이 있을 것을 우려한다고 했다.

205) 越南孱弱已甚，事事求助于法人，既立有约据，恐非中国所能劝阻，然窥法使之意，尚非即思吞并者，似只可不即不离，随时设法调停。

그러면서, 하나의 방안으로, 안남을 공동보호하는 것을 제안한다. 부레는 절대 안남에서의 청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통킹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한다고 한다. 이홍장은 부레에게 보호국과 조공관계의 차이점을 굳이 상세히 논할 필요 없다고 한다. 그는 통킹을 영세중립화하여 홍강 이북 지역을 청이 보호하고, 이남 지역을 프랑스가 보호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런 영세중립화안에서, 이홍장의 대남에 대한 방안을 근대 조약 체제에서 찾았다고 볼 수 있다. 이홍장은 대남이 자주국으로 생존할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이었고, 청과 프랑스 군대의 동시 주둔을 통해 완충 지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다.

3. 팜턴주엣(Phạm Thận Duật范慎通), 응우옌 투엣(Nguyễn Thuật阮述)의 사절단과 이홍장李鴻章: 조약을 상국에 통보할 의무와 3자회담의 좌절

원래 1882년의 사절단은 청나라에서 광둥성까지 내려온 사신이자 장수 당경송唐景崧과 함께 연경에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앙리 리비에르 제독에 의해 하노이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이홍장은 관리 두세 명을 천진에 초청하고, 안남 황제의 국서를 가져오게 하는 방향으로 틀었다.²⁰⁶⁾ 이때 선정된 사절단은 1880년에 청을 견문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사절과 같은 인물로, 중국의 유명한 사와 회동하여 시를 나누어 많은 문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었었다. 1883년의 사절도 예외는 아니라서, 팜턴주엣과 응우옌 투엣은 청의 명문들과 시와 서적을 주고 받았을 뿐 아니라, 소네 순토라曾根俊虎라는 일본 해군 장교와도 접견하여 “동아협동체”를 생성할 필요성을

206) 대남식록 8권 643쪽

논의하기도 한다. 이때 그는 소네 순토라로부터 청월 비공식 교전을 요약한 법월교병기法越交兵記를 한 부 받는데, 풍문으로 와전된 이야기가 많아서 고쳐주었다고 한다.

당시 이홍장은 주청 프랑스 공사인 알베르 부레Albert Bourée와 안남을 둔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전술했다시피, 안남은 청에게 조약의 존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감추고 있었으며, 청은 프랑스와 영국 언론을 통해서 안남의 사정에 대해서 전해 듣고 있었다. 따라서, 이홍장은 협상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 안남의 정보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그는 부레 공사에게 안남 대표와 함께 3자 회담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는데, 프랑스 측에서는 이를 거절한다. 왕지강을 포함한 대부분 중국 학자들은 이를 두고 중국이 자애로운 상국上國이었기 때문에 베트남에게 목소리를 낼 권리를 하사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홍장과 팜턴주엣 사이의 대화는 이홍장이 월남의 조약 맺을 권리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홍장이 팜턴주엣에게 몇 개의 조약을 맺었는지 묻자 주엣은 1862년의 1차 사이공 조약과 1874년 2차 사이공 조약이 전부라고 대답한다. 이홍장은 이에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속국과 타국 간의 조약(예컨대, 조선과 일본 사이의 조약)은 천조天朝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초안은 예부에 바쳐질 것이고, 미국, 영국, 독일과 맺은 조약은 청 조정에 의해 검토될 것이다. 나는 (...) 조약이 호혜적인지 아니면 해로운지를 판별해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안남에게 조약을 맺게 했을 것이다. 대국은 소국을 은덕恩德으로 보살피며 유원柔遠한다. 그러나, 안남은 천조의 동의없이 법국과 조약을 맺었고, 나중에서야 사신을 보내서 통보했다. 이는 번속국藩屬國의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10년이 지났건만, 이제 와서 조약의 사본을 보내서야 무슨 소용이겠는가?

이흥장은 조선이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은 사례를 “모범사례”로 내세우고, 비밀스럽게 조약을 맺은 안남을 꾸짖는다. 이는 “안남이 정교금령政敎禁令에 있어 자주自主하기 때문에, 청이 알 필요가 없다”고 했던 공친왕恭親王 혁흔의 대답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이를 이흥장이 종래부터 갖고 있었던 의견으로 보아야 할까, 아니면 임오군란 이후 청의 대對외변 외교정책의 변화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까. 전통적인 청-안남 관계에 비추어볼 때, 제3국과 조약을 맺을 때 청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무는 없었다. 다만, 안남 문제를 전담하고 있었던 청 외교관들은 변속의 상실이 야기할 조정 내에서의 추궁 때문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다. 안남이 속국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서 자신이 손쓸 방법이 없었다는 주장은, 대안남 외교정책을 담당하고 있었던 청 관리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했던 공통된 수사였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아래 양광총독 장지동의 글을 보자.²⁰⁷⁾

함풍(咸豐), 동치(同治) 이후, 해당 나라(대남)는 여러 차례 내란을 겪었으나, 모두 천조(天朝)의 군대가 진격하여 토벌함으로써 차례로 평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대남을 위기로부터 구제하고 기울어짐을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데도 대남의 국왕은 나라를 다스리고 보존하는 도리를 소홀히 하였

207) 咸丰同治以来，该国数有寇乱，均赖王师进讨，次第削平，扶危定倾之衷，我国家未尝一日忘也。乃该国王昧于制治保邦之义，历年与法人叠次私立盟约，渐撤藩篱，冒境丧师，自贻祸患。前年滇桂出师，本部堂遵旨力筹规越之计，征兵转饷，百道经营，该国并不遣一使备一文来辕陈请商定，并举夹攻之策。迨大兵破敌南矣，克复凉山长庆之际，复不能纠集义旅，协助官军乘机却敌。朝廷不忍生灵久罹锋镝，俯从法人款议，今成局久定，该国自顾归法人保护，近来势愈不振，乃始来文想乞援。览其情词，极为可悯，而事机已失，补救无从，盟约昭然，也能更生他议。

으며, 수년을 거듭하며 프랑스와 잇따라 사적으로 맹약을 체결하고 점차 속국의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대남이 국경을 잃고 군사를 잃은 것은 스스로 화근을 초래하였기 때문입니다. 작년 운남(雲南)과 광서(廣西)에서 군대를 파견할 때, 본부당(本部堂, 청 조정)은 성지(聖旨)를 만들어 월남을 규합할 계책을 꾸렸고, 군대를 모집하고 군량을 운송하며 백 가지 방도를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남은 한 명의 사절도 보내지 않고 한 통의 서한도 보내지 않아 진영(陣營)에 와서 협공의 전략을 함께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대군(大軍)이 남관(南關)에서 적을 격파하고 량산(諒山), 장경(長慶)을 탈환했을 때에도, 다시 의병으로 관군을 도와 적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조정은 백성이 오랫동안 전쟁의 참화에 시달리는 것을 차마 방관하지 못하고 프랑스의 화의(和議) 요청을 윤허하였으니, 이제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대남은 스스로 프랑스의 보호에 귀속하려 하였고, 근래에는 형세가 더욱 쇠퇴하여 비로소 원군을 청하는 긴급한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그 정황과 글로 보니 지극히 가련하나, 나라를 살릴 기회는 이미 잃었고 보완할 길이 없으며, 맹약이 분명하니 다시 다른 의논할 수 없습니다.

이홍장이 팜턴주텃에게 3자 회담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세 가지 가능성을 추정해볼 수 있다. 첫째, 이홍장은 안남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서 3자회담이라는 형식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홍장은 부레 공사와의 협상을 앞두고 있었으나 안남 내부 사정에 대한 파악이 매우 부족했다. 둘째, 프랑스와의 보호조약을 사실상 부정하고, 안남이 여전히 자주적인 외교 주체임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기 위해 안남을 협상 테이블에 참여시키려고 했을 수도 있다. 결국, 3자 회담은 프랑스 측의 거부로 인해 무산되었기 때문에, 이홍

장의 본심을 단정할 수는 없다. 셋째 가능성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홍장의 국제질서에 대한 관념 속에 여전히 가족의 연장선으로서의 상상된 국제관계가 배태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우 안남과 외부자 프랑스를 화해시키려는 형, 또는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자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팜턴주엿은 이후 이홍장과 회담을 장수성에게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변명한다. 조선은 북경과 인접하여 소통하기 편한데, 폐방은 조선과 달리 멀리 떨어져 있어서 조약을 통보하는 것이 관례인 줄 몰랐다. 종래에 우리나라 역시 천조상국의 법률을 지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으니, 고의로 통보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를 통보받은 이홍장은 분개하여 베트남을 놓고 수서양단首鼠兩端이라고 한다. 하지만 안남은 청이 프랑스와의 중재자 역할을 하길 원했고, 전시에는 청이 군함을 파견해 안남을 보호해주기를 희망했다. 팜턴주엿은 텐진에 머물다가 투언안 요새가 쿠르베 제독에 의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개한다. 그와 응우옌 투엿은 더 이상 청에 희망을 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즉시 귀국한다.²⁰⁸⁾ 팜턴주엿은 왕진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분개했다. 청 조정은 아국과 프랑스의 관계를 조정할 것을 약속했다. 청은 우리를 텐진까지 불렀으나, 아직 대화를 시작하지도 않았고, 지원 군함을 보내는 것도 망설이고 있다. (...) 어떻게 청 조정은 자신의 속국을 보호하지도 않으면서 천하에 자랑할 수 있는가?

208)

<https://archivesonline.mh.sinica.edu.tw/detail/243392a7a130eee9f8e056555438ee31/?seq=5>

팜턴주엿이 사용한 수사는 초기에는 상국과 속국 사이의 전통적 관계를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나, 점진적으로 대남이 중국의 안보에 기여하는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는 전통적 수사에 이홍장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감하고, 상국-속국 관계가 포장하고 있던 월청관계의 본질을 폭로한 뒤, 보다 현실주의적 국제관계에 입각한 수사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팜턴주엿은 “대남이 프랑스로 넘어가면 중국도 안전하지 않다”며, 이홍장의 상상력과 안보 의식을 자극하고자 했으나, 결국 청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실패했다. 역설적이게도 팜턴주엿이 소환한 현실주의적 국제관계 논리는 3자 회담이 좌절된 근본 원인이기도 했다. 기존 중국 학계의 해석과 달리, 이홍장을 포함한 청의 관료들은 소국을 보호할 당위나 의무감을 느끼지 않았고, 안남 또한 청의 은덕에 감화된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다. 월청관계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안보와 경제적 이해를 중심으로 한 현실주의적 관계였으며, 번속과 천조상국天朝上國이라는 수사는 이 관계가 무리 없이 존속될 수 있도록 안정성을 부여하는 명분이자 윤활제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3자회담이 성사되지 않은 것은 이홍장이 애초에 3자회담을 추진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청의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 초래되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했고, 임오군란으로 가시화된 일본과의 대립으로 일어날 병력 분산의 위험을 감안해 안남을 이미 전략적으로 포기했던 것이다.

III. 결론

이 연구는 세 개의 사건을 통해 월청관계의 변곡점을 분석해보았다. 1874년 이후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던 청이 1880년대에 이르러 개입주의적 정책으로 선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환은 양광총독과 주청 프랑스 공사를 포함한 실무자들의 주도로 전개되었고, 이홍장을 포함한 주요 정책 결정권자층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이홍장의 정책은 무엇보다도 안남으로 하여금 유럽 열강들과 조약을 체결하게 하여 균세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프랑스의 일방적 침탈을 저지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사실상 개입정책보다는 관조觀照정책에 더 가까웠다. 이홍장은 당정경과 같은 밀정을 통해 후에 황실과 접촉을 꾀했지만, 이미 전쟁을 포기한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다. 그에게 안남은 조선보다 전략적 우선순위가 낮았고, 청의 4대 신축 함대가 완비되지 않은 시점에서 프랑스의 강력한 해군력에 맞서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 속에 평화적 해결을 지향하고 있었다.

반면 응우옌 반 프엉은 당정경과의 회담에서 내적으로는 자강, 외적으로는 균세를 도모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북경 총리아문 인근에 베트남 공사관을 설치하고, 서양 국가들과 교류하여 대남을 중립화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이는 대남이 북쪽 대국이 읽는 판도를 상당히 정확하게 읽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883년 3자회담은 이홍장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프랑스의 원천적 차단 때문에 애초부터 무산될 운명이었다. 이홍장이 군함을 원조를 거절한 사실은 청의 대안남 정책 기조를 명쾌히 보여준다. 결국 그는 1884년 5월 12일에 푸르니에와 접견해서 안남을 사실상 포기하는 리-푸르니에 협정을 체결한다. 협약의 골자는 통킹을 포함한 중국의 남부에 있는 영토를 프랑스

가 보호하고, 톡킹 북부의 국경에는 청군이 주둔한다는 것이었다. 베트남을 국제법상의 보호령으로 만드는 대신 원난성, 광동성을 포함한 청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는다.

본 연구는 증기택, 이홍장 그리고 응우옌반뜨엉의 “외교에 있어서 속국의 자주성”에 대한 인식을 조명했다. 이홍장은 대남이 제3국과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균세를 추구한 반면, 증기택은 대남은 청의 속국이므로 프랑스와 맺은 조약은 원천 무효라는 주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이들을 외교권의 유무有無로 구분하기보다, “전통 조공질서 대 국제법 질서”의 스펙트럼 위에서 보면 양자 모두 현실주의적 국제관으로 수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후기로 갈수록 증기택은 속국 논리가 서양 열강들에 의해 수용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남은 속국(조선)을 서양의 속국 개념(보호국)이나 주권 지역으로 재정의하여 속국이 열강들에 의해 침탈당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실 안보를 고려해 전통 동아시아적 국제 질서를 포기하고 서양 국제적 규범을 수용하겠다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이홍장 역시, 리-푸르니에 협약 당시 대남을 영세중립국화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홍강 이북과 이남을 나누어 공동 보호함으로써 완충지대를 확보하자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는 중국 국경에 프랑스인들이 유입되어 불안정을 야기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홍장을 방문했던 대남 사절단 역시 “속국”임을 자처함으로써 청의 보호를 호소했고, 그 보호가 뜻대로 실현되지 않자 대남이 붕괴하면 청의 안보에 야기될 위협을 강조함으로써 지원을 이끌어내려 했다. 역설적이게도 이들은 “속국”, “천조”와 같은 전통 수사를 자신들의 정책적 이상을 투사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 1880년대의 천조상국 수사는 아무도 믿지 않지만,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한 유용하고도 공공연한 허구, 일종의 “조직된 위선”이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문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3. 『한국과 베트남 사신, 북경에서 만나다: 창화시唱和詩 연구』. 인천: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金玲竹. 2013. 『베트남 漢文 使行文獻에 담긴 中國見聞, 그 특징적 면모』. 서울: 민족문화사.
- 姜贊洙. 2011. “16-19세기 越南漢文燕行文獻에 수록된 朝鮮 使行文學에 대한 고찰.” 『한국동양학』

2. 중문

- 許文堂, 謝奇懿. 2000. 『大南實錄清越關係史料彙編』.台北:台灣中央研究院東南亞區域研究計畫.
- 龔敏. 2011. 『阮述〈往津日記〉引發的學術因緣——以香港大學饒宗頤學術館藏戴密微、饒宗頤往來書信為中心』.香港:香港大學出版社.
- 『越南漢文燕行文獻集成』. 2010. 上海:復旦大學出版社.
- 郭廷以, 王聿均. 1962. 『中法越南交涉檔』.台北: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 彭茜. 2014. 『朝貢關係與文學交流:清代越南來華使臣與廣西研究』.廣州:中山大學出版社.
- 王志強. 2011. 『李鴻章對越南問題的認識與策略研究, 1881-1886』.北京:中華書局.
- 王志強, 權赫秀. 2011. 『從1883年越南遣使來華看中越宗藩關係的終結』.上海:上海古籍出版社.
- 賴淙誠. 2006. 『清越關係研究-以貿易與邊務為探討中心(1644-

1885)』. 台北：國立政治大學（博士論文）.

楊紫翔. 2014. 『非對稱視角下的近代中越相互認識：以中法越南交涉為中心』. 上海：復旦大學出版社.

阮黃燕. 2015. 『1849-1877年間越南燕行錄之研究（博士論文）』. 國立成功大學，台南.

3. 일문

山本 達郎. 1975.

『ベトナム中国関係史―一曲氏の台頭から清仏戦争まで』. 東京：山川出版社.

4. 베트남어

Phạm Đức Thuận. 2024. “Phong trào Dương vụ ở Trung Quốc cuối thế kỷ XIX và Phong trào Đông Du ở Việt Nam đầu thế kỷ XX”. 『Tập chí Khoa học Xã hội Việt Nam』 196: 95-105.

Bửu Cầm. 1966. “Các sứ bộ do triều Nguyễn phái sang nhà Thanh”. 『Sử địa』 2: 46-51.

Lê Thị Hoài Thanh. 2019. “Hoạt động đi sứ và tiếp sứ trong quan hệ ngoại giao Việt Nam - Trung Quốc dưới triều Nguyễn (1802-1885)”. 『Tập chí Khoa học』. Đại học Đà Nẵng, Khoa Lịch sử 14, no. (lề ra số đặc biệt): 45-62.

Nguyễn Thị Thảo, Phạm Văn Thắm, Nguyễn Kim Oanh. 1996. 『Sứ thần Việt Nam』. Hà Nội: Văn hóa Thông tin.

Phạm Hoàng Quân. 2008. 『Lược tả về sách “Vãng sứ Thiên

Tân nhật ký” của Phạm Thận Duật và “Vãng Tân nhật ký” của Nguyễn Thuật』. Tạp chí Nghiên cứu và Phát triển, 6(71)/2008.

Nguyễn Hoàng Yến. 2015. “Tổng quan tình hình nghiên cứu về các tác phẩm đi sứ Trung Quốc của Việt Nam ở nước ngoài”. 『Tạp chí Khoa học』. Đại học Cần Thơ, Phần C: Khoa học Xã hội, Nhân văn và Giáo dục 36 (2015): 64–73.

Hoàng Xuân Hãn. 1967. “Vụ Bắc sứ năm Canh thìn đời Cảnh Hưng với Lê Quý Đôn và bài trình bằng văn Nôm”. 『Sử địa』 6: 3–5.

Phạm Tuấn Khánh. 1995. “Chuyến đi sứ của Đặng Huy Trứ và một tư liệu chưa được công bố”. 『Thông tin Khoa học và Công nghệ』 3.

Nguyễn Duy Chính. 2016. 『Phái đoàn Đại Việt và lễ Bát tuần khánh thọ của Thanh Cao Tông』. TP. Hồ Chí Minh: Văn hóa – Văn nghệ.

Vũ Đức Liêm. 2019. 『Đừng để “triều cống” đánh lừa: Quan hệ Trung Hoa và Đông Nam Á thời Tống.』

Trần, Đức Anh. 2024. “Role of the Vietnamese Diplomatic Envoys in Trade between Vietnam and China during the 18–19 Centuries.” 『Tạp chí Khoa học Đại học Đông Á』 3(4).

5. 영문

Tsang, Gabriel F. Y., and Hoang Yen Nguyen. 2020. “The Vietnamese Confucian Diplomatic Tradition and the Last

- Nguyễn Precolonial Envoys' Textual Communication with Li Hongzhang." *Asian Studies* 8, no. 2: 213–232.
- Kelley, Liam. 2005. *Beyond The Bronze Pillars: Envoy Poetry And The Sino–Vietnamese Relationship*.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Woodside, Alexander Barton. 1988. *Vietnam and the Chinese Model: A Comparative Study of Nguyen and Ch'ing Civil Government in the First Half of the Nineteenth Centu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 Taylor, Keith Weller. 1983. *The Birth of Vietna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6. 불문

- Nguyen, The Anh. 1992. *Monarchie et fait colonial au Viet-nam. (1875–1925) Le crépuscule d'un ordre traditionnel*. Paris: Harmattan.
- Tsuboi, Yoshiharu. 1987. *L'empire Vietnamien face à la France et à la Chine*. Paris: Harmattan.
- Truong, Philippe. 1998. *Les ambassades en Chine sous la dynastie des Nguyễn (1804 – 1924) et les bleu de Hué*. Paris.
- Joyaux, François. 2022. *Nouvelle histoire de l'Indochine française*. Paris: Perrin.
- Pène-Siefert, Jocelyn. 1885. *La Question Tonkinoise avant et après le traité avec la Chine*. Paris: A. Lemerre.

- Thiersant, Philibert Dabry de. 1885. La solution de la question du Tonkin, au point de vue des intérêts français. Paris: L. Cerf/A. Challamel.
- Martellière, Olivier. 1886. La Question du Tonkin. Paris: E. Dentu, Libraire-Éditeur.
- Guillon, Édouard Louis Maxime. 1885. Le conflit franco-chinois (La guerre et les traités), d'après les documents officiels. Grenoble: Librairie Maisonville / A. Gratier.
- Billot, Albert. 1888. L'Affaire du Tonkin: Histoire diplomatique de l'établissement de notre protectorat sur l'Annam et de notre conflit avec la Chine 1882-1885 par un diplomate. Paris: J. Hetzel & Cie.
- Devéria, Gabriel. 1880. Histoire des relations de la Chine avec l'Annam-Viêtname du XVI^e au XIX^e siècle. Paris: E. Leroux.

전쟁과 비(非)전쟁 상황에서 중국의 복합 대만전략 공산당역사박물관

신흥중

서울대학교

I. 들어가며

중국에게 가져다주는 대만의 전략적 가치와 정치적 의미, 그리고 최근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사령부 예하 육·해군 상륙부대들의 전력이 급격히 강화되고 있는 모습은 중국의 대(對) 대만전략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촉발시켰다. 이를 반영하듯, 그간 중국의 대만 전략은 주로 ‘미-중 해양 패권 경쟁’이라는 대(大)주제 속에서, 또는 주로 구조적(structural) 접근 방식으로서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 속에서 대만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의 초크-포인트(choke-point)의 하나이자 미-중 패권경쟁이 전쟁으로 치달느냐 아니냐의 논쟁에서 중심에 위치해있다. 즉, 대만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규칙기반 자유주의 국제질서(Rules-based Liberal International Order)’을 향한 중국의 현상변경적(revisionist) 도전의 첫 걸음이거나, 또는 현실주의(Realism)’라는 이론의 틀 안에서 국가들의 세력균형 전략의 변수들 중 하나로 인식되어온 것이다.²⁰⁹⁾

또한, ‘대만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는 연구도 활발하다. 인도-태평양으로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중국에게 군사적으로 많은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근거다. 가령, MIT 정치학과의 Catlin Talmadge(2022)는 중국이 대만을 차지하고 나면 동·남중국해에서 미국의 패권(내지는 통제력, control)은 크게 위협받을 것이며, 반대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만을 차지하고 난 후 정숙성이 높은 핵추진잠수함이 활동하기에 적절한 해역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중국이 대만을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대만은 미-중의 해상교통로(Sea Lanes of Communications)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변수라는 것이다.²¹⁰⁾ 하지만 Talmadge가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근거로 든 잠수함 활

209) 최근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는 연구로는 국내외 주요 해양전략가들의 다음과 같은 관점이 있다: Yan Xuetong (2019), *Leadership and the Rise of Great Powers*, (NY: Princeton University Pres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23), *Preventive Priorities Survey*; Niall Ferguson (2021. 3.21.), “A Taiwan Crisis May Mark the End of the American Empire,” *Bloomberg Opinion* 21; Michael Beckley and Hal Brands (2022) *Danger Zone: The Coming Conflict with China*, (W. W. Norton & Company); (반길주 (2020), “동아시아 공세적 해양주의: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과 동북아 4강의 해양전략,” 「전략연구」 27(2); 임경한 (2025), “신냉전과 미중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경쟁,” 「국제·지역연구」 34(1)

210) ‘대만의 전략적 가치’라는 관점을 시작으로 대만을 장악한 후 미-중 군사력 균형에 대한 연구로 Brenden Rittenhouse Green and Caitlin Talmadge (2022), “Then What? Assessing the Military Implications of Chinese Control of Taiwan,” *International Security* 47(1)가 있다; 그 외 중국의 해양 및 해군전략에 대한 국외의 주요 연구로는 다음 참고 : Stephen Biddle and Ivan Oelrich (2016), “Future Warfare in the Western Pacific: Chinese Antiaccess/Area Denial, U.S. Air Sea Battle, and Command of the Commons in East Asia,” *International Security* 41(1); Eric Heginbotham et. al, “The U.S.-China Military Scorecard: Forces, Geography, and the Evolving Balance of Power, 1996-2017” (Santa Monica, Calif.: RAND, 2015); Michael Beckley (2017), “The Emerging Military Balance in East Asia: How China’s Neighbors Can Check Chinese Naval Expansion,” *International Security* 42(2)

동 공간 확보와 해상교통로 통제권 강화라는 연결고리는 성립할 수 없다. 수중공간은 레이더가 방사하는 전자기파에게 적절한 매질이 아니며, 소나(SONAR)를 활용한 음파가 주로 사용되는 공간이다. 한편, 음파는 전자기파에 비해 통달거리가 턱없이 짧고, 잠수함은 그 특성상 노출을 최소화하는 ‘은밀작전’을 주로 수행하기 때문에 수상에서 항해하는 상선과 군함의 표적처리에 제약이 있다.

앞서 서술한 연구의 흐름이 외생적 차원에서의 대만문제 해석법이라고 한다면, 내생적 차원의 접근으로 바라본 중국의 대만 전략에 대한 연구는 *If China Attacks* (2006)에 집대성되어 있다.²¹¹⁾ Steve Tsang은 대만이 지속적으로 중국의 ‘레드라인(red-line)’ 경계를 밟고 있거나 이를 넘어설 경우 ‘민족주의(nationalism)’이 촉발요인이 될 수 있으며, 옌쉐통(Yan Xuetong)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국가 해체 방지(pre-empting national disintegration)’의 목적으로 무력 사용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Maochun Yu는 중국이 전통적으로 전쟁을 외교의 수단으로 삼아온 민족적 특성, 즉 ‘문화적 현실주의(Cultural Realism)’를 바탕으로 대만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확장했다.²¹²⁾

중국이 바라보는 대만을 유교적 질서의 관점으로 분석한 연구도 있다. 구진영(2023)에 따르면 대만은 내·외부로 구분된 ‘중화(中和)질서의 영향권(중화권)’에 위치한 존재이다. 중국은 질서를 어지럽히는 대상에 대해 화이론의 개념으로 다스리고자 하는데, 즉 ‘내부 질서’의 경우 군사력으로, ‘외부 질서’의 경우 회유와 절연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질서를 유지한

211) *If China Attacks Taiwan : Military Strategy, Politics and Economics*, edited by Steve Tsang (2006), Taylor & Francis Group

212) Steve Tsang, *If China Attacks Taiwan*, pp.22-38.; Maochun Yu, *Ibid*, pp.40-42.; Yan Xuetong (2004) “Origins of the Policy to ‘Pay any Price to Contain Taiwan’s Independence’,” *China Strategy* vol.3

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대만은 중화권의 내부 질서에 속해 있으므로 중국은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대만을 다스려야 한다. 대만의 경우, 중화의 권역 안에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할 시 중국은 이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미국이 대만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한, 미중갈등의 최전선은 대만이 될 수밖에 없다.²¹³⁾

그러는 한편, 현장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설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2023년, CIA 국장 윌리엄 번스(William Burns)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인민해방군(이하 중국군)에 2027년을 목표로 대만 침공을 개시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쳐놓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언급했다.²¹⁴⁾ 이어서 2024년에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관 사무엘 파파로(Samuel Paparo)는 중국이 2027년에 대만을 침공할 것이며, 미래의 군사작전을 위한 리허설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²¹⁵⁾ 더 나아가, 중국의 대만침공을 절대불변의 상수로 두고 미국의 직간접적 군사개입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지에 관해 전쟁 시뮬레이션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²¹⁶⁾

그렇다면 중국의 대만전략은 오로지 한 가지 목표, 즉 군사적 수단만을 동원하는 전면적 침공을 전제하고 있는 것인가? 본 논문은 위의 연구질문에 대한 주장인 한편, 기존의 학술 및 정책 연구들과 미

213) 구진영 (2023), “미중갈등의 최전선은 왜 대만인가?” 「국가안보와 전략」 pp.145-147.

214) Taipei Times (2023. 2. 4.), “CIA head warns against underestimating X i ,”
https://www.taipetimes.com/News/taiwan/archives/2023/02/04/2003793705?utm_source

215) Jennifer Hlad (2025. 2.13.) “China is rehearsing for war, Indo-Pacific commander says,” *Defense One*
https://www.defenseone.com/threats/2025/02/china-rehearsing-war-indo-pacific-commander-says/403011/?utm_source

216) 대표적으로 CSIS의 2023년 보고서, *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 Wargaming a Chinese Invasion of Taiwan* (2023, January)가 있다.

국을 비롯한 각종 정보기관들의 보고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바였던 ‘중국의 대만 침공설’ 만이 중국의 전략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오히려 중국은 양안관계의 복잡성에 걸맞게 국면별로 취해야 할 전략을 구분하여 실천에 옮기고 있다.

연구를 진행한 결과, 필자는 중국의 대만전략이 비전쟁과 전쟁의 차원 모두에서 수립 및 실천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략의 ‘복합성’에 초점을 맞추고 분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다음의 장들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비전쟁전략은 비군사적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회색지대작전’으로, 전쟁전략은 전력 건설을 통한 ‘상륙작전’ 대비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의 순서로 필자의 주장을 전개한다. 먼저, II장에서는 대만문제와 전략에 대한 중국의 관점을 명확히 짚고 넘어갈 것이다. III장과 VI장은 각각 중국의 대(對) 대만 회색지대작전과 군사작전 시나리오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중국의 ‘대만전략’이 복합성과 동시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본 논문의 결론을 제시한다.

II. 연구의 틀

1. 중국 관점에서의 대만 : 양안관계의 ‘내치문제화’

시진핑은 2021년, 19기 6중전회를 통해 <신시대 대만문제 해결에 관한 당의 총체방략>²¹⁷⁾를 채택하여 대만을 향한 중국의 관점을 명확히 선포했다. 그 골자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향한 ‘신시대’

217) 중국어 : 新時代黨解決臺灣問題的總體方略

에는 대만문제 해결이 필수 과제라는 것이기에 정치·외교·경제·군사·심리전·법률전을 총동원한 접근으로 양안관계를 모색해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는 한편, 2023년까지는 ‘조국 평화통일 프로세스’²¹⁸⁾의 문구로 불리던 중국의 대만통일 전략이 2024년에 들어서 ‘조국통일대업’으로 바뀌었다. 즉, ‘평화’의 문구가 삭제되었다.²¹⁹⁾

그렇다면 대만을 향한 중국의 장악력 강화 움직임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중국에게 ‘안전(韓의 안보 개념)’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이 안전 문제에 있어서 대만이 사활적 이익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안전은 주로 ‘국가안전’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는 시진핑 집권 초기에 해당하는 2014년 중앙 군사안전위원회(1차)에서 ‘총체적 국가안전관’²²⁰⁾으로 제시된 개념이다. 이어서, 2024년의 20기 3중전회 <결정>에서도 ‘국가안전’의 분야가 따로 논의되는 만큼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게 안전은 점점 강조되고 있는 분야이다. 이에 대해 조영남 (2024, 2025)은 ‘국가안전’에서도 공산당 영도와 사회주의 제도를 지칭하는 ‘정치안전’ 분야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²²¹⁾

218) 중국어 : 祖國和平統一進程

219) 한국국방연구원 (2025), 「국방정책 환경 전망과 과제」, p.54; Yew Lun Tian and Laurie Chen (2024, March 5), “China drops ‘peaceful reunification’ reference to Taiwan,” *Reuters*, <https://www.reuters.com/world/china/china-drops-peaceful-reunification-reference-taiwan-raises-defence-spending-by-2024-03-05/>

220) ‘안전’의 범위 : 정치·국토·군사·경제·문화·사회·과학기술·사이버·환경·자원·핵·해외이익·우주·심해·극지·생물 안전 포함

221) 조영남 (2025), “2024년 중국 정치의 현황과 전망: 중국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를 중심으로,” 「2024 중국정세보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조영남 (2024), “Much Ado About Nothing? An Analysis of the CCP’s Third Plenary Session of the 20th Central Committee,”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36(4)

또한 대만은 역사적으로 홍콩·마카오와 함께 과거로부터 내지(inner China) 또는 본토(China proper)로 인식되어온 영토이다. 테일러 프레블(T. Fravel)은 이에 중국의 대만·홍콩·마카오 통제 공고화를 ‘본토에서의 영토분쟁’의 측면에서 바라본다. 실제로 중국의 쑨원 등 중국의 주요 지도자들은 ‘본토’에 해당하는 영토들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을 회복해야만 “중화민족의 통일”이라는 근대의 과제를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²²²⁾ 그 중에서도 대만은 <표1>에서와 같이 물리적(면적)으로도, 중요도에서도 중국의 국가이익에 핵심으로 여겨진다. 제1차(1954-1955)·제2차(1958)·제3차(1995-1996) 대만해협 위기 등 무력 사용에 있어서 현재까지도 정규 군사력을 활용하여 장악력을 공고히 하고자 한 유일한 본토이다.

222) 테일러 프레블(Taylor Fravel) (2008), 「중국의 영토분쟁 (원어 : Strong Borders, Secure Nation)」 (서울: 김앤김복스), pp.89~92.

〈표1〉 중국의 본토지역 분쟁별 비교 (1949 - 2005)

분쟁 지역	면적 (km ²)	중요도 지수 (salience score)	협정	타협도	무력사용 여부
홍콩	1,092	11	1984 (공동선언)	-	- 223)
마카오	28	11	1984 (공동선언)	-	-
대만	35,980	12	-	-	Y

* 출처 : 테일러 프렐블(Taylor Fravel) (2008), 「중국의 영토분쟁 (원어 : Strong Borders, Secure Nation)」 (서울: 김앤김복스), p.85

대만과 안전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중국의 최상위 가치로 여겨질 예정이며, 공산당의 전면 영도 하에 장악력 강화 움직임이 지속되거나 고조될 전망이다. 이는 ‘안전’ 정책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전면 영도 방침이 공식적으로 공산당 내부에서 논의된 점을 통해 단서를 얻을 수 있다. 그동안 ‘공산당 전면 영도 원칙’은 마오쩌둥 시기의 주된 레토릭이었으나, 덩샤오핑이 집권 이후 12차 당대회(1982)년 〈당장〉에서 삭제된 바 있다. 하지만, 시진핑은 ‘정치개혁’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19기 3중전회(2018)를 개최했고, 덩샤오핑·

223) 2005년까지는 홍콩에 대해서 장악력/통제력을 공고화하기 위한 무력은 사용되지 않았지만, 2019년에는 홍콩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범죄인 인도법 개정’ 반대시위를 무력 진압했으며, 2020년 시진핑은 홍콩에 대해 국가보안법(National Security Law)을 적용하여 공산당의 통제력을 공고화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참조 : 영국정부 홈페이지 (Gov.UK) “Country policy and information note: Hong Kong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 China, April 2025” (updated 2025. 6.27.),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hina-country-policy-and-information-notes/country-policy-and-information-note-hong-kong-national-security-legislation-china-april-2025>

장쩌민·후진타오가 모두 <당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공산당 전면 영도를 다시 꺼내들었다.

본 논문에서 지칭하는 본토(대만·홍콩·마카오)에 대한 장악력 강화 움직임은 20기(2023년) 2중전회에서 드러난다. 공산당 중앙에 홍콩·마카오판공실을 설치하는 등, ‘영토안전’에 있어서의 핵심이익을 지키기 위한 ‘공산당 전면 영도’를 제도화한 것이다.²²⁴⁾ 또한,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며 ‘영토안전’에 대한 공산당 영도에서 중앙군사위원회의 기여도는 연속성 있게 강화되고 있다. 이는 20기(2024년) 3중전회가 공산당 18기(2013년) 3중전회와 19기(2018년) 3중전회를 계승한 점에서 드러난다. 18기(2013)와 20기(2024) 두 차례의 3중 전회에서는 공산당 역사상 유이하게 국방과 군대의 개혁을 논의하는 <국방>분야의 회의를 중앙군사위원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논의한 점, 그리고 정치개혁의 측면에서 19기(2018년) 3중전회의 내용이 이어져온 것이다.²²⁵⁾

2. 중국 관점에서의 전략 : 전쟁-비전쟁의 구분과 전략의 복합·동시성

중국에게 전략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중국은 2020년 발간한 「군사전략학(Science of Military Strategy)」을 통해 전략기획(strategic planning)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략기획이란 전략적 의사결정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하고 배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기획은 ①군사력 건설(development plan for military

224) “深化黨和國家機構改革方案”, 『人民網』, www.people.com.cn: “黨和國家機構改革方案”, 『人民網』, www.people.com.cn: “조영남 (2025), 중국정세보고 pp.36-43.”에서 재인용

225) 주목할 만한 연속성은 <국방>분야가 유이하게 18기(2013)와 20기(2024) 두 차례의 3중 전회에서만 논의되었으며, 이 분야는 중앙군사위원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국방·군대 개혁 심화이다.

power building), ②전쟁·비전쟁 계획(war and non-war plan), ③ 전략적 자원 분배 관리(strategic resource allocation control), ④부서간·분야간 협력(cross-departmental and cross-field coordination), 그리고 ⑤국방·경제건설(national defense and economic construction)으로 구성된다.²²⁶⁾ 특히 「군사전략학」에서 주목할 부분은 비전쟁계획을 “군사력을 동원하여 비전쟁 상황에서의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동계획과 범위”로 정의함으로써 전쟁과 비전쟁계획을 구분지은 점이다. 이를 통해 짚고 넘어갈 점은 중국의 군사전략을 연구함에 있어 국가역량을 동원한 군사력 건설이 오로지 전쟁의 수단으로서 활용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의 절에서 짚고 넘어갔듯, 중국은 대만을 국가안전·정치안전의 핵심으로 여긴다. 또한, 중국은 대만에 대한 전쟁전략과 비전쟁전략을 구분하여 복합적으로 수립·이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미국의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 CSIS와 RAND가 발간한 보고서들을 통해 중국의 대만전략이 복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전쟁 전략’을 분석한 CSIS는 2023년 진행한 위게임을 통해 중국의 대만 점령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기본 시나리오(base scenario)는 중국의 대만 점령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미 미국·대만·일본 연합군이 중국의 상륙전력을 파괴함으로써 중국의 군사력을 마비시키는 결과였다. 낙관적 시나리오(optimistic scenarios)는 더욱 신속한 미국·대만·일본의 승리였고, 비관적 시나리오(pessimistic scenarios)는 중국이 군 항구와 공항을 점령에 부분적으로 성공하나, 이후 통제력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미국·대만·일본의 반격을 받고 결국은 무력화되는 것이었다. 하지

226) CASI (China Aerospace Studies Institute) (2022), *Science of Military Strategy 2020*, Air University, pp.66-68.

만 대만 고립 시나리오(Taiwan stands alone scenario)에서는 중국이 압도적 승리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결국 CSIS는 대만의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한다.²²⁷⁾

중국의 ‘비전쟁전략’을 분석한 RAND는 2024년의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각종 해역에서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평화와 전쟁 사이의 작전 공간(operational space between peace and war)”에서 회색지대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와 방공식별구역(ADIZs)에서 중국은 해/공군 전력뿐만 아니라 해경(Chinese Coast Guard)과 해상민병대(People’s Armed Forces Maritime Militia)도 활용하는 등 군사적·비군사적 수단을 혼합한 시위나 현시를 하는 등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회색지대작전은 대만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와 센카쿠 열도에서 특히 강도 높게 이뤄지고 있다.²²⁸⁾

3. 본 연구의 목표 : ‘중국의 관점’과 ‘국가 중심의 접근법’으로의 분석

앞의 두 개 절을 통해 검토한 바, 중국적 관점에서의 대만전략은 서문에서 검토했던 선행연구들과 그 연구들에서 활용된 접근으로 분석하기에 제한된다. 따라서 중국적 관점에서 대만전략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 이에 테일러 프래블(Taylor Fravel)(2008)의 연구, 「Strong

227) Mark F. Cancian, Matthew Cancian, Eric Heginbotham (2023) “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 CSIS International Security Program (January, 2023)

228) Todd C. Helmus, Krista Romita Grocholski, Tyler Liggett, Ashley L. Rhoades, Scott Savitz, Keytin Palmer (2024), “Understanding and Countering China’s Maritime Gray Zone Operations,” RAND Research Report (May, 2024)

Borders, Secure Nation (한국어 : 중국의 영토분쟁)」을 통해 중국이 주변국과 본토(대만·마카오·홍콩)에 취한 영토분쟁 해결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때 프레블은 ‘국가 중심 접근법(state-centric approach)’으로 본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러한 연구의 틀로서 중국의 전략을 살펴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지역의 통제권을 놓고 국가 간 분쟁이 이뤄지는 영토분쟁은 그 자체로 국가 주권이라는 핵심 이익과 결부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국가는 국제와 국내 정치 무대에서 모두 활동하는 행위자로서 국가 내부의 역학관계와 국익 추구 움직임은 결국 국가 외부로 드러난다. 셋째, 국가가 취하는 행동으로 얻게 될 국내정치적·국제정치적 이익을 모두 고려함으로써 한 국가의 국력이 국제사회에서 미치는 영향력을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²²⁹⁾

그렇다면 국가는 언제 어떻게 자신의 힘을 활용하는가? 프레블은 국가 중심 접근법으로 중국의 전략을 분석했을 때 중국은 자신들이 늘 유지해오거나 장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영토에서 장악력(claim strength)²³⁰⁾에 위협이 가해질 경우 ‘갈등고조전략(escalation strategy)’을 취한다고 주장한다. 특정 지역 또는 영토에 대한 한 국가의 장악력은 작게는 민족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에서 크게는 국력의 주요한 척도의 하나이다. 그리고 한 국가는 갈등고조전략으로서 주로 군사적·정치적 조치²³¹⁾를 취함으로써 장

229) 테일러 프레블(Taylor Fravel) (2008), 「중국의 영토분쟁 (원어 : Strong Borders, Secure Nation)」 (서울: 김앤김복스), pp.40-43.

230) 여기서 장악력이란 ①분쟁 공간에서 한 국가가 차지하는 영역의 범위와 ②통제력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더라도 분쟁 지역 전체에 자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과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프레블은 장악력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경우 국가는 무력 사용을 고려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자세한 사항은 「중국의 영토분쟁 (원어 : Strong Borders, Secure Nation)」 pp.36-110 참고.

231) ‘군사적 조치’로는 분쟁지역에서의 병력 배치 증강, 경계선 일대 진지 강화,

악력을 회복 및 협상력을 제고한다. 이상 앞서 살펴본 접근법에 따르면 중국이 군사적·비군사적 수단을 동원하여 대만 인근 지·공·해역을 포위하거나 의도적으로 횡단하는 행위들은 대만에 대한 장악력을 제고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 중심 접근법, 또는 본 논문에 한정한다면 ‘중국 관점에서의 접근법’으로 대만문제를 다시 바라본다면 중국이 취하고 있는 대만전략의 복잡성을 이해하기에 정합성이 더 높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의 관점에서 대만이 내치문제임과 동시에 본토 분쟁에 해당하며, 중국이 목표로 하는 것은 대만에 대한 장악력을 공고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정한다. 그리고 앞의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대만에 대해 전쟁과 비전쟁 시나리오를 구분하고 모든 시나리오에서 결국 대만에 대한 장악력을 공고화기 위해 군사적·비군사적 수단을 모두 동원한다는 점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Ⅲ. 비전쟁 상황에서의 중국의 대만전략 : 회색지대작전

1. 회색지대작전의 개념

2022년 8월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N. Pelosi)의 대만 방문 이후와 2024년 대만 라이칭더 총통의 국정 연설 이후, 중국은 모두 그 직후 대만 포위 훈련을 감행했다. 미국과 대만에 보내는 경고 조치였

인근 병력 전투태세 강화, 그리고 분쟁 당사국의 전투역량 개발이 있다. ‘정치적 조치’에는 분쟁 지역을 자국에 편입하겠다는 행정적 선포 또는 실력행사, 도로건설 등 분쟁지역 통제를 위한 인프라 구축, 그리고 권리 행사를 강화하기 위한 선거(투표) 실시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국의 영토분쟁 (원어 : Strong Borders, Secure Nation)」 pp.63-64 참고.

다. 펠로시 방문 직후인 2022년, 중국은 동부전구사령부 주요 전력들을 동원하여 대만을 둘러싼 6개 해역에서 실사격을 포함한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며 ‘제4차 대만해협위기’로 불릴 정도로까지 상황이 고조되었다.²³²⁾ 특히, 중국은 대만의 핵심 방어구역인 동북방 구역을 넘어 동남방 4개 해역에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중국의 ‘대만 방어선’ 돌파 능력을 과시했다.²³³⁾ 2024년 라이칭더 총통의 연설 이후 실시한 ‘Joint Sword 2024B’는 훈련 지속시간이 13시간에 그쳤지만, 단일(하루) 기준 최대로 많은(26척) 해상전력을 집결했다. 또한, 대만이 내치의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듯, 중국은 해경 전력 13척을 동원하여 대만과 부속 섬들뿐만 아니라 센카쿠/다오위다오 열도 주위에서 경비 항해를 실시했다.²³⁴⁾

이러한 중국의 대만 포위 및 강압 작전/훈련은 새로운 움직임이 아니다. 1949년의 국공내전 종식 이후에도 1차(1954-1955년), 2차(1958년), 그리고 3차(1995-1996년) ‘대만해협위기’에서 중국은 대만에 대한 자신들의 장악력이 위협받는다 고 느끼는 시점마다 고강도의 군사적 시위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군사적 행동을 전후로 하여 오히려 중국은 미국의 적극적 개입을 초래하거나 1차 대만해협위기를 앞두고 체결된 대만과 미국의 상호방위조약을 공고해지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3차 대만해협위기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대규모 직접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특히, 2016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지속적으로 고조되는 군사충돌의 위

232) Christopher Twomey (2022. 8.22.), “The Fourth Taiwan Strait Crisis is Just Starting,” *War on the Rocks*

233) Derek Grossman (2025),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Gray Zone Tactics Against Taiwan,” *Global Taiwan Institute*, pp.2-3.

234) “Analyzing China’s Escalation After Taiwan President William Lai’s National Day Speech,” *China Power*, CSIS, (October 2024).

협은 아래의 <그림1>과 같이 미국의 ‘자유의 항행 작전(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이 빈번해지며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림1>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미국의 ‘자유의 항행 작전’ 증가 추이²³⁵⁾



* 출처 : Todd C. Helmus, Krista Romita Grocholski, Tyler Liggett, Ashley L. Rhoades, Scott Savitz, Keytin Palmer (2024), “Understanding and Countering China’s Maritime Gray Zone Operations,” RAND Research Report, p.43

따라서 중국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전략과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대만에 대한 장악력과 근해의 해상통제권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대만 문제를 비롯해서 중국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여러 공간과 대상에 대해서 중국은 전쟁이라는 정치적 수단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적극적이나, 그럼에도 무력 충돌보다는 강도가 낮은 작전을 수행하고 있

235) 미국의 ‘자유의 항행 작전’ 수행에 관한 자세한 현황은 다음의 미국 국회 보고서 참고 : Ronald O'Rourke (2025),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 South and East China Seas: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충성 없는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²³⁶⁾ 다른 말로 ‘회색지대(Gray Zone) 작전’으로 불리고 있다.

회색지대란 전쟁과 평화의 이중성 사이에 있는 경쟁적 상호작용이다. 또한, 평시의 경쟁보다는 직접적이나 군사적 충돌은 수반하지 않는다. RAND 연구소의 마이클 마자르(M. Mazarr)는 회색지대 작전을 평화와 전쟁 사이에서 교묘한 작전이라고 정의했다. 즉, 갈등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거나 국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이다.²³⁷⁾ 김정민(2024)은 마자르의 연구 이후 국내외에서 본격화된 회색지대작전에 관한 연구를 종합한 바, 회색지대에서의 군사전략은 비대칭성·점진주의·모호성의 특징을 주로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래의 <표1>은 회색지대전략의 주요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236) Andrew S. Erickson and Ryan D. Martinson (2019), *China's Maritime Gray Zone Operations*,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번역본 : 중국의 해양 그레이존 작전, 서울 : 박영사) pp.1-2.

237) Morris, L. J. et al. (2019). *Gaining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Gray Zone: Response Options for Coercive Aggression Below the Threshold of Major War*. RAND.

〈표2〉 회색지대전략의 특징²³⁸⁾

구분	세부내용
비대칭성	- 이익의 비대칭성 : 행위자들이 얻고자 하는 이익 상이 - 능력의 비대칭성 : 군사적·비군사적 수단을 함께 활용하며 대응을 위해 대칭적인 수단 활용이 제한
점진주의	- 기간의 점진주의 : 충분한 시간을 바탕으로 국가의 통합역량 활용 - 수단의 점진주의 : 대응이 정당화될 수 있는 한계 이하 분쟁 수준 유지
모호성	- 예측의 모호성 : 의도·수단·시점·장소·주체·방법 판단 제한 - 평가의 모호성 : 분쟁수준·국제법 위반여부 등 판단 제한

* 출처 : 김정민 (2024), “중국 회색지대전략의 기원과 적용,” 「국방정책연구」 40(3), p.14.

전략적으로 중국은 회색지대에서 ‘국가의 부흥’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분투한다. RAND(2024)는 중국의 회색지대작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①영토분쟁 구역에서의 경제적 자원 보호, ②해당 구역 경쟁자들의 능력 저지, ③영토 분쟁 구역에서의 통제력 강화, ④중국 본토에 대한 공격 방어, ⑤미래의 전투를 위한 전투공간 예비(확보)라고 분석했다.²³⁹⁾ 또한, 중

238) 김정민(2024)이 정리한 ‘회색지대전략의 특징’은 다음의 연구를 정리 및 종합하였다 : Michael Green et al.. (2017). *Countering Coercion in Maritime Asia: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ay Zone Deterrence*, CSIS.; Morris, L. J. et al. (2019). *Gaining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Gray Zone: Response Options for Coercive Aggression Below the Threshold of Major War*. RAND.; 정구연. (2018). “미중 세력전이와 미국 해양전략의 변화: 회색지대갈등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24(3).; 반길주. (2020). “동북아 국가의 한국에 대한 회색지대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한국군사」, 제7호.

239) Todd C. Helmus, Krista Romita Grocholski, Tyler Liggett, Ashley L.

국의 관점에서 회색지대작전은 단기간의 목표달성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중국의 회색지대작전은 대만을 부전승(不戰勝)으로 복속시키기 위한, 그리고 인내심을 요구하는 장기간의 전략이다.²⁴⁰⁾ 즉, 위의 표에서도 정리되어 있듯, 중국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대만을 장악하고자 하는 목표로 회색지대작전을 수행한다. 아래의 〈그림2〉는 대만의 외교안보 싱크탱크 Global Taiwan Institute에서 분석한 예상되는 중국의 ‘점진주의’적 행동 패턴이다.

〈그림2〉 회색지대전술의 단계 (구조적 틀로의 분석)



* 출처 : Sze-Fung Lee (2024), “Decoding Beijing’s Gray Zone Tactics: China Coast Guard Activities and the Redefinition of Conflict in the Taiwan Strait,” Global Taiwan Brief Vol. 9, Issue 6, p. 8.

Rhoades, Scott Savitz, Keytin Palmer (2024), “Understanding and Countering China’s Maritime Gray Zone Operations,” RAND Research Report

240) Isaac Kardon and Jennifer Kavanagh (May 21, 2024), “How China Will Squeeze, Not Seize, Taiwan,” *Foreign Affairs*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국은 ‘총체적 접근 방식(whole-of-nation approach)’을 활용하는데, 이는 중국이 개념화한 ‘종합국력(Comprehensive National Power)’인 외교·경제·문화·법률·군사 자원의 맥락을 따라간다.²⁴¹⁾ 따라서 중국에게 국가안보는 전(全) 인민의 공동 책임이며, 민-군 합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²⁴²⁾ 회색지대작전의 수단과 수행 양상은 다음의 절을 통해 자세히 살펴본다.

2. 중국의 비전쟁 전략 : 회색지대작전

중국은 총체적 접근으로서 중국은 ‘레이어링(layering)’ 방식을 활용한다. 즉, 여러 가지 전술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다영역에서 구사하는 것이다. 이로써 중국은 회색지대에서 추구하는 ‘세가지 전법(Three Warfares Strategy)’에 해당하는 언론전·심리전·법률전을 동시/순차적으로 구현한다. 가령, 중국은 수세적 해양 법률전²⁴³⁾으로서 기존의 「유엔해양법협약」의 분쟁 중재를 거부하거나 중재재판소 판정에 불복하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²⁴⁴⁾ 또한, 상설중재재판은

241) T.C.Helmus, K.R.Grocholski, T.Liggett, A.L.Rhoades, S.Savitz, K.Palmer (2024), “China in the Gray Zone,” in *Understanding and Countering China’s Maritime Gray Zone Operations*, ed., RAND pp.21-23.

242) 이러한 관점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방위법> 제7조와 제56조에 드러난다 : “국가를 방어하고 침략에 저항하는 것”이 신성한 의무이며, “비전쟁 군사작전”에서도 국가방위 발전을 지지해야 한다”

243) 본 절에서 ‘법률전’과 관련한 내용은 주로 “정현욱 (2025), “중국의 해양 ‘법률전’ 분석과 우리의 대응 전략,” 「INSS 전략보고」 324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의 연구보고서를 참고하였음.

244)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14.12.7.).

中华人民共和国政府关于菲律宾共和国所提南海仲裁案管辖权问题的立场文件摘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중국의 영토 주권 문제를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해 판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⁴⁵⁾ 그리고 이러한 법률전은 해경(China Coast Guard)과 해상민병대(People's Armed Forces Maritime Militia)²⁴⁶⁾의 사실상 군사적 사용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공세적 해양 법률전의 일환으로 2021년 2월부터 시행된 「해경법(海警法)」이 대표적이다. 중국 해경은 이를 근거로 그간 중국이 주장해온 관할해역을 침범한 외국 선박에 대한 무기 사용 권한을 보장받게 되었다.²⁴⁷⁾ 또한, 2018년 제13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를 통해 국가 해양국이 관리하던 ‘해경무장부대’가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의 해경총대’로 재조직된 후 해경의 통제권한이 국무원에서 중앙군사위원회로 이관한 바 있다.²⁴⁸⁾ 비로소 중국 해경은 국내법적으로도 지휘통제 계통상으로도 군사조직의 역할을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모호성’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효과도 얻게 된다.

https://www.mfa.gov.cn/nanhai/chn/snhwtlcwj/201606/t20160602_8521032.htm
245)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16.7.12.),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关于应菲律宾共和国请求建立的南海仲裁案仲裁庭所作裁决的声明,
https://www.fmprc.gov.cn/nanhai/chn/snhwtlcwj/201607/t20160712_8521047.htm#:~:text=%E5%85%B3%E4%BA%8E%E5%BA%94%E8%8F%B2%E5%BE%8B%E5%AE%BE%E5%85%B1%E5%92%8C%E5%9B%BD%E5%8D%95,%E7%9A%84%E6%9C%89%E5%85%B3%E4%BA%89%E8%AE%AE%E6%8F%90%E8%B5%B7%E4%BB%B2%E8%A3%81%E3%80%82

5%85%B3%E4%BA%8E%E5%BA%94%E8%8F%B2%E5%BE%8B%E5%AE%BE%E5%85%B1%E5%92%8C%E5%9B%BD%E5%8D%95,%E7%9A%84%E6%9C%89%E5%85%B3%E4%BA%89%E8%AE%AE%E6%8F%90%E8%B5%B7%E4%BB%B2%E8%A3%81%E3%80%82

246) 해상민병대란, 평시 일반 어민·상선 승조원으로 활동하나, 군사훈련을 이수하여 군의 지휘통제를 받아 필요시 군사지원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다.

247) 「해경법(海警法)」 제7장 제56조: 全国人民代表大会 (2021.1.22.),

“中华人民共和国海警法”, <http://www.npc.gov.cn/npc/c30834/202101/ec50f62e31a6434bb6682d435a906045.shtml>

248) 中国海洋发展研究中心(2022.1.24.),

“金永明：中国涉外海洋执法机制的发展历程及‘管辖海域’范围”,
https://aoc.ouc.edu.cn/_t719/2022/0222/c9821a362769/page.htm

해경과 더불어, 주로 어선/상선의 승조원으로 구성된 해상민병대 또한 현재는 중앙군사위원회에 군사훈련의 지휘통제 계통에 속해 있다. 해상민병대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응의 대칭성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수단이다. 사용의 주체는 군이지만, 현장에서만큼은 어선/상선에 대해 군을 동원한 대응이 적절한가에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상대방은 해상민병대가 수행한 도발의 주체를 특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 이를 통해 중국은 해양 영유권을 강화하고 해저·어족 자원 채취를 정당화하고 있다.²⁴⁹⁾

〈그림3〉 중국해상민병대 선단의 밀집대형



* 출처 : 이서항 (2017), “중국의 새 어민세력 ‘해상민병’을 경계하자”
 해양전략연구소,
 KIMS Periscope 제76호

한편, 중국의 對 대만 회색지대 작전은 향후 해양이라는 공간을 넘어 사이버와 우주 영역으로까지 확장될 전망이다. 이미 2019년에

249) 김정민 (2024), “중국 회색지대전략의 기원과 적용,” 「국방정책연구」 40(3), pp.23-24.

는 중국의 해커들이 민진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국에 친화적인 국민당 후보를 선전하는 가운데 차이잉원의 재선을 반대하는 공작을 펼쳤다.²⁵⁰⁾ CSIS에서 중국의 사이버해킹을 연구해온 제임스 루이스(James A. Lewis)는 이제 대만 국민들의 문자·이메일·동영상 콘텐츠들이 인공지능에 의해 교란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²⁵¹⁾ 또한, 해군 전력을 이용한 포위·봉쇄 훈련뿐만 아니라, 대만의 통신망 전체를 교란하는 우주에서의 회색지대작전이 이뤄질 수 있다. 대만은 중국의 위성 교란을 염두에 두고 스타링크를 비롯한 위성을 도입하는 한편, 2026부터는 자체적으로 위성을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²⁵²⁾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중앙의 통제 하에 단 99개의 對위성 체계를 통해 대만의 스타링크 1,400개를 12시간 내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²⁵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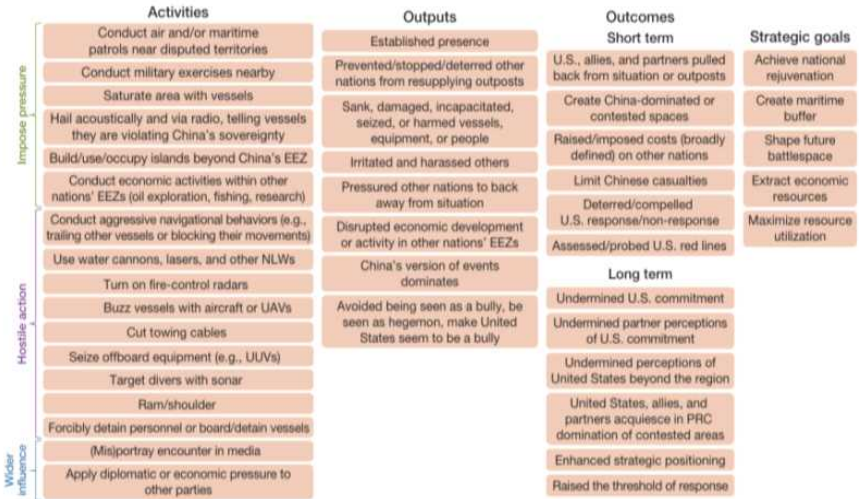
250) Paul Huang (2019. 6.26.), “Chinese Cyber Operatives Boosted Taiwan’s Insurgent Candidate,” *Foreign Policy*

251) James Andrew Lewis (2023 August), “Cyberattack on Civilian Critical Infrastructures in Taiwan Scenario,” CSIS

252) Eric Cheung (2024. 5. 4.), “Developing Taiwan’s Own ‘Starlink’ Crucial for Island-wide Emergency, Space Agency Says,” *CNN*

253) Stephen Chen (2025. 1.12.), “Chinese Scientists Simulate ‘Hunting’ Starlink Satellites in Orbit,” *South China Morning Post*

〈그림4〉 중국 회색지대작전의 논리



NOTE: UAV = unmanned aerial vehicle; UUV = unmanned underwater vehicle.

* 출처: “China in the Gray Zone,” in Understanding and Countering China’s Maritime Gray Zone Operations, edt, (2024), RAND, p.X II (preface page 12).

IV. 전쟁 상황에서의 중국의 대만전략 : 상륙작전을 통한 대만 점령

1. 대만 무력 통일 조건

중국은 2005년 제정한 〈반국가보안법〉에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대만을 통일해야 하는 조건을 명시해놓고 있으며 이는 ①대만이 독립을 선언하거나 (독립 관련 국민투표 포함), ②외부 세력의 개입이 크

거나, 마지막으로 ③통일의 가능성이 없을(또는 멀어졌을) 때이다.²⁵⁴⁾ 그럼에도 대만은 라이칭더 총통 취임 이후 2024년 10월 10일 국경일(雙十節) 행사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명시적으로 거부했으며, 같은 해 12월 1 ~ 6일 간 대만과 수교하고 있는 태평양 도서국들을 순방했다. 또한, 라이칭더는 괌과 하와이를 들르며 포럼을 개최하거나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과 소통하는 행보도 이어나갔다.²⁵⁵⁾

한편, 차이잉원부터 라이칭더까지 이어지는 대만의 민진당 총통들과 미국의 적극적인 친(親) 대만 외교행위들은 중국으로 하여금 대만에 대한 무력통일 준비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테일러 프래블(Taylor Fravel)(2023)은 중국에게 대만통일은 근본적으로 정치의 대상이기 때문에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여부 또한 정치의 문맥으로 읽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중국의 대만통일 정책은 두 집단의 대상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첫째는 대만 지도부를 향한 것이며, 둘째는 대만을 지원하는 미국을 향한 것이다.²⁵⁶⁾ 중국은 이에 대응하듯, 2025년 3월 개최된 〈반국가보안법〉 제정 20주년 심포지엄에서 대만의 독립을 염원하는 분리주의자들과 외부 세력들(특히 미국)을 향한 강한 메시지를 보냈다. 그 핵심은 결국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두 국가 모두 하나의 중국이며, 대만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PRC 중국의 ‘내치’ 문제라는 것이다.²⁵⁷⁾

254) US Indo-Pacific Command (2023) China's Anti-Secession Law, USINDOPACOM J06/SJA TACAID SERIES). 출처: https://www.pacom.mil/Portals/55/Documents/Legal/J06%20TACAID%20-%20THE%20PRC%27S%20ANTI-SECESSION%20LAW%20VER%202.pdf?ver=Y_3C_j58gshIVL3_iold4Q%3D%3D

255) 조영남, “중국 2024년 정세 평가와 2025년 전망,” 「Pacific Report」,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p.6

256) M. Taylor Fravel (2023) “China's Potential Lessons from Ukraine for Conflict over Taiwan,” *The Washington Quarterly* 46(3), pp.9-10.

〈그림5〉 (좌) 덩샤오핑의 ‘일국양제’ 선언



* 출처 : 공산당역사박물관 내부 전시물 직접 사진촬영

〈그림6〉 장쩌민의 외교/대만통일 전략



* 출처 : 공산당역사박물관 내부 전시물 직접 사진촬영

257) Xinhua Commentary (2025. 3.15.) “Anti-Secession Law a strong, effective deterrent to “Taiwan independence”,” 출처: <https://english.news.cn/20250315/c22276521bb648d5b01d639c7bb53c90/c.html>

2. 전략·작전 차원의 전쟁전략

가장 최신에 발간된 중국의 「군사전략학 2020 (Science of Military Strategy 2020)」(이하 ‘군사전략학’)에는 직접적으로 대만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섬 작전(Island Operations)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중국의 대만 전략을 암시하고 있다. ‘군사전략학’에 따르면 섬 작전은 봉쇄와 상륙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섬 봉쇄 작전(Island Blockade Operations)’는 합동전력·합동화력·종합적 장애물을 동원한 입체적 봉쇄를 의미하고, ‘섬 상륙 작전(Island Landing Operations)’는 적이 점령하고 있는 섬에 대한 공세작전으로 다차원 공간(다영역) 전투이다.²⁵⁸⁾

먼저 ‘섬 봉쇄 작전’의 수행 양상은 2022년~2024년 3차례 간 이뤄진 중국의 훈련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2022년은 항공작전·로켓/미사일발사·합동봉쇄·지상훈련으로 구성된 군종별 자체 ‘제병협동훈련’의 집합체였다면 2023년은 전영역 합동훈련·정밀타격훈련·합동 차단 및 봉쇄훈련으로 구성된 본격적인 ‘합동훈련’의 모습으로 발전한 것이다. 나아가 2024년에는 회색지대작전을 포함하는 민·관·군의 총력을 기울인 훈련의 모습이였다. 아래의 <표 3>는 2022~2024년 중국의 대만 봉쇄 훈련을 비교분석하였다.

258) Science of Military Strategy 2020. p.231

〈표3〉 중국의 대만 봉쇄 훈련 현황 (2022~2024)

구분	훈련 기간	훈련 내용	참가 전력
2022년	8월 3일 ~ 10일 (8일)	대규모 항공작전	항공기 50대
		장거리 로켓 및 미사일발사	로켓 수발, 미사일 11발
		해상/합동 봉쇄훈련	함정 13척, 항공기 68대
		지상훈련	동부전구사 예하 집단군
2023년	4월 8일 ~ 10일 (3일)	전영역 합동훈련 * 해상기동, 대공방어, 대잠훈련, 해상사격, 중·장거리 공중작전, ADIZ 진입 등	(해군) 구축함 및 호위함 등 9척 (공군) 전투기 및 지원기 등 71대 (로켓군) 여단급 1개 부대
		정밀 타격/ 합동 봉쇄훈련 * 모의 정밀타격, 합동포위훈련, 함재기 운용훈련	(해군) 항모 및 구축함 등 11척 (공군) 전투기 및 지원기 등 70대 (로켓군) 부대규모 미상
		차단/봉쇄훈련 * 대만 동쪽 해상접근로 차단 등	(해군) 항모 및 구축함 등 12척 (공군) 전투기 및 지원기 91대
2024년	5월 22일 (JS-A)	해군·해경·공군 합동훈련 ²⁵⁹⁾	(해군) 함정 15척 및 (해경) 함정 16척 (공군) 항공기 42대
	10월 14일 (JS-B)	* 회색지대작전과 정규 군사훈련이 혼재된 형태의 민·관·군 훈련	(해군/해경) 함정 각 17척 (공군) 항공기 125대

출처: 이택선·이홍정 (2024), “2022-2023년 대만해협 위기 평가와 한국의
대비 방향,” 「국가안보와 전략」 24(2), pp.112-121²⁶⁰⁾

259) 2024년 4월과 10월 두 차례 진행된 위 훈련은 <聯合利劍-2024(Joint
Sword-2024)> 으로 불리며, 위의 표에서는 JS-A/B로 축약해 지칭한다.

〈그림7〉 1995-1996년과 2022년의 대만봉쇄훈련 비교



* 출처 : CGTN (2022), “Chart of the Day: How is this PLA exercise different compared to 1996?”

군사전략학에서 섬 작전의 일부로 기술되었던 ‘섬 상륙 작전(Island Landing Operations)’은 현대전에서 가장 복합적인 작전으로서 강력한 기동성·공중지원·해상수송·물류지원·효과적 타격력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중국이 군사전략학에서 정의한 상륙작전이 작전 교리의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2024년 미국 해군대학에서 발간된 크리스토퍼 융(Christopher Yung)과 조 하버(Zoe Haver)의 연구가 분석해놓은 자

260) 이외에도 다음 연구들을 참조: CSIS (2022. 8.23.), “The Military Dimensions of the Fourth Taiwan Strait Crisis,”; Li Weichao (2023. 4. 8.), “PLA Eastern Theater Command Launches Security Patrol, Military Exercise Encircling Taiwan Island,” *China’s Defense Ministry*; David Pierson and Amy Chang Chien (2024. 5.22.), “China Launches Military Drills Around Taiwan as ‘Punishment’,” *The New York Times*; Derek Grossman (2025),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Gray Zone Tactics Against Taiwan,” pp.1-4.

료, 6개 작전 원칙(Six Pillars of PLA Amphibious Doctrine)를 참고할 수 있으며, 각 원칙은 아래와 같다.²⁶¹⁾

첫째, ‘3개 영역(공중, 해상, 정보)에서의 우위 확보(Dominance of the three domains)’이다. 이는 상륙작전 성공의 전제를 공중·해상·정보공간에서의 우세에 있다고 보는 관점을 반영한다. 사이버·전자전·C4ISR에서의 전장도 3개 영역과의 조화를 통해 반드시 선점해야 하는 전투 영역이다. 후진타오 이래로 시진핑까지 ‘정보화’ 기반 국부전을 군사전략의 키워드로 상정하고 있는 만큼, 본 원칙은 후술할 나머지 5가지 원칙에 선행하는 조건이다.

둘째, ‘핵심 지점 타격(Key-point strikes)’이다. 지휘소·활주로·통신망 등 주요 적 시설들을 사전 타격하여 상륙군에 대한 저항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때, 로켓군 중도 하의 탄도·순항미사일의 정밀타격 능력이 핵심이다.

셋째, ‘정예 부대’의 집중(Concentration of “elite strenghts”)’이다. 이에 따라서 중국은 해군 예하 해병대 전력을 보강하고 있으며, 육군 예하의 상륙작전에 특화된 공수부대·특수부대의 질적·양적 전력강화가 이뤄지고 있다.

넷째, ‘신속성과 지속성을 갖춘 강습(Rapid and continuous assaults)’이다. 이때 작전의 속도는 유지하는 가운데 후속 군수·보급 물자들이 1차 상륙군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통합되고 유연한 지원작전(Integrated and flexible support operations)’이다. 전자전 지원, 의무지원, 무인기를 통한 보조작전 등이 주작전과 유연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261) Andrew S. Erickson, Conor M. Kennedy, and Ryan D. Martinson (2024), *Chinese Amphibious Warfare: Prospects for a Cross-strait Invasion*, US Naval War College, pp.45-62.

여섯째, ‘심리전(Psychological attacks)’이다. 상륙작전 등의 군사작전과 병행하여 국제사회에 중국의 무력사용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법률전’과 함께, 적진의 국민·군대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심리전’을 병행해야 하는 것이다.²⁶²⁾

〈그림8〉 중국인민해방해군 해병대의 상륙작전 훈련 모습



* 출처 : 미국 국방부 사진자료

2. 전력·조직 차원의 전쟁전략

시진핑 2기에 들어서자 대만 문제를 비롯한 ‘국가안전’에 대한 강조가 더해가며 정치개혁도 병행되었다. 동시에, 시진핑은 본격적으로 국방개혁을 단행했다. 이는 2013년 3월의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공언한 “새로운 형세 하의 강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진핑 주도로 추진된 당의 영도 방침과 군 체제 개혁의 연장선에 있다. 2014년, 중앙군사위원회는 군 개혁을 위한 영도소조²⁶³⁾를 설치했고, 같은 해

262) 마지막 원칙은 이미 중국인민해방군을 중심으로 한 회색지대전략으로서 평시 훈련되고 있다.

3~10월 사이 690여개 군부대 방문과 800여 회의 영도소조 자체 좌담회·토론회를 실시했다. 이어서 2015년 또한 영도소조를 소집, 7월에는 ‘국방·군대개혁을 위한 종합방안 건의’를 채택했다. 이로써 시진핑은 ‘군대 영도관리체제와 연합작전지휘체제²⁶⁴⁾ 통합 설계’, ‘중앙군사위원회 총부(4총부) 체제 조정’, ‘군구 체제 재조정’, ‘전구연합작전지휘기구 조직’ 등을 추진했다.²⁶⁵⁾

결국 핵심은 공산당 중앙(중앙군사위원회)에서 ‘전구’를 거쳐 각 부대로 당의 영도와 군령이 더욱 직접적으로 행사되는 체제로 만드는 것이었다. 기존의 육군 중심 지역방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군구(军区) 체제는 전·평시 모두 훈련과 작전을 각 군구사령관이 담당했으나, 전구(战区) 체제로 개혁하며 이제는 평시 각 군에서 훈련을 주도하는 한편 전시 중앙군사위원회 산하 ‘연합작전센터’ 주도의 지휘가 이뤄질 수 있게 되었다.²⁶⁶⁾ 아래의 <그림8>은 시진핑 주도의 군 개혁 이전과 이후의 인민해방군의 군 구조를 비교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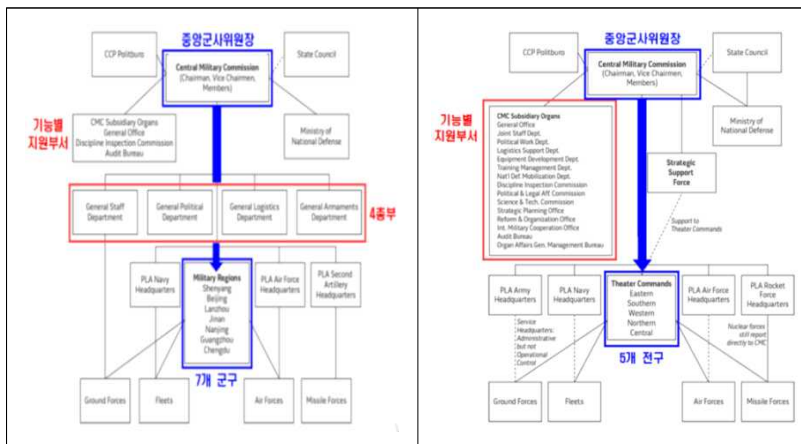
263) 영도소조는 공산당의 정책조정 및 결정 뿐만 아니라 정책 집행의 감독을 위해 설치하는 비상설 의사결정기구로, 다른 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행정부 산하에 임시 설치하는 태스크포스(TF)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나 권한과 관장 범위는 그보다 높다. 상세 내용은 “조영남 (2022) 「중국의 통치체제: 공산당 영도체제」 제2부 공산당 조직(당조와 영도소조: ‘특별한’ 영도조직), (서울: 21세기북스)” 참고

264) 인민해방군에서의 ‘연합작전’은 일반적으로 타군에서 사용하는 ‘합동작전’의 중국식 표현이다.

265) 「軍改方案出台過程公佈: 習近平三開軍委改革會議」 (2015.12.31.), 『觀察者網』; 「習近平全面實施改革強軍戰略 堅定不移走中國特色強軍之路」 (2015.11.27.), 『人民日報』, (이상 “유동원 (2016), “중국 군사체제 개혁과 한국의 대응” 「한국민족문화」 61호 pp.5-8.”에서 재인용)

266) Phillip C. Saunders and Joel Wuthnow (2016 April), "China's Goldwater-Nichols? Assessing PLA Organizational Reforms," STRATEGIC FORUM, No. 294. pp.68-75.

〈그림9〉 군 체제 개혁 이전(좌)과 이후(우) 인민해방군 군 구조 비교



*출처 : Phillip C. Saunders and Joel Wuthnow (2016 April), p.69-70.

이와 더불어 중국은 <표3>과 같이 기존의 군구(Military Region)를 중심으로 편성된 육군 중심의 상륙부대를 모두 전구(Theater Command) 예하의 통일성 있는 ‘합동상륙여단(Amphibious Combined-Arms Brigades)’ 편제로 발전시켰다. 합동상륙여단은 작전원칙 6가지의 요소를 반영하며 3개 영역(공중·해상·정보)과 사이버·전자전 부대를 유연하게 통합 운용할 수 있는 부대구조로 개편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4>와 <표5>에 제시되어 있다.

〈표4〉 국방개혁 전·후 합동상륙부대 지휘구조 비교

(~2017년) 국방개혁 前		(2017년~) 국방개혁 後	
제1집단군 예하 제1상륙기계화보병사단 (항저우(저장) 위치)	⇒	제72 집단군	제5합동상륙여단
			제124합동상륙여단
		제73 집단군	제14합동상륙여단
제31집단군 예하 제14상륙기갑여단 (장저우(푸젠) 위치)			제91합동상륙여단
제42집단군 예하 제124상륙보병사단 (보뤄(광둥) 위치)		제74 집단군	제1합동상륙여단
			제125합동상륙여단

* 출처: Andrew S. Erickson, Conor M. Kennedy, and Ryan D. Martinson (2024), Chinese Amphibious Warfare: Prospects for a Cross-strait Invasion, US Naval War College, p.67.

〈표5〉 국방개혁 이후 합동상륙여단 기본 편제

전투대대 (4개)		지원대대 (5개)				
강습 보병 중대*2	기계화 보병 중대*2	정찰 대대	포병 대대	대공 대대	통신 대대	군수보급 대대
화력 지원 중대*1	지원 중대*1	UAV 등	122mm	MANPA DS	C2, 전자전	보급, 의무, 수리, 군수

* 출처: Andrew S. Erickson, Conor M. Kennedy, and Ryan D. Martinson (2024), Chinese Amphibious Warfare: Prospects for a Cross-strait Invasion, US Naval War College, p.68.

지휘구조를 개편하면서 중국은 모듈화된(modulized) 부대 운영을 가능케 함과 동시에 전영역작전(all-domain operations, 全域作战)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중국의 상륙작전 능력을 완성시켜주는 것은 가장 전문화된 상륙군인 해병대(People's Liberation Army Navy Marine Corps, PLANMC)를 증강하는 것이다.²⁶⁷⁾ 군구(Military Region) 단위에서 남해함대(South Sea Fleet) 소속으로 2개 여단만으로 구성되었던 12,000명의 해병대는 국방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7년, 해군 산하 해병대본부(MC Head Quarter)가 신설됨과 동시에 공수여단을 포함한 새로운 조직들이 추가되기 시작했다.²⁶⁸⁾ 앞서 설명했던 합동상륙부대의 조직개편과 마찬가지로 해병대 또한 각 전구사령부 예하 기능별 해병대여단을 편성하는 구조로 전환했다. 이후 북부전구사령부 예하 3개(5/6해병여단 및 함상항공(Naval Shipborne Aviation)여단), 동부전구사령부 예하 2개(3/4해병

267) 중국은 '전영역작전(全域作战)'을 구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막·혹한·정글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미 지부티를 비롯한 중국의 주요 파병지역에서 해병대가 유연성 있는 전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해군은 중국의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과 위기 대응(response to crises)을 위한 미래의 대표적인 원정군으로 여겨지고 있다. 다음의 자료 참고 : 王元元、曾行贱 (2015), 有效提升海军陆战队 全域作战能力—专访寒训指挥员、南海队副参谋长李晓岩 (Wang Yuanyuan and Zeng Xingjian, "Effectively Improve the Navy Marine Corps's All-Domain Combat Capabilities—Interview with Li Xiaoyan, Commander of Cold Training and Deputy Chief of Staff of the South Sea Fleet"), 当代海军 (Modern Navy), no. 2, pp.21-23.; 安卫平 (2017. 1.13.), 海军陆战队跨越式发展之我见 (An Weiping, "My Opinions on the Leapfrog Development of the Navy's Marine Corps"), 人民海军 (People's Navy), p.3. ("Andrew S. Erickson, Conor M. Kennedy, and Ryan D. Martinson (2024), *Chinese Amphibious Warfare: Prospects for a Cross-strait Invasion*, p.86-87."에서 재인용)

268) 胡波 (2018 March), 中国为啥必须要有一支强大的海军陆战队? (Hu Bo, *Why Does China Require a Strong PLAN Marine Corps?*), 瞭望智库 28. Accessed at: www.lwinst.com/hongguan/6577.htm.

여단), 그리고 남부전구사령부 예하 2개(1/2해병여단 및 특수작전여단)의 구조를 갖추게 되었으며, 각 여단별 대대 편제는 아래의 <표 6>와 같이 구성된다.

<표6> 국방개혁 이후 중국 해병대(PLANMC) 지휘구조

전구사령부별 해병대여단 지휘구조		1개 여단별 대대 편제	
남부전구	1/2해병여단 및 특수작전여단	상륙기계화보병대대*2	포병대대*1
동부전구	3/4해병여단	중기계화보병대대*1	방공대대*1
북부전구	5/6해병여단 및 함상항공여단	공중강습보병대대*1	작전지원대대*1
		정찰대대*1	근무지원대대*1

* 출처 : Andrew S. Erickson, Conor M. Kennedy, and Ryan D. Martinson (2024), *Chinese Amphibious Warfare: Prospects for a Cross-strait Invasion*, p.88-89.

이상의 합동상륙여단 및 해군 예하의 해병여단은 ZBD/ZTD 계열의 수륙양용장갑차(Armored Amphibious Vehicles), Z-8/9/18 계열의 수송 및 병참헬기, 그리고 071/072/075형 상륙함(정)을 통해 강습작전을 수행한다.²⁶⁹⁾ 상륙함의 경우 미국의 와스프급과 같이 강습헬기를 동원한 초수평선상륙작전(Over-The-Horizon Amphibious Assault, OTH-AA) 작전이 가능한 플랫폼이며, 현재 개발 중인 076형 상륙함이 실전배치 된다면 향후 전자기사출방식(Electromagnetic Aircraft Launch System, EMALS)으로 수직이착륙(V/STOL) 함재기를

269) Andrew S. Erickson, Conor M. Kennedy, and Ryan D. Martinson (2024), *Chinese Amphibious Warfare: Prospects for a Cross-strait Invasion*, p.90-93.

동원, 3차원 작전이 가능한 상륙군의 형태가 될 것이다.²⁷⁰⁾

〈그림9〉 075형 상륙함



* 출처 : (상단) Eric Wertheim (2024), “China’s Amphibious Apex: Type 075 Assault Ships”

〈그림10〉 076형 상륙함



출처: Alex Luck (2024), “China Names Type 076 Amphibious Catapult Carrier “Sichuan” At Launch Ceremony In Shanghai“

270) Matthew P. Funaiole, Brian Hart, Aidan Powers-Riggs, and Joseph S. Bermudez Jr. (2024. 8. 1.) “China’s Massive Next-Generation Amphibious Assault Ship Takes Shape,” CSIS. Accessed at : https://www.csis.org/analysis/chinas-massive-next-generation-amphibious-assault-ship-takes-shape?utm_source

V. 나가며

중국의 대만전략은 복합적이다. 특히, 전쟁과 비전쟁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중국의 대만전략을 분석함에 있어서 내생적(중국 공산당 리더십의 의사결정)·외생적(국제체제 수준의 구조적) 접근 중 한 가지만으로 분석하면 중국의 대만전략에 나타나는 복합성을 놓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프레블의 국가 중심 접근법으로 대만 문제를 중국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고자 했다. 그러한 연구의 틀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대만은 중국의 관점에서는 내치문제로 보아야 중국의 전략이 비로소 설명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이 발간하는 군사전략서와 공산당 대회에서도 나타나듯 이러한 대만에 중국은 긴 호흡을 가지고 군사적·비군사적 수단을 모두 동원하는 복합전략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주목할 점은 중국이 비전쟁전략과 전쟁전략을 구분하고, 전략을 구현하는 방법으로서 각각 전력 운용(용병)에 초점을 둔 ‘회색지대작전’과 전력 건설(양병)에 초점을 둔 상륙작전 역량 확보를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대만이 중국의 무력통일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행동들을 자행함으로써 중국으로 하여금 장악력이 약화되었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면 회색지대작전은 어느새 군사작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실제 전쟁 발발 및 중국의 전면적 대만 침공 시에는 본 논문의 본문에서 다루지는 않았던 확전(이 경우 미 인테사령부의 개입 등)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상륙작전 6원칙에 따르면 분명 대만 상륙 이전에 대규모 봉쇄가 이뤄질 것이며, 동시에 로켓군 주도로 순항·탄도 미사일을 활용

한 대규모 정밀타격이 수행될 것이다. 중국의 핵태세(또는 핵전략)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이 모두 경고하는 것이 바로 중국 로켓군의 미사일이중용도 사용(dual use of nuclear and conventional)이다. 상륙작전의 초기·중기 단계에서 중국이 발사하는 미사일이 핵미사일인지 재래식 미사일인지 그 모호함이 대규모 핵전쟁으로 변지는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 CSIS(2023) 또한 전쟁 시뮬레이션을 통해 중국의 대만 침공이 초기에 대규모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해상/공중 강습이 대규모로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이 중국-대만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본토(mainland)를 타격할 경우(또는 이러한 위험이 감지될 경우), 미-중 간 재래식 군사력의 충돌이 핵 확전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본 논문이 강조하듯, 국제사회는 이제 중국의 관점에서 대만문제를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대만은 중국의 내치문제라는 관점을 고수하는 중국 공산당 리더십의 입장을 고려해야만 현재의 동아시아 안보를 불안하지만 현상유지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스스로 회색지대작전을 통해 대만해협을 포함한 주변부에 위압감을 조성하고, 대만 무력 통일 조건의 문턱은 낮은 채로 평화를 위한 여러 협상채널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의 이른바 국제질서(international order) 유지자들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억제력을 높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정부문서

US Department of Defense (photo)

<https://www.defense.gov/Multimedia/Photos/igphoto/2002079996/>

CASI (China Aerospace Studies Institute) (2022), Science of Military Strategy 2020, Air University, p.66

US Indo-Pacific Command (2023) China's Anti-Secession Law, USINDOPACOM J06/SJA TACAID SERIES).

영국정부 홈페이지 (Gov.UK) “Country policy and information note: Hong Kong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 China, April 2025” (updated 2025. 6.27.),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hina-country-policy-and-information-notes/country-policy-and-information-note-hong-kong-national-security-legislation-china-april-2025>

Li Weichao (2023. 4. 8.), “PLA Eastern Theater Command Launches Security Patrol, Military Exercise Encircling Taiwan Island,” China's Defense Ministry.

〈당과 국가 기구 개혁 심화 방안 (深化黨和國家機構改革方案)〉, 『人民網』, www.people.com.cn

〈당과 국가 기관 개혁 방안 (黨和國家機構改革方案)〉 『人民網』, www.people.com.cn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방위법 (中華人民共和國國防法)〉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2014.12.7.),

“필리핀 공화국이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 사건의 관할권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입장 요지

中华人民共和国政府关于菲律宾共和国所提南海仲裁案(管辖权问题的立场文件摘要)”,

https://www.mfa.gov.cn/nanhai/chn/snhwtlcwj/201606/t20160602_8521032.htm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16.7.12.),

“필리핀 공화국의 요청에 따라 설립된 남중국해 중재 재판소가 내린 판결에 대한 성명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关于应菲律宾共和国请求建立的南海仲裁案仲裁庭所作裁决的声明)”,

https://www.fmprc.gov.cn/nanhai/chn/snhwtlcwj/201607/t20160712_8521047.htm#:~:text=%E5%85%B3%E4%BA%8E%E5%BA%94%E8%8F%B2%E5%BE%8B%E5%AE%BE%E5%85%B1%E5%92%8C%E5%9B%BD%E5%8D%95,%E7%9A%84%E6%9C%89%E5%85%B3%E4%BA%89%E8%AE%AE%E6%8F%90%E8%B5%B7%E4%BB%B2%E8%A3%81%E3%80%82

「해경법(海警法)」 제7장 제56조

2. 연구 보고서

CSIS (2023 January), 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

Wargaming a Chinese Invasion of Taiwan

S. Eric Heginbotham et. al, “The U.S.–China Military Scorecard: Forces, Geography, and the Evolving Balance of Power, 1996–2017” (Santa Monica, Calif.: RAND, 2015)

RAND (2008), “China’s Thinking on Escalation: Evidence from Chinese Military writings,” in Dangerous Thresholds: Managing

Escalation in the 21st Century, pp.52–78

Derek Grossman (2025),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Gray Zone Tactics Against Taiwan,” Global Taiwan Institute
“Analyzing China’s Escalation After Taiwan President William Lai’s National Day Speech,” China Power, CSIS, (October 2024).

Mark F. Cancian, Matthew Cancian, Eric Heginbotham (2023)
“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 Wargaming a Chinese Invasion of Taiwan,” CSIS International Security Program (2023, January)

Morris, L. J. et al. (2019). Gaining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Gray Zone: Response Options for Coercive Aggression Below the Threshold of Major War. RAND.

Michael Green et al.. (2017). Countering Coercion in Maritime Asia: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ay Zone Deterrence, CSIS

Morris, L. J. et al. (2019). Gaining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Gray Zone: Response Options for Coercive Aggression Below the Threshold of Major War. RAND.

Ronald O'Rourke (2025),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 South and East China Seas: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odd C. Helmus, Krista Romita Grocholski, Tyler Liggett, Ashley L. Rhoades, Scott Savitz, Keytin Palmer (2024), “Understanding and Countering China’s Maritime Gray Zone Operations,” RAND Research Report (May, 2024)

- T.C.Helmus, K.R.Grocholski, T.Liggett, A.L.Rhoades, S.Savitz, K.Palmer (2024), "China in the Gray Zone," in Understanding and Countering China's Maritime Gray Zone Operations, ed, RAND pp.21-23.
- James Andrew Lewis (2023 August), "Cyberattack on Civilian Critical Infrastructures in Taiwan Scenario," CSIS
- CSIS (2022. 8.23.), "The Military Dimensions of the Fourth Taiwan Strait Crisis"
- Phillip C. Saunders and Joel Wuthnow (2016 April), "China's Goldwater-Nichols? Assessing PLA Organizational Reforms," STRATEGIC FORUM, No. 294. pp.68-75.
- 이서향 (2017), "중국의 새 어민세력 '해상민병'을 경계하자" 해양전략연구소, KIMS Periscope 제76호, <https://kims.or.kr/issubrief/kims-periscope/peri76/>
- 한국국방연구원 (2025), 「국방정책 환경 전망과 과제」, p.54
- 조영남 (2025), "2024년 중국 정치의 현황과 전망: 중국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를 중심으로," 「2024 중국정세보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정현욱 (2025), "중국의 해양 '법률전' 분석과 우리의 대응 전략," 「INSS 전략보고」 324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 조영남, "중국 2024년 정세 평가와 2025년 전망," 「Pacific Report」,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p.6

3. 저서

- Michael Beckley and Hal Brands (2022) *Danger Zone: The Coming Conflict with China*, (W. W. Norton & Company)
- Steve Tsang (2006), *If China Attacks Taiwan : Military Strategy, Politics and Economics*, edited by Steve Tsang (Taylor & Francis Group)
- John A.Vasquez (1998), “The Steps to War in Europe, 1933–41,” in Frank P.Harvey, Ben D.Mor (eds), *Conflict in World Politics: Advances in the Study of Crisis, War and Peace* (London: MacMillan) pp.210–216.
- Andrew S. Erickson and Ryan D. Martinson (2019), *China’s Maritime Gray Zone Operations*,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번역본 : 중국의 해양 그레이존 작전, 서울 : 박영사)
- Andrew S. Erickson, Conor M. Kennedy, and Ryan D. Martinson (2024), *Chinese Amphibious Warfare: Prospects for a Cross-strait Invasion*, US Naval War College
- 테일러 프레블(Taylor Fravel) (2008), 「중국의 영토분쟁 (원어 : Strong Borders, Secure Nation)」 (서울: 김앤김복스)
- 조영남 (2022) 「중국의 통치체제: 공산당 영도체제」 제2부 공산당 조직(당조와 영도소조: ‘특별한’ 영도조직), (서울: 21세기북스)

4. 논문

- 王元元·曾行贱 (2015), 有效提升海军陆战队全域作战能力—专访寒训指挥员、南海队副参谋长李晓岩 (Wang Yuanyuan and Zeng Xingjian, “Effectively Improve the Navy

- Marine Corps's All-Domain Combat Capabilities—Interview with Li Xiaoyan, Commander of Cold Training and Deputy Chief of Staff of the South Sea Fleet”), 当代海军 (Modern Navy), no. 2, pp.21–23.
- 安卫平 (2017. 1.13.), 海军陆战队跨越式发展之我见 (An Weiping, “My Opinions on the Leapfrog Development of the Navy’s Marine Corps”), 人民海军 (People’s Navy), p.3.
- Yan Xuetong (2019), *Leadership and the Rise of Great Powers*, (N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Niall Ferguson (2021. 3.21.), “A Taiwan Crisis May Mark the End of the American Empire,” Bloomberg Opinion 21
- Brenden Rittenhouse Green and Caitlin Talmadge (2022), “Then What? Assessing the Military Implications of Chinese Control of Taiwan,” *International Security* 47(1)
- Stephen Biddle and Ivan Oelrich (2016), “Future Warfare in the Western Pacific: Chinese Antiaccess/Area Denial, U.S. Air Sea Battle, and Command of the Commons in East Asia,” *International Security* 41(1);
- Michael Beckley (2017), “The Emerging Military Balance in East Asia: How China’s Neighbors Can Check Chinese Naval Expansion,” *International Security* 42(2)
- Yan Xuetong (2004) “Origins of the Policy to ‘Pay any Price to Contain Taiwan’s Independence’,” *China Strategy* vol.3
- John A.Vasquez (2004), “The Probability of War, 1816–1992,”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 Paul D.Sensee and John A.Vasquez (2005), “Assessing the Steps

- to War,”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Youngnam Cho (2024), “Much Ado About Nothing? An Analysis of the CCP’s Third Plenary Session of the 20th Central Committee,”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36(4)
- M. Taylor Fravel (2023) “China’s Potential Lessons from Ukraine for Conflict over Taiwan,” The Washington Quarterly 46(3), pp.9–10.
- 구진영 (2023), “미중갈등의 최전선은 왜 대만인가?” 「국가안보와 전략」 pp.145–147.
- 반길주 (2020), “동아시아 공세적 해양주의: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과 동북아 4강의 해양전략,” 「전략연구」 27(2)
- 임정한 (2025), “신냉전과 미중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경쟁,” 「국제·지역연구」 34(1)
- 이지원 (2015), “전쟁 원인의 복잡성과 비극적 서사,” 「국제정치논총」 55(2)
- 정구연. (2018). “미중 세력전이와 미국 해양전략의 변화: 회색지대갈등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24(3).
- 반길주. (2020). “동북아 국가의 한국에 대한 회색지대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한국군사」, 제7호.
- 김정민 (2024), “중국 회색지대전략의 기원과 적용,” 「국방정책연구」 40(3)
- 이택선·이홍정 (2024), “2022–2023년 대만해협 위기 평가와 한국의 대비 방향,” 「국가안보와 전략」 24(2)
- 유동원 (2016), “중국 군사체제 개혁과 한국의 대응” 「한국민족문화」 61호 pp.5–8.

5. 인터넷 기사

胡波 (2018 March), 中国为啥必须要有一支强大的海军陆战队? (Hu Bo, Why Does China Require a Strong PLAN Marine Corps?), 瞭望智库 28. Accessed at: www.lwinst.com/hongguan/6577.htm.

CGTN (2022), “Chart of the Day: How is this PLA exercise different compared to 1996?”
<https://news.cgtn.com/news/2022-08-07/Chart-of-the-Day-How-is-this-PLA-exercise-different-compared-to-1996-1ciRMczkdGg/index.html>

Taipei Times (2023. 2. 4.), “CIA head warns against underestimating Xi,”
https://www.taipeitimes.com/News/taiwan/archives/2023/02/04/2003793705?utm_source

Eric Wertheim (2024), “China’s Amphibious Apex: Type 075 Assault Ships,”
<https://www.usni.org/magazines/proceedings/2024/august/chinas-amphibious-apex-type-075-assault-ships>

Alex Luck (2024), “China Names Type 076 Amphibious Catapult Carrier “Sichuan” At Launch Ceremony In Shanghai,”
<https://www.navalnews.com/naval-news/2024/12/type-076-amphibious-carrier-launched-by-hudong-in-shanghai/>

Jennifer Hlad (2025. 2.13.) “China is rehearsing for war, Indo-Pacific commander says,” Defense One
https://www.defenseone.com/threats/2025/02/china-rehearsing-war-indo-pacific-commander-says/403011/?utm_sourc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23), Preventive Priorities Survey.

Yew Lun Tian and Laurie Chen (2024, March 5), “China drops ‘peaceful reunification’ reference to Taiwan,” Reuters,
<https://www.reuters.com/world/china/china-drops-peaceful-reunification-reference-taiwan-raises-defence-spending-by-2024-03-05/>

Christopher Twomey (2022. 8.22.), “The Fourth Taiwan Strait Crisis is Just Starting,” War on the Rocks

Paul Huang (2019. 6.26.), “Chinese Cyber Operatives Boosted Taiwan’s Insurgent Candidate,” Foreign Policy

Eric Cheung (2024. 5. 4.), “Developing Taiwan’s Own ‘Starlink’ Crucial for Island-wide Emergency, Space Agency Says,” CNN

Stephen Chen (2025. 1.12.), “Chinese Scientists Simulate ‘Hunting’ Starlink Satellites in Orbit,” South China Morning Post

Xinhua Commentary (2025. 3.15.) “Anti-Secession Law a strong, effective deterrent to “Taiwan independence”,” 출처:
<https://english.news.cn/20250315/c22276521bb648d5b01d639c7bb53c90/c.html>

David Pierson and Amy Chang Chien (2024. 5.22.), “China Launches Military Drills Around Taiwan as ‘Punishment’,” The New York Times

Matthew P. Funaiole, Brian Hart, Aidan Powers-Riggs, and Joseph S. Bermudez Jr. (2024. 8. 1.) “China’s Massive Next-Generation Amphibious Assault Ship Takes Shape,” CSIS. Accessed at :
https://www.csis.org/analysis/chinas-massive-next-generation-amphibious-assault-ship-takes-shape?utm_source

〈 사랑방 24기 중국 북경 답사 단체사진 〉

참여자 : 하영선, 구진영, 신흥중, 이해린, 이현, 조도영, 최은호
(7인)







〈 다음 기수를 위한 사랑방 24기의 답사 준비 꿀팁 〉

1. 교통

북경의 택시비는 한국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인원이 10인 이하라면 모든 일정을 택시로 처리하는 것이 따로 승합차를 빌리는 것보다 편안합니다.

중국에서는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를 사용해 핸드폰으로 주로 택시를 부르는데, 4인 이상 타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답사 전 미리 택시 담당을 정해 목적지까지 택시를 불러서 편리하게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2. 날씨

여름의 북경 더위는 가히 살인적인 수준으로, 저희는 첫날 자금성 답사를 갔을 때 43도에 육박하는 날씨를 견뎌야 했습니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 양산
- 선크림
- 팔토시
- 물
- 손풍기
- 쿨시트

등을 필시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북경은 무척이나 건조하면서 덥기 때문에, 양산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자금성 안에는 응달이 거의 없고 물도 자금성의 끝자락에 가서야 겨우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계획을 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북경 답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온열질환입니다! 그림자를 최대한 찾아다니시고 무조건 쉴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티켓

중국의 거의 모든 명승고지는 보통 관람 희망 날짜의 7일 전에 티켓팅을 할 수 있습니다. 티켓팅 난이도는

국가박물관(아주아주 어려움) >>>>> 자금성(시간 맞춰 들어가야 함) >>>>>> 이화원, 공산당역사기념관 >>>>> 원명원, 옹화궁 (매우 쉬움)

입니다.

거의 모든 곳에서 티켓팅을 할 때 영문 이름, 생년 월일, 여권번호, 한국 전화번호를 요구합니다. 티켓팅을 담당하시는 분은 미리 엑셀에 해당 내용을 정리해두시길 권장합니다. 또한, 티켓팅을 할 때 인증번호를 받을 중국 번호가 최소한 하나는 필요합니다. 이 역시 미리 확보해두시길 바랍니다.

3-1. 국가박물관

국가박물관은 티켓이 무료지만 티켓팅이 가장 까다로운 곳입니다. 외국인은 <https://pcticket.chnmuseum.cn/museum-en/#/personal/index>에서 티켓팅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박물관은 인당 4매 구매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티켓팅 예약 순서가 정말 까다롭기 때문에, 웬만하면 답사를 가시는 모든 인원이 각자 따로 계정을 만들어 티켓팅을 하시는 것이 성공 확률이 높습니

다.

가장 먼저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박물관에서 보내는 이메일은 높은 확률로 스팸메일함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계정을 만들 때 반드시 스팸메일함까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계정을 만들 때와 티켓팅 시에는 반드시 PC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국가박물관의 티켓 오픈 일시는 입장 희망 일시의 7일 전입니다. 즉, 2025년 6월 25일에 국가박물관을 방문하실 계획이라면 2025년 6월 19일 (한국 시간 기준) 오후 6시 정각에 해당 날짜의 티켓이 열립니다.

6시 정각에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새로그침을 누르다 보면 7일 뒤의 날짜에 붉은색 하이라이트가 켜지며 Available이라는 글자가 뜹니다.

한 날짜에는 오전(09:00-12:00 입장)과 오후(13:30-16:00) 슬롯이 있으며, 입장을 희망하는 시간대에 따라서 슬롯을 클릭하면 됩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여권 상 영문 이름을 기입하고, Document Type에서 “Passport”를 클릭하여 Republic of Korea를 선택, 여권 번호 기입란에 본인 여권 번호를 기입하고, Free voucher type을 선택하고 “next”를 누르면 캡차 코드를 요구하는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캡차 코드의 단계까지 완료하고 “Submit”을 누르면 예약이 완료되며, 예약 내역이 이메일로 보내집니다.

티켓팅은 무척 치열하며 보통 3-4분 내에 마감됩니다. 그러나 하루

에 푸는 수량이 정해져 있어, 6월 19일에 티켓팅에 실패했더라도 6월 20일, 21일, 22일에 거듭해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즉, 19일에 푸는 25일 티켓 수량이 100개, 20일에도 100개, 21일에도 100개가 나오는 형식입니다. 참고로 24기는 6월 23일에야 모든 인원의 티켓 발부가 완료되었습니다.)

3-2. 자금성

자금성의 경우 인당 60위안의 티켓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한번에 최대 5장의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5장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 동일 인물이 다시 접속해 티켓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금성도 국가박물관과 마찬가지로 관람 희망 날짜의 7일 전부터 티켓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24기는 위챗 미니 프로그램에서 故宫博物院(#小程序://故宫博物院/xINTeCWIdFgaa7u)을 찾아서 예매했습니다. 다만 위챗 프로그램에서의 예약은 본래 중국 번호로 위챗에 로그인되어 있던 사람만 가능하며, 만일 다음 기수에 누구도 위챗 계정이 미리 없었거나 중국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자금성 공식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금성의 티켓은 매일 (한국 시간 기준) 저녁 9시에 열립니다. 즉, 2025년 6월 24일 방문 예정이라면 2025년 6월 17일 저녁 9시에 티켓팅을 시도해야 합니다.

자금성은 경쟁이 치열한 관광지 중 하나이므로, 저녁 9시에 맞추어 접속한 뒤 티켓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티켓 구매 시 필요한 정보는 여권 영문 이름, 여권 번호, 한국 전화번호, 중국 전화번호입

니다. 또한 티켓 구매를 하면서 바로 중국 돈으로 결제를 해야하므로 미리 환전된 돈(위챗머니, 알리페이 머니 등)을 구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3-3. 공산당역사기념관

공산당역사기념관의 경우 관람일의 7일 전 정오에 티켓이 열립니다.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는 티켓 수량은 인당 5매입니다.

티켓팅 주소는 <https://webpc.cpcmuseum.cn/Home/Index> 입니다.

경쟁이 심하지 않은 관광지이니 여유롭게 티켓팅을 시도하셔도 됩니다. 다만, 24기의 경우에는 2025년 6월 25일 오후 방문 예정이었다가 그 날 오후에 예기치 못한 행사가 생겼다는 이유로 급하게 티켓팅 당일 오전으로 방문 시간대를 변경해야 했습니다. 이렇듯 예상치 못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티켓 구매 시 필요한 정보는 여권 영문 이름, 여권 번호, 한국 전화번호, 중국 전화번호입니다. 또한 티켓 예매 시 기입한 중국 전화번호로 인증번호를 받아야 하니, 미리 인증번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연락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3-4. 옹화궁

옹화궁의 경우 관람일의 7일 전에 티켓이 열립니다.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는 티켓의 수량은 인당 3매입니다.

티켓팅

주소는

https://open.weixin.qq.com/connect/oauth2/authorize?appid=wx25c99ef125a7d2f&redirect_uri=https%3A%2F%2Fpiao.yonghegong.cn

%2Fapi%2Fweixin%2Freceive&response_type=code&scope=snsapi_userinfo&state=usertemp68502077a8f5d&connect_redirect=1#wechat_redirect 입니다.

경쟁이 심하지 않은 관광지이니 여유롭게 티켓팅을 시도하셔도 됩니다. 티켓 구매 시 필요한 정보는 여권 영문 이름, 여권 번호, 한국 전화번호, 중국 전화번호입니다.

3-5. 이화원

이화원의 경우 관람일의 7일 전 (한국시간 기준) 저녁 10시에 티켓이 열립니다.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는 티켓의 수량은 인당 5매입니다. 인당 표값은 30원입니다.

티켓팅 주소는 #小程序://颐和园/DCM1MAHqSwQKM0t입니다. 티켓 구매 시 필요한 정보는 여권 영문 이름, 여권 번호, 한국 전화번호, 중국 전화번호입니다.

3-6. 원명원

원명원은 가장 구매가 쉬운 관광지로, 언제든지 티켓팅이 가능하며 인당 구매제한이 없습니다. 만 65세 이상인 관람객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티켓팅 주소는 #小程序://圆明园门票/it855814yPUT6Vg입니다. 티켓 구매 시 필요한 정보는 여권 영문 이름, 여권 번호, 한국 전화번호, 중국 전화번호입니다. 또한 티켓 예매 시 기입한 중국 전화번호로 인증번호를 받아야 하니, 미리 인증번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연락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4. 답사 보고서 발표

답사 보고서 발표 시에는 조금 더 효과적인 발표를 위해 발표 내용을 A4 용지 1-2페이지로 정리한 프린트물을 지참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원활한 토론과 질의응답에 용이합니다. 또한, 승합차나 버스를 따로 대여하지 않는 북경 답사의 경우 답사 보고서 발표가 부득이하게 식당이나 카페에서 진행되는데, 이 때 집중력을 잃지 않고 발표를 주의 깊게 들을 수 있게 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5. 식당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중국의 특성상, 유선 상으로 식당 예약을 미리 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식당 예약을 도맡은 분께서는 중국 내부에서도 전화할 수 있는 심카드나 중국 번호를 따로 구비하여, 불가피한 예약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